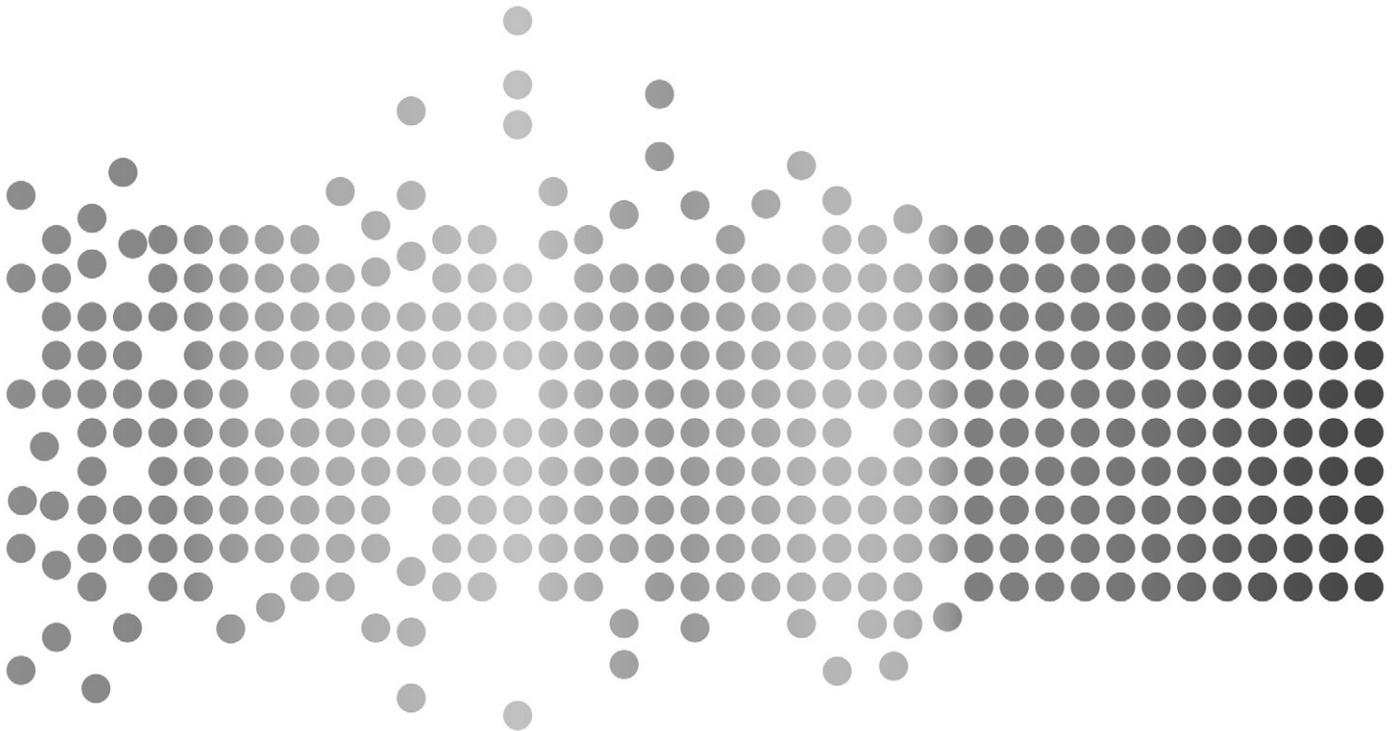


2009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장애인소득보장체계 비교

고경환 · 장영식 · 강지원 · 김진욱 · 최성용 · 정영애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민간사회복지지출(Private Social Expenditure),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s), 그리고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의 추계와 국제비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실제 이들 통계들은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으로 활동하는 동안 매년 제출해야할 의무의 이행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출규모와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다.

본 보고서는 매년 지출규모 파악과 추이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 9개의 정책 영역 중 한 영역을 선택하여 우리의 위치를 살펴보고 국제적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OECD국가의 장애인소득보장체계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최근 역할과 기능이 커지고 있는 제3섹터, 공동체, 민간보험과 개인연금 등에 대해 추계범위 확대도 살펴보고 있다.

보고서에는 작성기준의 변경이나 분류체계의 변경, 그리고 기존 미생산된 부분의 추가생산 등 OECD에 제출한 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나아가 기 공표자료도 끊임없이 보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관계전문가의 연구활동에는 물론 복지재정을 포함한 사회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재정 문제와 사회정책에 관심 있는 학자, 정부부처의 정책수립자, 연구 활동을 하는 연구자나 학생들에게 —讀을 권하고 싶다.

본 연구는 고경환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 장영식 연구위원, 강지원 연구원, 정영애 전문원과 원외 김진욱 교수, 최성용 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동안 助言과 協助를 해주신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 양운선과장, 연구진행과 원고검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희사무관, 연구결과와 추이 등

에 수시로 관심을 보내주신 여러 독자와 전문가들께 깊이 감사하고 있다. 아울러 OECD 사무국 사회정책과의 Willem Adema Senior Economist, Maxime Ladaique Manager, 교육지표분석과의 Etienne Albiser, 고용노동사회부의 David Grubb 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본 보고서를 읽고 有益한 助言을 주신 本院의 윤석명 연구위원과 최성은 연구위원에게 謝意를 표하고자 한다. 또한 研究進行 過程에서 기초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공 및 민간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적 노력이 배가되고 한국의 국가복지 건설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2011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11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12
제3절 연구방법	13
제2장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구조	19
제1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작성기준	19
제2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구조	26
제3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작성원칙	46
제3장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추계방법	53
제1절 공급주체와 자원부담주체에 따른 추계방법	53
제2절 사회복지지출의 지표별 추계방법	80
제3절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현황	87
제4장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	91
제1절 사회복지지출의 지표별 추계결과	91
제2절 사회복지지출의 추이분석	104
제5장 향후연구를 위한 추계범위 고찰과 특정영역 국제비교	121
제1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범위 분석	121
제2절 근로무능력관련 급여의 국제비교	141

참고문헌	147
------------	-----

부록	155
----------	-----

부록 1. 부표	156
----------------	-----

부록 2. 부도	197
----------------	-----

부록 3. 사회복지시설실태조사표	199
-------------------------	-----

부록 4. OECD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206
--------------------------------------	-----

표 목차

〈표 2- 1〉 사회복지자원 형태와 범위	20
------------------------------	----

〈표 2- 2〉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재원부담 주체	29
-----------------------------------	----

〈표 2- 3〉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재원부담 주체: 공공부문	32
---	----

〈표 2- 4〉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노령	37
------------------------------------	----

〈표 2- 5〉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유족	38
------------------------------------	----

〈표 2- 6〉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근로무능력	40
---------------------------------------	----

〈표 2- 7〉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보건	41
------------------------------------	----

〈표 2- 8〉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가족	42
------------------------------------	----

〈표 2- 9〉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ALMP	43
--------------------------------------	----

〈표 2-10〉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실업	44
------------------------------------	----

〈표 2-11〉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기타 사회정책	46
---	----

〈표 3- 1〉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상제도의 개관	54
-----------------------------------	----

〈표 3- 2〉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별 개관	55
--------------------------------	----

〈표 3- 3〉 교통·통신요금 감면제도별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60
---	----

〈표 3- 4〉 전체 사회복지시설 수(2009년말 기준)	63
---------------------------------------	----

〈표 3- 5〉 사회복지시설의 모집단 현황(2009)	64
〈표 3- 6〉 사회복지시설 수의 분포별 표본추출방법	66
〈표 3- 7〉 사회복지시설의 표본집단 현황(2009)	68
〈표 3- 8〉 사회복지시설종류별 응답 및 회수율	69
〈표 3- 9〉 사회복지시설종류별 세입 추계치의 상대표준오차	69
〈표 3-10〉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개념적 구성항목	71
〈표 3-11〉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범위	72
〈표 3-12〉 공공·민간부문별 간접세액 추계범위	75
〈표 3-13〉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요율(2009)	75
〈표 3-14〉 재원부담주체와 공급주체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지출 지표	81
〈표 3-15〉 공공사회복지지출 개념틀	82
〈표 3-16〉 사회복지지출 개념틀	82
〈표 3-17〉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83
〈표 3-18〉 자발적민간부문 추계 범위 및 자료원	84
〈표 3-19〉 총사회복지지출의 개념틀	85
〈표 3-20〉 순사회복지지출의 산출구조	86
〈표 3-21〉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현황: 기능구조(2009년)	87
〈표 3-22〉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율 국제비교(2007)	88
〈표 4- 1〉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지출규모	92
〈표 4- 2〉 공적연금별 지출규모	93
〈표 4- 3〉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출규모	93
〈표 4- 4〉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규모	94
〈표 4- 5〉 공공부문의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 규모	94
〈표 4- 6〉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 결과	95
〈표 4- 7〉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 결과	95
〈표 4- 8〉 법정퇴직금 지출규모	96
〈표 4- 9〉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지출규모	96

〈표 4-10〉 유급질병휴가급여 추계결과	97
〈표 4-11〉 민간부문의 교통·통신 감면 규모	97
〈표 4-12〉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97
〈표 4-13〉 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	98
〈표 4-14〉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지원금 규모	99
〈표 4-15〉 시설형태별 민간지원금 규모(2009)	99
〈표 4-16〉 자발적민간지출의 총규모	100
〈표 4-17〉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00
〈표 4-18〉 총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 결과	101
〈표 4-19〉 민간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 결과	102
〈표 4-20〉 직접세율 추계 결과	103
〈표 4-21〉 간접세율 추계 결과	103
〈표 4-22〉 조세감면 규모	103
〈표 4-23〉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04
〈표 4-24〉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추이: 기능별	106
〈표 4-25〉 사회복지지출 추이: 기능별	107
〈표 4-26〉 사회복지지출 추이: 프로그램	108
〈표 4-27〉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자원별	109
〈표 4-28〉 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2007)	109
〈표 4-29〉 총사회복지지출 추이	114
〈표 4-30〉 총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2007)	115
〈표 4-31〉 순사회복지지출 추이	116
〈표 4-32〉 순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2007)	117
〈표 5- 1〉 고경환 외(2009b)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발적민간복지지출 범위	123
〈표 5- 2〉 사회복지지출 총량 추계에 관한 선행연구 비교	125
〈표 5- 3〉 민간 사회복지자원의 영역과 구성 항목	128
〈표 5- 4〉 자발적 민간급여의 성격	128

〈표 5- 5〉 자발적 민간급여 중 민간모금 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모금기관 및 사업내용130

〈표 5- 6〉 향후 자발적 민간급여 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공제회 목록132

〈표 5- 7〉 세계의 생명보험 시장 (2009년)133

〈표 5- 8〉 한국의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규모133

〈표 5- 9〉 개인연금 적립금 현황 (1994 - 2008)135

〈표 5-10〉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구성 (1, 2인가구)136

〈표 5-11〉 향후 보완되어야 할 자발적 민간복지지출 추계의 범위와 가능성138

〈표 5-12〉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소득보장체계143

〈표 5-13〉 OECD SOCX의 근로무능력관련 제도 비교144

〈표 5-14〉 근로무능력관련급여의 구조 비교145

〈표 5-15〉 근로무능력관련급여의 지출 비교(2007)145

부표 목차

〈부표 1〉 OECD 사회복지지출 항목의 분류156

〈부표 2〉 교통·통신 등 요금의 감면대상자와 감면기준158

〈부표 3〉 한국공공 및 법정민간지출의 데이터베이스(SOCX) 기능 구조159

〈부표 4〉 OECD 지침서에 의한 간접세 개념과 해당 세목160

〈부표 5〉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161

〈부표 6〉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구성비)162

〈부표 7〉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전년대비 증감률)163

〈부표 8〉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경상GDP 대비)164

〈부표 9〉 기능별 사회복지지출165

〈부표 10〉 기능별 사회복지지출(구성비)166

〈부표 11〉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 증감률)167

〈부표 12〉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수준(경상GDP 대비)	168
〈부표 13〉	자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169
〈부표 14〉	자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172
〈부표 15〉	자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174
〈부표 16〉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176
〈부표 17〉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178
〈부표 18〉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180
〈부표 19〉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	182
〈부표 20〉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186
〈부표 21〉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188
〈부표 22〉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190
〈부표 23〉	공공사회복지지출(2007)	191
〈부표 24〉	법정사회복지지출(2007)	192
〈부표 25〉	사회복지지출(2007)	193
〈부표 26〉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2007)	194
〈부표 27〉	총사회복지지출(2007)	195
〈부표 28〉	순사회복지지출(GDP대비, 2007)	196

그림 목차

[그림 2- 1]	OECD 사회복지지출 지표와 포괄범위	22
[그림 2- 2]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결정과정	25
[그림 3- 1]	사회복지시설별 표본추출 체계	65
[그림 3- 2]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73
[그림 4- 1]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1990-2009)	105
[그림 4- 2]	사회복지지출 추이(1980-2009)	106

[그림 4- 3] 사회복지지출 지표별 정책영역 비교107

[그림 4- 4] 사회복지지출의 국제 비교110

[그림 4- 5] 민간사회복지지출 추이111

[그림 4- 6] 민간사회복지지출 비교(2009)112

[그림 4- 7] 법정민간지출과 자발적민간지출 비교: 정책영역(2009)113

[그림 4- 8] 총사회복지지출 추이114

[그림 4- 9] 총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115

[그림 4-10] 순사회복지지출 추이116

부도 목차

[부도 1] 순사회복지지출 구성도: 추계과정 측면197

[부도 2] GDP와 총사회복지지출 추이198

[부도 3]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198



Abstract

Korea has submitted its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to the OECD annually since its accession to the OECD in 1996. The OECD publishes comprehensive guidelines, which include features such as institutions and programmes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These statistics are very important as indicators of social protection policy, and the level of social expenditure attracts close attention from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at home and abroad.

Following the OECD's request to its member countries, Korea has produced five statistical series: the Public Social Expenditure (PSE), the 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MSE), the Social Expenditure (SE), the Gross Social Expenditure (GSE) and the Net Social Expenditure(NSE).

The first goal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statistics on "Social Expenditure", "Gross Social Expenditure", and "Net Social Expenditure" of Korea following the OECD guidelines. These statistics will enable us to understand the overall level of Korean welfare, to measure the magnitude of social expenditure, to confirm its trend, and to compare it with those of the other OECD members.

OECD guidelines are international standards which provide guidance on how to classify the various programmes and policies in each country. The framework of the OECD guidelines clarifies the approach countries could use for their programmes and policies to estimate social expenditure. However, in some situations the guidelines are limited in that they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individual countries.

A second goal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how estimates have been made in

Korea. In situations where it is hard to apply the OECD standards to Korea due to its specific social/welfare policies the approach has been varied (e.g. the severance pay treatment). There are some cases where there is no option but to use estimates since there is no detailed data available (e.g. indirect tax rate). Also, it is not easy to match the unique systems of Korea to the OECD guidelines. Estimation of the Korean social expenditure by the OECD guidelines is expected to be more precise if we overcome the difficulties mentioned above.

Although Korea's estimation method as it stands may not be readily applicable to other countries, it may serve as a useful reference for many countries which are developing methods to estimate some components of their social expenditures.

Recent public social expenditures in Korea have increased at such a rapid rate that they have become a financial burden. Public social expenditure has grown at a very rapid rate to be 14 times the level in 2009 compared to 1990. The public social expenditure-to-GDP ratio has steadily grown over the period from 2.8% in 1990 to 9.56% in 2009.

Social expenditure in Korea was 110,548 billion won in 2009, 10.38% of GDP. This is the highest level ever, almost twice that of 1997 (4.17%). Most of the social expenditure in Korea is financed by the public sector (9.56%) and the private sector finances 0.82% in the 2009.

Private social expenditure in Korea increased from 0.34% (in 1990) to 2.62% of GDP (in 2009), a six-fold increases. Private social expenditure is made up of mandatory private expenditure and voluntary private expenditure. Mandatory private expenditure increased from 0.3% (1990) to 0.82% of GDP (2009), and was at its highest in 1998 (0.97%)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Voluntary private expenditure increased from 0.08% (1990) to 1.79% (2009) of GDP.

Gross social expenditure was estimated at 129,666 billion won in 2009, which represented 12.17% of GDP. The Net social expenditure of Korea is estimated to amount to 132,875 billion won in 2009, which is equivalent to 14.04% of factor GDP. Net social expenditure is larger than Gross social expenditure because 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 are larger than the tax burden.

요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매년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통계를 추계하여 국내에 공표하고 OECD에 제출하고 있음.

- 통계제출은 OECD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이자 국내 사회복지지출의 추이를 파악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국내 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연구를 매년 수행하는 이유는 신규년도의 생산 및 OECD 작성기준 변경에 따른 대응, 그리고 추계할 수 있는 자료원이나 새로운 생산방법 등의 발 굴로 기 제출한 과거통계의 보완 때문임.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의 작성기준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s)을 추계하여 한국정부 및 OECD에 제공하는 데 있음.

- 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로 구성됨.

2.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추계방법

□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를 위한 연구는 OECD의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SOCX) 작성을 위한 지침에 근거함. 이러한 방식은 OECD의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국가간 비교에는 용이하나, 한국 사회복지지출추계에는 한계가 있음.

- OECD의 사회복지지출 작성기준은 유럽을 중심으로 구성된 관계로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와 상이성이 있음.
 - － 한국의 법정퇴직금은 노후소득보장측면과 노동시장이유로 인한 해고수당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유럽의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에 포함되는 퇴직연금제도와 다르고, 공공재원으로 조성된 해고수당의 성격과도 상이함.
 - － 선진국에서 이혼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소득보장적 측면과 재분배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의 비공식적인 가족간 이전은 포함되지 않음.
- OECD SOCX 지침이 각국의 상황에 맞게 포괄적으로 제시됨으로서 사회복지지출추계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 － OECD는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생산을 위한 지침에서 사회복지지출의 속성으로 “사회적 목적”과 “재분배적 성격”을 제시하고, 이들 지출의 5가지 지표와 9가지 정책영역을 제시하고 있음.
 - － 그러나 통계의 생산 자체는 각국의 통계 연구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제도 및 영역별 작성지침은 제공하지 않고 있어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지출을 생산하고자 작성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념과 범위에 따른 작성방법을 제시함. 이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이용하는 학자나 정책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통계 생산의 신뢰성을 제고 하고자함.
 - 한국 사회복지지출은 추계하기 위해 5가지 작성기준을 제시함.
 - － 첫 번째 기준은 ‘사회적 목적’임. 본 연구에서 사회적 목적이란, “유사한 어려움이나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개인적인 환경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환경에서 야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한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여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함.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목적을 가지지 않는 비사회적 급여는 상당부분 탈락함.
 - － 두 번째 기준은 ‘재원부담주체’임. 일반적으로 재원부담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되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정부의 일반지출과 사회보장기금은 공공지출로 구분되며, 기업의 복지지출과 개인의 후원금 및 모금은 민간지출로 구분됨. 그러나 제3섹터의 경우 공공부문의 재원이 투입되는 동시에 후원금 모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고 있음.

- 세 번째 기준은 ‘공급주체’임. 공급주체는 재원부담주체와 유사하지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공급주체 역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공기업포함)이 포함되는 반면 민간 부문은 기업과 제3섹터, 시장으로 구분함.
 - 네 번째 기준은 ‘재분배적 성격’임. OECD는 이를 “개인간 재분배 혹은 인구 집단간 재분배”라고 명명하면서 재분배적 성격을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재분배는 포함하지 않음. 공공 부조는 수직재분배에 기초한 개인간 재분배이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수평재분배에 기초한 인구집단간 재분배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기준을 통해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의 범위를 결정하고, 끝으로 OECD SOCX의 기준에 따라 9가지 정책영역(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기타 정책영역)으로 구분됨.
-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개념과 범위가 결정된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해 가공됨.
- 공급주체와 재원부담주체를 기준으로 정부부문과 사회보험부문, 기업부문, 제3섹터부문, 조세부문, 시장부문, 공동체부문의 추계방법을 제시함.
 - 정부부문, 사회보험부문, 기업부문, 조세부문의 경우 해당부처 및 기관의 발간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함.
 - 제3섹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계
 - 2009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3,507개소이며, 이 중 이용시설은 2,526개소(72.0%), 생활시설은 922개소(26.3%)임. 표본집단 1,027개소를 추출하였으며, 761개소의 조사표 회수(응답률 74.1%).
 - 한국 총사회복지지출의 개념들은 아래와 같음
 - 총사회복지지출의 추계 후 조세부과와 조세혜택을 통해 순사회복지지출 추계

〈표 1〉 총사회복지지출 개념틀

공급주체	제 도	구 성 항 목
일반정부	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등
	사회보상	• 국가보훈, 재해구호, 북한이탈주민지원, 고엽제피해보호, 사할란동포 및 일본 군위안부지원, 의상장자예우 등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과 장애인, 가족복지, 보건의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사회보험	사회보험	• 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업	법정복지	•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교통·통신요금 감면	•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감면
	자발적복지	• 기업의 고용연계 급여 - 가족수당, 학비지원, 주택자금지원 등
	사회공헌활동	• 기업·기업재단의 사회복지활동 - 사회복지, 재해복구·예방 등
제3섹터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사업 관련 지출
	민간모금단체	• 민간모금단체의 자발적민간지출
공동체	공동체	• 특정집단의 공제급여 - 학교안전공제회, 대한의사협회공제회
시장	민간의료비	• 민간의료비 - 자동차책임보험의 대인치료비, 실손형 보험금 - 비영리단체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출

3.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

□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는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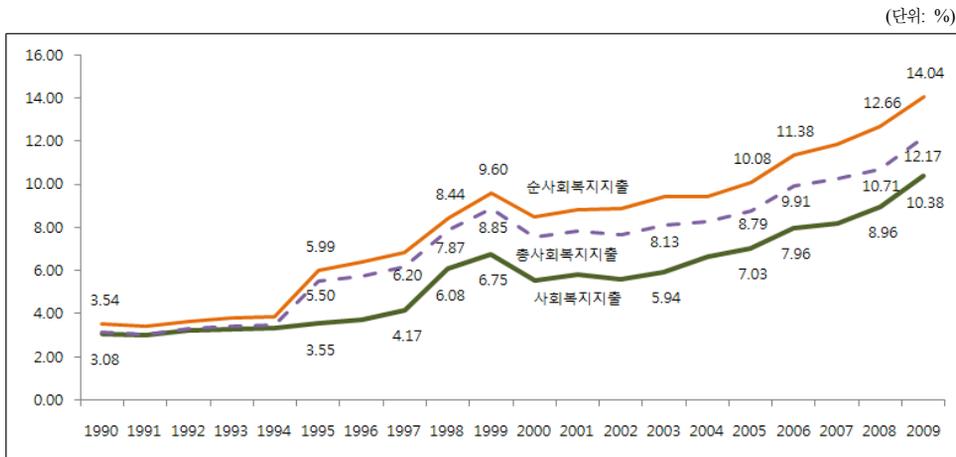
-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8.34%(2008년)에서 9.56%(2009년)로 증가
 - 2009년 기준 정부일반지출은 36,685십억원, 사회보험 64,513십억원,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 581십억원으로 구성됨.
 - 2009년 기준 보건영역(42.1%)과 노령영역(23.5%)의 비중이 매우 큼.
-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8.96%(2008년)에서 10.38%(2009년)로 증가
 - 2009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법정퇴직금 5,082십억원, 산전후휴가급여 526십억원, 유급질병휴가급여 694십억원, 법률로 정한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통신 감면 557십억원으로 구성됨.
 - 2009년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공공사회복지지출 9.56%,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0.82%로 나타남.

- 총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0.71%(2008년)에서 12.17%(2009년)로 증가
 -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 민간지원금은 2,755억원(2008년)에서 3,185억원(2009년)으로 증가
 - 2009년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총규모는 19,117십억원이며, 제3섹터 7,936억원, 기업 146,974억원, 시장 38,424억원이며 이중계산규모가 2,160억원임.
 - 2009년 총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 9.56%(GDP대비), 법정민간지출 0.82%, 자발적민간지출 1.79%로 구성됨.
- 순사회복지지출은 요소 GDP 대비 12.66%(2008년)에서 14.04%(2009년)로 증가
 - 2009년 총사회복지지출을 100.0%이라고 할 때 조세부담 5.1%, 조세혜택 7.6%를 고려한 순사회복지지출은 102.5%임. 조세부담보다 조세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총사회복지지출보다 순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나타남.

□ 지난 20년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를 기본으로 총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 증가
- 법정민간지출과 자발적민간지출은 상대적으로 낮아 복지주체간 다양한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음.

[그림 1] 사회복지지출의 지표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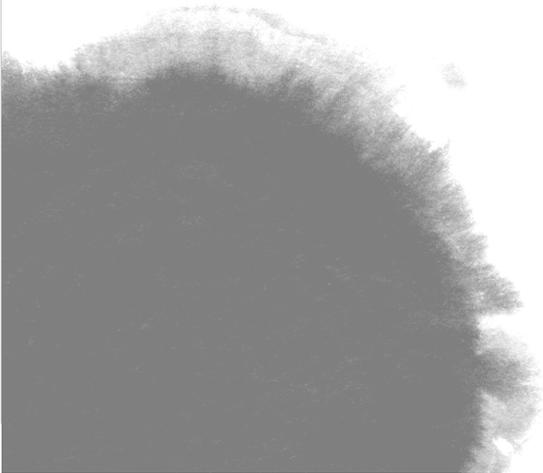
주: 순사회복지지출은 요소GDP 대비 비율이며, 다른 지표들은 경상GDP 대비 비율임.

4. 자발적민간지출의 추계범위 확대 논의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자발적민간지출 추계에 포함되는 기관들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민간모금기관은 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21개소를 현재 추계하고 있으나 일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모금기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으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포함해야 하는 자료분류상 어려움이 있음.
 - － 공동체 부문에 포함되는 공제회 역시 현재 의료공제와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만 추계에 포함되고 있으나, 다양한 직역집단의 공제회를 포함하되, 공제회 내에서 재분배적 성격이 있는 사업들만 추계에 반영해야 함.
 -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에 새롭게 포함해야 할 급여가 있으나 OECD의 통계작성기준과 배치되는 관계로 사전에 조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 민간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장성 보험금은 불의의 사망, 상해, 재해,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적 성격을 지닌 급여로 볼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개인연금 역시 임의가입이라고 할지라도 노후소득보장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추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특히 한국에서는 1994년 처음으로 세계적격개인연금이 도입되었으며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 순수한 민간급여라고 보기 힘들.
 - － 노인가구와 이혼가구의 부양비 지원 등 정기적인 가구간 사적이전 역시 자발적민간사회복지부문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부분임. 그러나 이러한 급여가 공식적인 조식을 통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관계로 포함에 한계가 있음.

01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매년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추계연구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보장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연구결과를 국내 공표하고 OECD에 제출하였다. 사회복지지출은 국민계정의 국민소득처럼 한 국가의 복지지출의 흐름을 규모와 추이뿐만 아니라 기능별, 재원별, 제도별로 분석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OECD는 통계작성 기준의 큰 틀은 유지하되 통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일부 기준들을 이따금씩 변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변경된 기준을 현재 통계의 추계에 반영하고 기 공표된 통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적용이 필요하다. 최근 변경된 작성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부터 기존의 13가지 기능별 지출 항목을 9가지로 축소하였다. 이 경우 분류종류는 축소되었으나 총량은 변함이 없다. 2004년부터는 공공 임대주택 건설비를 노령·장애·기타급여에 포함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적극적노동시장 프로그램(ALMP)의 구성항목을 재구조화하였으며¹⁾, 2009년부터 법정퇴직금의 포함여부를 둘러싼 지난 2년간의 논의 끝에 작성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Adema and Ladaïque, 2009). 즉 정년퇴직자의 퇴직금만 노령급여에 포함하고, 자발적 퇴직자와 해

1) ALMP의 세부 항목이 2006년까지 소극적인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노동시장의 훈련, 청소년 관련 사업, 고용보조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고용프로그램, 고용서비스와 행정으로 구분)에서 이후 보다 적극적(일자리 순환 및 일자리나누기, 고용인센티브, 지원고용 및 재활, 직접적인 일자리창출, 취업인센티브)으로 성격이 변경됨.

고자의 퇴직금은 SOCX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다만, 노동시장요인에 의한 해고시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만 실업에 포함하였다. 즉 한국의 법정퇴직금은 노후소득보장측면과 노동시장자유로 인한 해고수당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유럽의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에 포함되는 퇴직연금제도와 다르고, 공공재원으로 조성된 해고수당의 성격과도 상이하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OECD의 작성기준이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로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와 상이성이 있음에 연유한다고 본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작성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념과 범위에 따른 작성방법의 논의와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지표를 이용하는 학자나 정책담당자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통계 생산의 신뢰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아울러 최근 역할과 기능이 커지고 있는 제3섹터, 공동체, 민간보험과 개인연금 등에 대해 추계범위 확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이들 통계는 국내적으로도 매우 필요한 연구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한 전체의 외형적인 지출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조세부담에 따른 가처분이전소득의 감소와 반대로 조세감면에 의한 가처분이전소득의 증가분을 모두 감안한 지출규모는 얼마인가, 나아가 그 수준은 국제적으로 어느 위치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기초통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발적민간부문과 조세부문의 추계에서 선행연구와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통계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생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국제통계의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OECD작성기준에 따라 2012년도 OECD가 제출을 요구하는 2008년과 2009년도의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 그리고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을 생산하여 한국정부 및 OECD에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

한 통계들은 복지수준을 총량적 또는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통계들로서 사회복지 지출수준과 한 국가의 복지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복지정책의 방향과 내용 설계에 기여하리라 본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개념과 구조에 대해 살펴본다. 그간 OECD지침에 따른 수동적인 추계를 벗어나 한국의 상황에 맞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출을 추계하여 본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로 공급주체와 재원부담 주체, 지표별로 추계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결과를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 그리고 순사회복지지출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명확히 추계하기 위해 자발적민간지출의 추계범위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으로 근로무능력관련 국제비교를 하여 본다. 현재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주요한 매커니즘으로 역할하고 있으나 추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지출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고 이를 포함하기 위해 OECD와 협의내용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는 한국 사회복지의 현재를 파악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향후 나아갈 방향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 하겠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국내외 문헌연구,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OECD사무국 관계자와의 사례연구(Case Study), 관계전문가 회의 등의 연구방법에 의하여 진행하였다.

1. 국내외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국내자료와 국외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내자료는 사회복지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위, 제도, 그리고 기존연구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추계는 8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순사회복지지출에 대한 기존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순사회복지지출을 구성하는 각 분야별 연구는 일부 있다. 기업복지제도의 실태, 민간부문의 모금활동,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현황, 도

시·농촌가구의 조사자료를 이용한 간접세 추계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실태에 대한 현황분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필요한 지출규모 등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조세혜택에 대한 규모를 추계한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한편 세부적으로 참고한 자료는 각 복지사업별 사업개요와 업무지침서, 통계자료집, 법령집, 그리고 각 단체나 기관의 보고서 또는 내부자료 등의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제도의 세부내용과 재원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자료는 OECD가 최근 발간한 통계작성기준(Adema, 1999; Adema et al., 2009)과 추계자료(OECD, 2009; 2007; 2005; 2001a; 2001b; 1998), 사회복지 관련 외국참고서, 그리고 UN의 국민계정체계(1993), 간접세의 거시자료로 OECD의 Revenue Statistics(2007; 2002; 2000; 1999)를 참고하였다.

2. Bottom-up방법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여러 행정부처에 분산·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도의 특성과 약과 자료수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초통계자료는 사회복지관련 각 행정부처의 세입세출예산서와 각 공단의 통계연보(결산서), 여러 관련 기관의 전산자료 분석, 그리고 지방세법과 지방조례에 의한 조세감면 자료가 수록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연감을 사용하였다. 이 중 세입세출예산서와 통계연보는 공표자료를 이용하여 하위단위의 지출항목을 재분석하였다. 즉 공표자료를 세부 분해하여 전체구성을 파악하는 Bottom-up방법을 사용하였다.

3. 2차자료 수집 및 가공분석

일부 복지제도의 급여를 추정하기 위해 2차자료를 수집하여 가공분석하거나 담당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먼저 2차자료를 수집하여 가공분석한 것은 정부부문의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용(직접현물급여)에 기존임대주택의 분양전환금을 공제한 주거지원 급여, 법정민간부문의 사회복지지출인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등이다.

다음 급여내용이 수록된 원자료의 경우 외부유출이 제한되어 있어 사전에 산출방법과 분석형태를 해당기관에 제공한 후 분석결과를 수집한다. 여기에는 국세청의 법정퇴직금

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산휴가급여 등이 있다. 이렇게 수집된 기초자료는 OECD 추계 방법에 따라 기능별 급여주체별로 분류한다. 이때 기능별 분류를 더욱 명료화하기 위해 사회보험 등의 급여나 정부의 세출항목, 그리고 전산분석자료를 가능한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데 노력한다. 다만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분야에 대하여는 자료원을 언급하면서 향후 생산방안을 제시한다.

4. Survey(조사연구)

조사연구는 사회복지지출의 주요 영역인 취약계층의 교통통신 등 요금의 감면액, 또한 자발적민간부문인 민간모금단체·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모집 실태 등이다.

5. OECD 관계자와의 사례연구(Case Study)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통계작성 기준은 개괄적이며 관념적인 경향이 있다. 이는 각 국가간 상이한 제도에 대해 공통의 목표성을 포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본다. 즉, 국가간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지출하는 급여를 국제비교 가능한 형태로 추계 하고자 공통의 기준을 설정하는 본질의 한계이다. 하지만 통계를 생산하는 연구자로서는 보다 구체적인 작성기준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OECD가 제시하는 사회복지지출이나 순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통계작성의 기준 및 예시가 충분하지 못하여 이를 참고로 통계를 생산한다는 것은 선진국과 다른 사회보장 체계를 지닌 우리나라로서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통계산출 과정에서 우리 제도를 각 기능별로 분류하거나 또는 포함여부에 대한 고심스런 내용에 대하여 OECD관계자들²⁾과 OECD회원국의 통계생산 연구자들³⁾과 Case Study를 병행한다. 이들 관계자와의 끊임없는 질의와 토의는 OECD 작성기준에 적합한 추계가 달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2) ‘OECD 사무국’ 사회정책과의 Willem Adema Senior Economist, Maxime LADAIQUE Manager, 교육지표분석과의 Etienne ALBISER, 고용노동사회부의 David GRUBB 등임.

3) 독일 연방보건복지부(Federal Ministry of Health & Social Security)의 Dr. Roland Berntsen, Dr. Jörg Peschner,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Yukiko M. Katsumata 실장, 그리고 유럽연합의 사회복지계정 통계담당자인 Mr. Arne Kubitzka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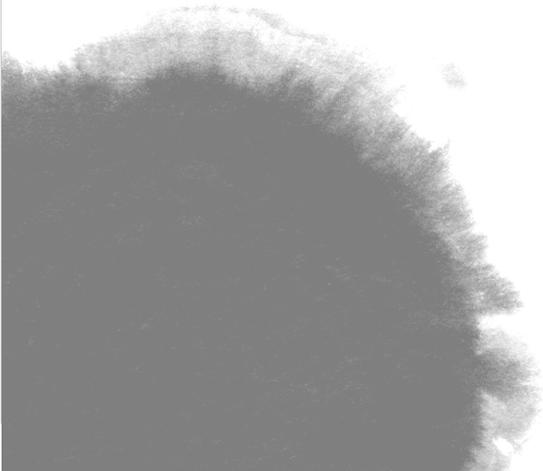
6. 관계전문가 회의 및 실무간담회

연구의 방향이나 범위, 추계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로 추계의 정확성은 결국 통계의 신뢰성과 국제비교 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관계전문가는 당원의 연구진과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한국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로 구성한다.

또한 본 연구가 필요로 하는 통계가 생산가능한 기관과의 통계산출 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의 추계결과에 대한 실무간담회를 활용한다. 이러한 과정은 통계생산을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추계결과의 한계점이나 향후 생산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실무간담회 관계자는 주로 업무협약의 급여와 관련된 기관들이다.

02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구조



제2장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구조

제1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작성기준

1. OECD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범위

OECD는 사회복지지출의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안한다. 그 첫 번째는 ‘사회적 목적(social purpose)’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급여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급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개인간 재분배나 의무적인 참여를 포함하는 한편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의 재분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OECD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들을 포괄하는 9가지 정책 영역(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기타 사회복지)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사회적’이라는 용어가 갖는 애매함이다. 국가별 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OECD가 사회적 영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 빈곤을 제거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목적으로 여겨지므로 아동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개인이 하는 연금저축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 개인간 재분배라기보다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재분배로 간주된다. 즉 노년기의 소득보장을 위해 청장년기의 소득일부를 저축했다가 노년기에 본인이 지출하는 것이므로 개인간 재분배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적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시킨 급여만을 사회복지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지출이 재분배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공공재원으로 조달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복지재정부담으로 인한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공공부문과 민

4) 이에 대해서는 2장 3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작성원칙에서 자세히 언급할 예정이다.

간부문의 복지주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민간재정의 조달에 따른 사회복지지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일부 사회복지지출사업은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이 결합하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지출의 재원범위는 순수공공부문과 순수민간부문의 양극단 사이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 특성을 가진다.

OECD 역시 사회적 목적을 가지며 재분배적 성격을 띤 사회복지지출의 재원범위를 구분함에 있어 재원체계와 전달체계를 기준으로 “순수공공급여, 공공급여, 그리고 민간급여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순수민간급여는 제외”하고 있다(표 2-1 참조). 여기서 순수민간급여란 사회적 급여의 성격이 없거나 있어도 개별적 계약으로 재원과 제공(운영)이 전적으로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부분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형태는 차츰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1〉 사회복지재원 형태와 범위

형 태	순수공공급여	공공급여	민간급여	순수민간급여
재 원 부 담	공공	공공/민간	공공/민간	민간
공 급 주 체	공공	공공	민간	민간

자료: OECD(2007)의 자료 재구성

OECD에서 정의하는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공공부문의 급여와 법정민간부문의 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와 개인이 복지에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는 동안 공적제도에 의해 조달되는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이다. 사회적 급여나 재정지원 중에서 특정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지급이나 개별 계약 또는 이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경환 외, 2009; OECD, 2006).” 사회복지지출의 정의에 따르면 급여는 공적 제도에 의한 기관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하므로 가구간 이전이나 개인의 후원 등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지출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지 않으며 교섭에 의한 임금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당, 휴일수당, 보너스 등은 사회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급여는 현금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세 수단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현금급여의 대표적인 예로는 연금과 출산수당, 공공부조에서 제공되는 생계급여 등이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보육서비스와 노인 및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 수단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자녀 가족에 대한 조세감면혜택(한국에는 부녀자공제 및 자녀교육비 공제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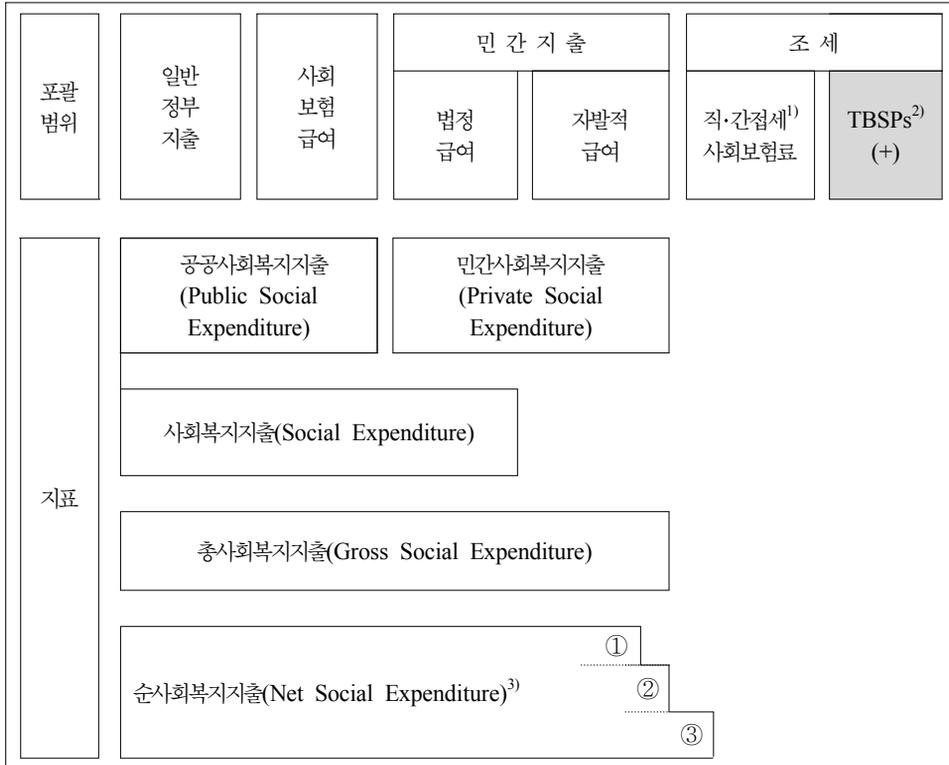
있음)과 사적 의료보험 혹은 사적연금저축에 대한 세금공제 등이 있다.

다음으로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이란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에 자발적민간부문을 포함한 총괄적인 사회적 급여(Social benefits)”를 의미한다. 여기서 총(Gross)의 뜻은 자발적 민간부문을 포함하고 사회보장 수급자가 수령하는 급여인 이전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소득세와 소비생활에서 부담하는 간접세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총사회복지지출은 사회복지지출에 비해서 범위가 넓어지고 공급주체에 따른 구분도 가능해진 장점이 있으나 이들 자료는 조세 전 지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각 부문별 복지정책의 경향과 변화를 나타내기에는 용이하지만 조세시스템이 어떻게 사회보장체계에서 공·사 지출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OECD는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순사회복지지출이란 “정부의 사회복지 차원의 노력은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 현금급여와 서비스 제공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조세제도를 통하여 사회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는 노력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稅前 총사회복지지출 측면에서 복지효과의 측정은 사회적 목적의 조세혜택(예: 이동에 대한 조세감면혜택)과 급여소득에 대한 직접세, 급여수령자의 소비에 따른 간접세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총 사회복지지출에서 급여범위와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제도상의 혜택과 부담만 추가한 것이 순사회복지지출이다.

순(稅後)사회복지지출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부문에서의 조세정책을 구사하는 재정적인 노력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복지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경제의 생산량 중 그들이 배분받는 비중으로 볼 수 있다(고경환 외, 2009; OECD, 2001a). 순 사회복지지출은 국가간 비교를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 차원의 재분배(re-allocate)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

[그림 2-1] OECD 사회복지지출 지표와 포괄범위



주: 1) Tax: 이전소득자가 부담하는 직·간접세 등임.

2) TBSPs(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 비영리법인재산·근로자소득공제·지방세감면대상자·장애인용의료용구관세 등에 대한 조세혜택임.

3) ①은 Tax > TBSPs, ②는 Tax = TBSPs, ③은 Tax < TBSPs 임.

2.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작성 기준

이러한 OECD의 개념과 범위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인 각국의 상황에 맞게 통계를 생산하는 동시에 국제적 기준에 따른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기준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지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하고 합리적이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은 OECD의 통계생산을 위한 지침을 따르되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힘든 작업이 된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OECD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이 이루어지는 모든 제도와 영역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작성 기준을 제안한다.

첫째, 한국 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OECD(2007)는 “무엇이 사회적 영역(social domain)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사회적인 것과 사회적이지 않

은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첫 번째 기준인 사회적 목적은 다음과 같이 개념화할 수 있다. 사회적 목적이란, 유사한 어려움이나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인 환경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환경에서 야기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한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여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다. 즉 개인이 가지는 어려움이 특정 개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겪을 수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환경의 변화를 야기하도록 이루어지고, 그 성과 역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제도 혹은 정책을 사회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목적을 가지지 않는 비사회적 급여는 상당부분 탈락한다. 즉 정부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마련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일반지출은 대부분 이 단계에서 사회적인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개인적인 위험에 따른 가족간 이전은 사회적 목적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된다.

두 번째 기준은 재원부담주체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원부담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되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정부의 일반지출과 사회보장기금은 공공지출로 구분되며, 기업의 복지지출과 개인의 후원금 및 모금은 민간지출로 구분된다. 그러나 제3섹터의 경우 공공부문의 재원이 투입되는 동시에 후원금 모금을 통한 사업도 하고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은 공급주체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급주체는 재원부담주체와 유사하지만 공급주체가 재원부담주체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공급주체 역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되며,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사회보험기관), 공기업(교통통신요금 감면) 등이 포함된다. 반면에 민간부문은 기업과 제3섹터,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주가 지급하는 급여는 다시 명문화된 법에 근거하는지에 따라 법정급여와 비법정 급여로 구분한다.

이러한 기준은 특히 민간부문의 자발적민간지출을 추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3섹터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기업의 경우 정부의 재원이 투입되므로 재원부담주체로는 공공의 성격을 떠나 급여의 제공은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정부 투입 재원은 공공사회복지지출로 추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개인의 후원금을 받거나 기업 경영의 이윤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자발적민간지출로 추계해야 한다.

네 번째 기준은 재분배적 성격이다. OECD는 이를 ‘개인간 재분배(inter-personal redistribution) 혹은 인구집단간 재분배’라고 명명하면서 재분배적 성격을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재분배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재분배적 성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도인 공공부조는 수직재분배에 기초한 개인간 재분배이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수평재분배에 기초한 인구집단간 재분배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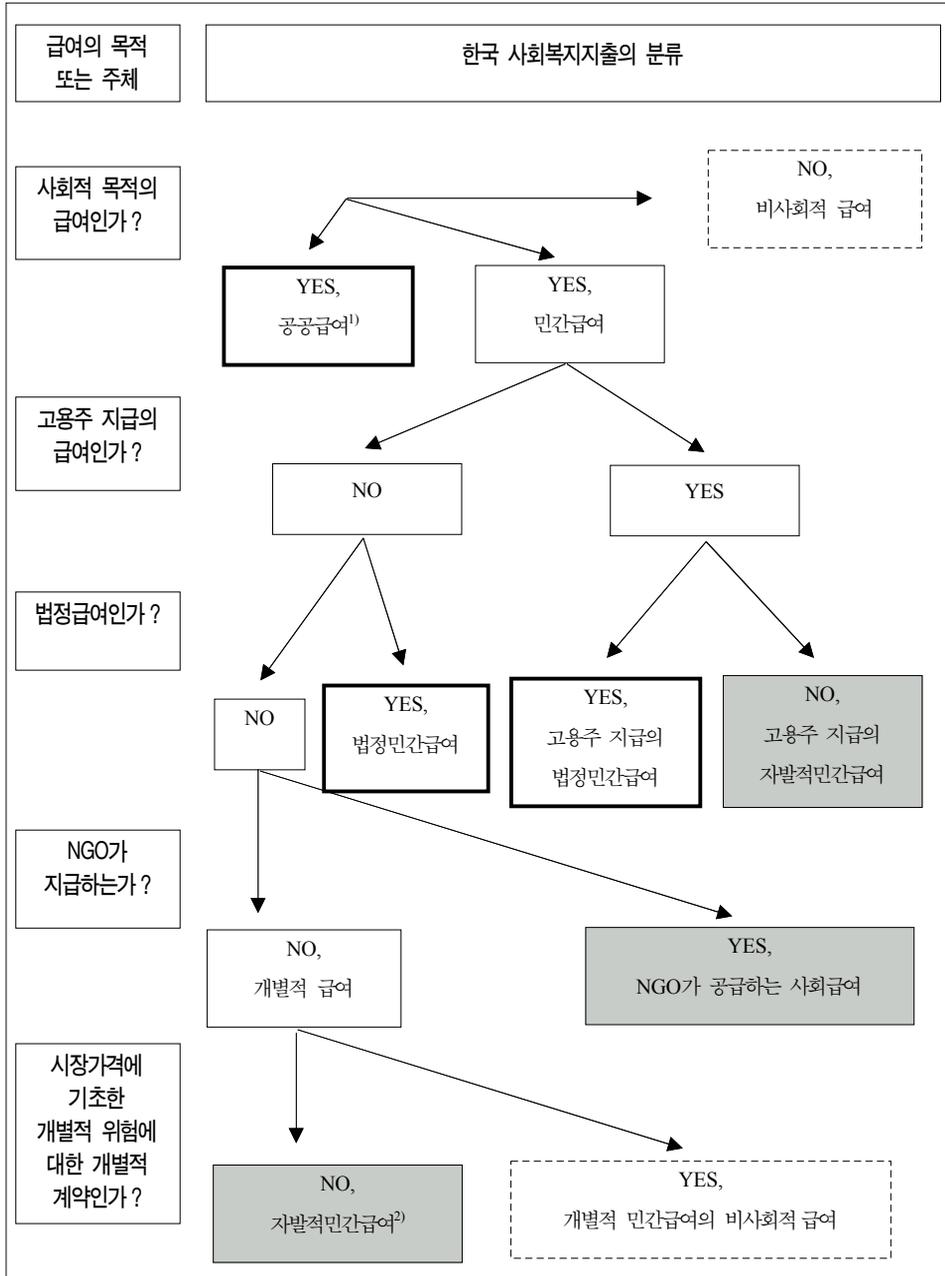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개인간 재분배 성격을 가지지 않는 급여들은 탈락한다. 대표적인 예로 시장에서 계약하는 연금저축을 들 수 있다. 연금저축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노후소득보장방식 중의 하나지만 시장의 계약에 기초한 연금저축은 개인간 재분배적 성격보다는 개인의 생애주기간 재분배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미비하여 노인빈곤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촉진하고자 정부는 조세지출을 통해 시장에서 구매한 연금저축에 대한 세금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즉 정부는 조세지출을 통해 이러한 개인의 생애주기간 재분배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시장에서 구매한 연금저축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회적 목적을 가진 지출 중 재원부담주체와 공급주체에 따른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출 내용을 구분하고, 재분배적 성격의 유무에 따라 각 항목들은 최종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로 결정된다.

마지막 과정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구조에 관한 것이다. 즉 OECD의 기능구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구조화하는 것이다. OECD의 9가지 기능구조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에서도 동일한 틀을 가지지만, 세부적인 항목을 결정할 때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기능구조에 따라 어느 항목에 위치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그림 2-2]의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⁵⁾. 예를 들어 2008년 이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 공공급여이고, 노령(Old-age)영역에 포함된다. 다만 의료적 성격의 방문간호는 보건(Health)영역에 포함된다.

5) 의사결정나무분석이란 의사결정규칙(decision rule)을 나무구조로 도표화하여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방법임.

[그림 2-2]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결정과정



주: □ 은 사회복지지출 영역, ■ 은 총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추가 영역, □ 부분은 총사회복지지출 제외 영역임.

1) 공공: 급여에 대한 재정적 흐름이 정부(사회보험기금을 포함하여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의해 통제됨.

2) 민간사회부조의 범위에서 상부상조형식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계약된 개별보험계약(예, 특별직업군, 단체 피고용인 그룹)인. “위험을 공유”하는 이러한 유형의 “그룹 보험”은 개별적인 기여가 개인의 위험 프로파일에 따른 시장 가격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자료: OECD(1999), Net Social Expenditure에서 재구성

제2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구조

1. 재원부담주체에 따른 구분

1) 공공지출

OECD(2009)는 공공지출을 “일반정부(사회보험기관 포함)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고 급여(또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출”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정부의 사회복지·보건·노동관련 지출과 사회보험지출 등이 일반적인 공공지출이다. 최근에는 사회적 목적을 띠는 조세지출(TBSPs) 역시 정부 예산에 대한 비용 지출로 정의하고 국민에게 지출하는 현금급여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공공지출에 포함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은 크게 정부지출과 사회보험, 조세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부지출은 사회적 목적을 갖고 재분배적 성격을 갖는 급여를 각 부처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을 뜻하며, 정부지출의 재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마련된다. 다음으로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되며, 주로 사회보험기금에서 재원이 조달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조세제도를 통해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기도 한다.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조세감면을 취하기도 한다. 전자는 이전소득자 등이 부담하는 직접세와 간접세이며 후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세금우대(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 이하 TBSPs)’제도이다⁶⁾. TBSPs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연금급여에 따른 감세 또는 환급하는 세금우대(Tax breaks for pension)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급여나 개인 혹은 기업이 기부한 것에 대한 세금우대(TBSPs on “current” private social benefits)이다. 정부는 TBSPs를 통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하며 결국 이는 공공예산에 대한 손실(cost)로 간주된다. 이를 정부 입장에서 보면 조세혜택만큼 세수가 줄고, 그만큼 정부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금급여와 같은 효과로 보는 것이다.

요약하면,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에서 공공부문은 사회적 목적을 띠며 재분배적 성격을 갖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지출과 사회보험, 조세지출,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으로 구성된다.

6) TBSPs란 “사회급여로 분류되는 이전급여(transfer payments)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민간급여를 촉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조세혜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금감면(reduction), 면세(exemption), 공제(deduction), 그리고 납기연장(postponements) 등을 들 수 있음”(OECD, 1998).

2) 민간지출

민간지출은 “급여와 재원이 민간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급여가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며, 재원은 공공과 민간에 의해 부분적으로 충당되는 형태”이다(OECD, 2009). 이때 “급여는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와 재분배적 성격을 가진 사회적 급여로 이 경우 사회적(social)은 순수민간(purely private)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사회적 목적을 가진 지출이라 할지라도 시장가격으로 급여되는 계약이나 보험은 아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비사회적(not social)이라고 보아 본 급여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로 가구간 이전지출을 들 수 있다(Adema, 1999: 9)”.

고경환 외(2009)는 OECD 기준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총량에 대한 세부모형을 제시하면서 민간부문의 재원주체로 시장과 기업, 제3섹터(비영리조직), 공동체를 제안하였다. 이 중 제3섹터는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 자발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최근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원래 비영리조직은 경제활동을 통한 이윤추구를 하지 않는 단체를 의미한다. 국가는 조세를 통하여, 기업은 이윤추구를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지만 비영리조직은 이러한 자원조달수단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 개인으로부터 받는 기부금과 보조금에 주로 의존한다. 최근에는 비영리조직도 수익사업을 통하여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으나 정부나 주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기부금이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권기헌·정광호, 2002).

우리나라의 비영리조직(제3섹터) 역시 개인과 기업, 정부로부터 받는 기부금과 보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원공급주체는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시민단체, 그리고 모금기관 등이 있다. 모금기관의 자발적인 민간급여에는 민간모금기관과 사회복지관련협의체, 기타(종교기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수행된 모금액과 함께 각 기관과 단체들에 의해 조성되고 지급되는 현물후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역시 제3섹터에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은 법에 근거하여 법정퇴직금과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등을 제공하는 한편, 자발적으로 체력단련비와 각종 수당 등 사내복지와 가족수당, 학비지원, 주택자금지원과 같은 기업의 고용연계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NPO 등에 대한 사회복지의 목적을 띠는 기부금(품)과 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그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속해있는 공동체 차원의 사회복지자원은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사

적이전과 개인 또는 집단의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상호부조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집단의 공제급여가 있다. 공제급여는 학교, 의료, 군인, 경찰, 교직원, 지방공무원, 건설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공제회를 들 수 있고, 사적이전은 가족과 친지에 의한 현금이전을 의미하며, 자원봉사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의미한다.

정부는 비영리조직에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복지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기도 하나 기부를 하는 개인과 기업에 조세제도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복지주체로서 제 3섹터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지원제도는 자발적민간지출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으나 자발적민간지출의 규모를 확대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러한 조세지원은 기업부문과 제3섹터, 공동체 부문에서 행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재원부담주체로서 민간부문은 기업과 시장, 제3섹터, 공동체에 의해서 재원이 조달되고 급여가 제공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제 3섹터는 사회복지시설과 종교기관, 모금기관, 사회적기업의 지출을 포함하고, 중요한 민간복지주체인 기업부문에서는 자발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고용연계급여와 사회공헌활동만을 추계한다.

〈표 2-2〉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재원부담 주체

부문	주체	구분	재원	프로그램	
공공 부문	정부	각 부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외	
		조세지출	법정기부금	법인세	법인세법 24조2항에 근거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법인세	법인세법 24조1항에 근거한 기부금
			특례기부금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73조 3항에 근거한 기부금
			세액감면	소득세, 법인세	사회적기업
	특별공제		소득세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성 기부금	
	사회보장기금	사회보험공단	사회보험기여금	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민간 부문	기업	법정복지	고용주부담금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 급여	
		교통·통신요금 감면	공기업, 민간기업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감면	
		고용연계급여	고용주부담금	가족수당, 학비지원, 주택자금지원 등	
		사회공헌활동	기업기부금	사회복지목적성 기부금	
	제3섹터 (비영리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기부금	생활시설, 이용시설 등	
		종교기관	민간기부금	사회복지시설 운영	
		모금기관	민간기부금	법정모금기관의 모금, 민간모금기관의 모금	
	시장	사회적기업	민간기부금	수급한 후원금	
	공동체	사보험 보험금	개인기여금	자동차보험 일부(대인치료비), 실손형 보험	
		학교안전공제회 대한의사협회공제회	개인기여금	공제급여	

주: OECD는 시장의 민간보험의 보험금, 제 3섹터 자원봉사의 현금가치, 공동체의 사적이전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본 연구 역시 국제적인 기준과 추계의 용이성, 산정방식의 논리성 등의 이유로 본 항목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추계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공급주체에 따른 구분

공급주체 역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부담주체와 공급주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공공지출로 재원이 조달되었지만 주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용어의 재원부담의 그것과 항상 같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제도적인 측면에 가깝다.

1) 공공부문

공공부문은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자원의 형태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조세지출, 교통통신 등 요금 감면, 예산편성기준 외 사회복지지출이 해당된다. 그리고 그 재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부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기금으로 마련된다. 여기서 정부소관기금이란 4대 사회보험기금⁷⁾과 우체국연금기금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관의 응급의료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보훈처 소관의 보훈기금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국무총리실 소관의 복권기금을 뜻한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추계하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영역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사회보험은 2008년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포함한 공적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5대 사회보험에서 제공되는 각종 연금과 급여,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 기관 및 인력에 지출되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정부의 직접 지출은 제도별로 이루어지는데,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 보훈,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조세지출, 예산편성기준 외 사회복지지출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급여와 서비스, 의료급여, 일시적 구호사업, 자활지원사업,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 보육·여성,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훈서비스의 수급대상 영역별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노인복지서비스는 기초노령연금, 일자리 지원 및 운영, 고령화대책기구 자원사업 등으로, 아동복지서비스는 보육을 제외한 저소득가정지원, 아동보호사업 등이 해당되며, 가족복지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및 한부모가족시설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지원 등의 지출을 포함한다.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의료비지원, 단체지원, 장애인생활시설지원, 재활보조기구지원 등이 포함되며, 적극적노동시장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자활훈련,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장애인 취업훈련 등이 포함된다. 반면에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사무소지원, 사회복지사협의회 지원 등은 기타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부문은 공공부조와 건강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급여와 재정지출,

7) 4대 사회보험기금은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국민건강보험기금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기금에 포함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서비스는 물론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사업지출, 특별회계재원에 의한 지출을 포함한다. 보건의료사업은 건강증진질병관리, 원폭피해자지원, 정신질환지원, 의료체계구축, 보건산업진흥, 한방정책, 질병관리본부, 기관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창출사업이 해당되며, 크게 청년실업대책사업,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고용 인프라구축 및 중소기업유휴일자리 충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재정융자특별회계, 국유재산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국립의료원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의한 재정지출을 포함한다. 조세지출은 두 가지 항목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하나는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의 저축에 대한 비과세를 통한 조세감면과 소득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보장에 대한 조세감면과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간접세 면제가 해당된다.

예산편성기준 외 사회복지지출은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으로 지출되었던 사업이외에 사회복지 목적성을 띤 지출로, 그 내용은 통일부의 새터민 지원사업, 교육인적자원부의 인터넷 설비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급식지원, 장애인지원, 타 부처의 장애인지원,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실업대책지원, 법무부의 법률지원 등이 해당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통신요금감면과 입장료 감면 등은 공급주체에 따라 분류된다. 즉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경우 공공부문으로 분류하지만 반면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경우 민간부문으로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철도공사와 도시지하철공사, KBS가 제공하는 교통·통신비 감면과 문화재청의 궁·능 입장료 감면은 공공부문으로 분류한다. 반면에 대한항공 등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교통비 감면과 SK텔레콤 등 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비 감면은 민간부문으로 분류된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급여와 서비스에는 자체예산으로 지출하는 사회보장비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예산으로 구성된다. 특히 생활환경개선비예산 중에는 일반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보건관리,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등이 포함된다.

〈표 2-3〉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재원부담 주체: 공공부문

영역	구분	세부항목		
중앙 정부	사회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지활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이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장애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특수학교운영지원
			·노인	·노인복지서비스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보육사업
			·여성	·여성복지(여성권익증진) ·여성복지단체 지원 등
	·기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보건의료	·정부부문의 보건의료비(시설·장비 포함)		
	국가보상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및 교육, 단체, 의료지원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일자리창출 지원 정책 ·청년실업 대책 ·고용안정서비스		
	조세지출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관련 ·기부금 등 관련		
	취약계층요금감면	·공기업이 제공하는 교통·통신 요금 감면제도 ·공·능 입장료 감면		
예산편성기준 외 사회복지지출	·법률지원 ·인터넷 교육서비스 등			
지방 정부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담금 사업(새터민, 유아교육·보육) ·자체예산사업		
	조세지출	·사회복지시설 취·등록세, 재산세 감면		

2) 민간부문

민간급여는 크게 두 가지 급여로 구분된다. 먼저 법정민간급여(Mandatory private social benefits)는 경제행위자(대체로 고용주)들이 민간보험 등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있는 급여를 의미한다. 표면상 사회복지 재원 및 운영이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세제상의 혜택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정부의 규제를 받는 부문이다.

반면에 자발적 민간급여는 공적 전달체계 외부에서 제공되는 민간급여로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복지 재원 및 운영이 정부의 지원 없이 주로 고용주나 제3섹터(NPO)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문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발적민간급여는 재분배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하며 시장가격으로 지급되는 계약이나 보험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비법

정 민간사회급여는 대부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자발적민간급여는 시장과 기업, 제3섹터(비영리조직), 공동체에 의해 제공된다. 이 중 시장과 기업은 일부가 법정의무민간급여인데 반해 일부가 자발적인 민간급여이다. 반면에 제3섹터와 공동체는 순수한 자발적 복지를 제공하는 공급주체이다. 참고로 한국에서 조세지원은 기업부문과 제3섹터, 공동체 부문에서 행해지고 있다. 먼저 기업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법인이 기부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특례기부금에 대해서 손금산입⁸⁾되므로 세금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제3섹터부문의 조세지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사회복지목적의 성격을 가진 시설이나 공익성 기부를 할 경우에도 특별공제를 통해서 조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한편 Rose(1985)가 복지혼합의 세 주체로서 국가와 시장, 가구부문을 제기한 이후 Evers(1993)와 Pestoff(1998) 등 복지혼합을 논의하는 연구자들 대부분 시장부문을 중요한 복지주체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복지주체로서의 시장부문의 역할은 김진욱(2004; 2005)에서 거의 유일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는 복지시장의 등장 이유를 세 가지로 꼽고 있는데, 민간보험시장의 성장과 높은 민간의료비,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장부문의 진출 등이 그것이다.

미국처럼 국가에서 주관하는 의료복지서비스가 없는 국가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은 비싼 병원비를 지불하거나 아예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들에서 정부는 민간보험을 통한 연금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금공제 등의 방법으로 장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서비스와 간병서비스 등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이를 공급할 복지시장의 역할을 강화시켰으며, 자활공동체 혹은 민간기업의 복지서비스 시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장부문의 복지공급주체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건강보험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이 상당히 큰 편이다. 생명보험통계연보(2009)에 따르면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5개월간) 사망과 상해로 인한 보험금 지출액은 7,698억원(52,635건, 12개보험)으로 같은 기간 만기 환급 및 퇴직 환급으로 지출된 보험금 1조320억원(250,834건)의

8) 당해연도에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회계 처리방법임. 기업회계 기준과 법인세법 간 비용에 대한 기준이 다른 데서 비롯된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 부담도 줄어들게됨(네이버사전).

약 7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험료 수입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96년과 2000년 사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한 연간 수입보험료는 2조3200억원에서 3조800억원 정도로 급성장하였고(김진욱, 2005)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험료와 의료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에서도 짐작된다. 즉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포함하는 개인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의 특별공제액이 2007년 15,771억 원에서 2008년 19,747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역시 2007년 3,972억 원에서 2008년 5,809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인연금은 도입되자마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1996년말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750만명, 연간보험료가 4조원인데 반해 개인연금은 보유계약건수 518만건, 연간수입보험료 5조 3,850억원에 이른 것이다(김진욱, 2005; 이상우, 2002). 그러나 1997년 경제악화로 상당한 보험이 해약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민간부문의 사보험은 자발적인 의사를 통해 해약이 가능하므로 지출 추계시 이러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민간건강보험금과 개인연금저축 등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민간부문의 지출이기는 하나 재분배의 성격(혹은 의무규정)은 미비하다. 또한 사보험의 성격상 사건(건강상의 문제 혹은 퇴직 등)이 발생한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보험의 해약으로 인한 지출이 혼재되어 있는 관계로 자발적민간지출에 해당하는 지출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금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의무규정의 조건), 이를 어길 경우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자동차 보험의 사회적 성격과 함께 의무적인 규정을 가진 제도로써 존재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복지서비스 시장의 등장으로 복지공급주체로서 시장부문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보육서비스와 간병서비스 등의 증가로 복지서비스가 확대됨과 동시에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사회적 목적에 적합한 서비스의 영리성을 추구하고자 복지서비스 시장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복지서비스 시장은 일반적인 시장과는 달리 영리적인 부분과 비영리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⁹⁾. 예를 들면 자활사업의 공동체는 취약계층들을 위한 고용창출과 동시에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업성과가 미비한 사회적 서비

9) 이러한 논의는 김진욱(2005)이 복지 5각 모형을 제시하면서 시장부문을 영리적이라고 구분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공급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서비스 비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이 없고 정부에서 인건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민간부문의 지출로 추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반면에 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체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을 받는 동시에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어 영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복지공급의 주체로 포함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현재 OECD에서는 기업의 복지시장 지출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3. 기능구조에 따른 구분

OECD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며, 재분배 속성을 가진 급여들의 국가간 비교를 위해 9가지 정책 영역을 제안하였다(OECD, 2009). 이러한 정책 영역은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그리고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정책영역은 다시 급여의 형태에 따라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노동시장영역은 현금과 현물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1) 노령(Old-age)

OECD에서 규정하는 노령 영역은 노령연금에 대한 모든 현금 지출을 포함한다. 노령 현금급여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을 제공하거나 법정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거나 노령연금 기여의 필수요건을 완수한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급여이다. 이 영역에는 또한 조기은퇴연금이 포함된다. 조기은퇴연금은 연금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노령의 현금급여로는 부양자가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지불되는 부양자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한다. 또한 돌봄서비스, 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 기타 현물 급여 등 노인서비스에 관한 지출을 포함한다. 이는 기관에서 시설보호에 이용되는 지출까지 포함한다(OECD, 2007).

이러한 OECD 기준에 따라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노령부분은 국민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시금 등을 포함한다. 연금 외의 현금급여로는 노인교통비와 기초노령연금급여가 포함된다. 단, 노인교통비는 2009년 이후 기초노령연금으로 흡수된 관계로 통계생산이 중단된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의 대두로 사회복지서비스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 바, 노인영역의 현물 급여 항목 역시 상당히 증가하고 세분화되고 있다. 먼저 노인재가서비스에는 노인

돌보미바우처와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기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등이 포함되고 있다. 올해 연구에서 신규 분화된 항목으로는 노인일자리지원(사회공헌형일자리창출, 시장참여형일자리창출),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원, 노인복지민간단체사업지원, 노인자원봉사활성화, 박람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교육지도사 양성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고 있다. 또한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방문간호를 제외한 급여가 포함된다. 이 외에도 노인들을 위한 고속철도, 일반철도, 지하철, 고공입장료 감면 등이 있고, 공공임대주택건설비(당해 연도 기존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 공제) 중 노인가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제도의 신규 도입이나 세부항목의 증가로 인한 항목 조정으로 국제 기준에 국내 제도들을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노령 영역의 법정퇴직금은 국내 상황과 국제 기준의 불일치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되었다. 즉 OECD는 노동시장 환경 때문에 조기퇴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실업으로 분류하고, 노령에서는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OECD, 2007)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법정 은퇴 연령 이전에 퇴직금이 지급되거나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법정퇴직금만을 노령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 법정퇴직금은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시행되어 노후소득보장의 역할과 실업보상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부터 이 두 가지 성격의 급여를 분리할 수 없어 실업 영역에 전액을 포함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OECD SOCX 통계 담당자는 한국의 이러한 기준이 국제 기준과 불일치함을 지적하고, 국제적인 표준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법정퇴직연령에 달한 사람이 받는 법정퇴직금에 대해서만 노령에서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이중화로 인해 비정규직으로 근로하는 사람들은 계약기간 종료시 퇴직금을 받지만, 이들은 법정 퇴직연령보다 훨씬 젊은 나이이다. 따라서 이 때 퇴직금은 노령의 성격보다는 실업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법정퇴직금을 받는 사람 중 법정퇴직연령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받는 퇴직금만을 분리하여 노령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병립하고 있고, 법정 퇴직금 점유율이 퇴직연금의 점유율보다 훨씬 더 높으며, 퇴직연금제도의 늦은 도입으로 수급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법정퇴직금의 약 20%¹⁰⁾가 노령에 포함되고 있다(고경환 외, 2009). 향후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되면 모두 포함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4〉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노령

코드	급여종류	항 목	프로그램 예시	
1. 노령	현금급여	1.1.0 연금		
		1.1.1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1.1.2 별정우체국연금	퇴직연금 등	
		1.1.3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	
		1.1.4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퇴직연금 등	
		1.1.5 군인연금	퇴직연금 등	
		1.2.0 조기퇴직연금		
		1.3.0 기타 현금 급여		
		1.3.1 공무원연금	일시금	
		1.3.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일시금	
		1.3.3 군인연금	일시금	
		1.3.4 별정우체국연금	일시금	
		1.3.5 노인교통비 ¹⁾	노인교통비	
		1.3.6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급여	
		현물급여	2.1.0 시설보호/재가서비스	
			2.1.1 노인복지시설 ²⁾	
	2.1.2 노인재가서비스 ²⁾		노인돌봄미바우처, 독거노인도우미과건 등	
	2.1.3 노인보호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양로요양시설 등	
	2.1.4 노인생활시설 ²⁾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노인그룹홈신축지원	
	2.1.5 노인인적자원개발사업		노인일자리지원,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2.1.6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만 제외	
	2.2.0 기타 현물급여			
	2.2.1 노인교통비 ¹⁾	노인교통비		
	2.2.2 노인요금할인	고속철도, 일반철도, 지하철, 고궁등입장료 전가구 중 노인가구 입주비용에 대한 공공		
2.2.3 공공임대주택건설비	임대주택건설비(단, 당해 연도 기존공공임대 주택 분양전환금 공제)			
2.2.4 기타	장수노인 기념품 증정, 노인의 날 행사			

주: 1) 노인교통비 항목은 현물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였으며,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으로 흡수된 관계로 중단됨.

2) 노인복지시설은 2008년 이후 노인생활시설과 재가서비스로 구분함.

10)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는 퇴직소득자의 연령별, 지역별, 근속연수별 현황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수치를 결정한 것임.

2) 유족(Survivors)

대부분의 국가들은 배우자나 부양자가 사망한 사람들에게 공적 영역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지출 프로그램을 가진다. OECD는 유족급여의 현금급여에 유족급여 수급자의 수당과 부양자에 대한 보조금과 기타 현금급여를 포함하고, 유족급여의 현물급여에는 장제비와 기타 현물급여를 제시하고 있다(OECD, 2007). 한국 사회복지지출에서 유족연금 역시 이러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표 2-5〉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유족

코드	급여종류	항 목	프로그램 예시
2. 유족	현금급여	1.1.0 연금	
		1.1.1 국민연금	유족연금 등
		1.1.2 별정우체국연금	유족연금 등
		1.1.3 보훈연금	군경유족 등과 기타수당, 수시보상금
		1.1.4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등
		1.1.5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등
		1.1.6 군인연금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
	1.2.0 기타 현금 급여		
	현물급여	2.1.0 장제비용	
		2.1.1 건강보험의 장제비용	
		2.2.0 기타 현물급여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

근로무능력 급여는 장애로 완전 혹은 부분적인 근로무능력을 가질 때 지급하는 급여로 구성된다. 장애는 선천적일 수도 있고 사고와 질병의 결과일 수도 있다. 유급질병휴가, 특별 수당, 연금 등 장애 관련 급여는 산업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지출로 유급질병휴가(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항목에 포함된다. 질환으로 인한 일시적인 근로무능력으로 야기된 소득의 상실과 관련한 현금급여는 유급질병휴가(other sickness daily allowances)에 포함된다. 그러나 부양 아동의 질병이나 부상과 관련하여 지급된 급여는 가족 현금 급여에 포함하므로 이 영역에서는 제외한다. 의학적인 보호에 대한 공적인 급여 전체는 보건영역에 포함된다. 근로무능력 급여에는 또한 돌봄서비스와 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 기타 현물 급여 등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 지출이 포함된다(OECD, 2007).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는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이 세

분화되어 제시되어 있다. 이 외에 기타 현금급여로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수당은 지급이 중단되고, 대신 장애연금이 지급되어 장애연금제도로 항목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발달로 표적화된 대상층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는 사회복지의 최근 경향에 따라 생활시설과 인적자원개발,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직업재활지원, 재활훈련 및 치료, 교육지원 등의 현물급여가 세분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직업재활과 재활훈련, 교육지원, 사회지원 등 장애인의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들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표 2-6〉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근로무능력

코드	급여종류	항 목	프로그램 예시
3. 근로 무능력	현금급여	1.1.0 장애연금 1.1.1 국민연금 1.1.2 공무원연금 1.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1.4 군인연금 1.1.5 보훈연금 1.2.0 산업재해 및 질병휴가 1.2.1 산업재해보상보험 1.3.0 유급질병휴가(산업재해) 1.4.0 유급질병휴가(기타 상병수당) 1.5.0 기타 현금급여 1.5.1 장애수당 1.5.2 기타 현금급여	장애연금 장애보상금, 장애연금, 공무원요양비 장애연금 상이연금 상이군경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장애급여
	현물급여	2.1.0 시설보호/가사보조서비스 2.1.1 장애인복지시설 2.1.2 장애인에 대한 자본이전 2.1.3 장애인 보호시설 2.1.4 장애인사회활동지원 2.1.5 장애인 생활시설 2.1.6 장애인가사보조서비스 2.1.7 장애인인적자원개발 2.1.8 장애인사회지원 2.1.9 공공임대주택건설비 2.1.10 기타 2.2.0 재활서비스 2.2.1 직업재활시설 2.2.2 재활훈련 및 치료 2.3.0 기타 현물급여 2.3.1 장애인 보조기구지원 2.3.2 장애인학교지원 2.3.3 장애인교육지원 2.3.4 장애인 요금 감면 2.3.5 기타	시각장애인안마센터, 장애인편의증진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가족도우미, 교육비, 휴식지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단체,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 전기구 중 장애인가구 입주비율에 대한 공공임대주택건설비(단, 당해 연도 기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 공제)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보강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재활보조기구, 장애인보장구구입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병원학교 운영 지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장애이무상보육료 철도, 지하철, TV시청료, 통행료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등

4) 보건(Health)

보건영역의 사회복지지출은 OECD Health Data의 자료를 인용한다. 보건부문의 공공지출은 모두 포함되는데, 개인서비스와 집단보건의료서비스, 투자 등이다. 이들 항목에는 입원환자요양서비스, 보조의료서비스와 제 약품에 관한 지출이 포함된다. 반면 공공기관의 용자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질병과 관련된 현금급여는 상병급여에 포함

된다. 자발적민간부문의 보건지출은 재분배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민간건강보험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만 포함한다. 이러한 민간건강보험은 주로 고용에 기반을 두거나 국가의 조세 혜택 등이 있다(OECD, 2007).

한국의 보건부문 추계는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에 관한 연구¹¹⁾에 기반을 두고 있는 관계로 이를 기준으로 보건부문의 개념과 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국민의료비는 개인의료비와 집단보건의료비, 고정자본형성으로 구성되는데 개인의료비는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서비스 내지 재화에 대한 지출을 의미한다. 흔히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내지 재화에 대한 지출이다”. 집단보건의료비는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 관련 지출로 크게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이나 보건행정관리비”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고정자본형성이란 “시설 및 자본에 대한 신규투자를 지칭한다. 1년간의 보건의료관련 신규건물(병원, 보건소 등)의 건설 또는 증축, 대형장비의 구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정형선 외, 2010).”

〈표 2-7〉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보건

코드	급여종류	항 목	하위항목 예시
4. 보건	현물급여	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장기간호케어서비스 보조의료서비스 외래용의료재화 예방/공중보건 보건관리/건강보험 보건관련기능	입원치료서비스, 외래치료서비스, 재가 치료서비스 입원재활서비스, 외래재활서비스, 재가재활서비스 입원장기간호케어서비스, 재가장기간호케어서비스 임상병리검사, 진단영상, 환자수송/응급구조 약품/기타의료소모품, 치료용구/기타의료내구재 모자보건/가족계획·상담, 학교보건, 전염병예방 일반정부보건관리, 민간건강보험관리 공급기관 고정자본형성, 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

자료: 정형선 외(2003) 재구성

5) 가족(Family)

가족영역은 가족을 지지하는 지출을 포함하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과 함께 기타 부양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과 연관된다. 가족영역의 현금급여에는 가족수당과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관련 지출, 기타 현금 급여들이 포함되고 현물급여에는 돌봄서비스와 가사보조서비스, 기타 현물급여 등이 포함된다(OECD, 2007).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가족영역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여성 및 가족관련 서비

11) 이는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뉴얼 『System of Health Accounts(2000)』을 기준으로 매년 보건지출을 생산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상세한 논의는 정형선 외(2010), 『2008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을 참조바람.

스, 아동청소년 사업 등을 포함한다. 또한 미취학아동에 대한 보육·유아교육의 이원화 체계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보육시설지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지원을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가족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으나, 최근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증가로 항목들이 세분화되고 있다.

〈표 2-8〉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가족

코드	급여종류	항 목	프로그램 예시
5. 가족	현금급여	1.1.0 가족수당 1.1.1 한부모가족 1.1.2 보훈 등 1.2.0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1.2.1 산전후휴가(고용보험) 1.2.2 육아휴직(고용보험) 1.3.0 기타 현금 급여 1.3.1 아동발달계좌 1.3.2 기타 현금급여	자녀양육비·교육비지원, 고등학생수업료 학자금 지원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사업관리운영비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현물급여	2.1.0 시설보호/가사보조서비스 2.1.1 아동청소년 주간보호 2.1.2 보육시설(어린이집) 2.1.3 유아교육기관(유치원) 2.1.4 가족이용시설 2.1.5 성폭력가정폭력 등 2.1.6 가사보조서비스 2.1.7 여성인적자원개발 2.2.0 기타 현물서비스 2.2.1 아동복지시설 ¹⁾ 2.2.2 아동양육시설지원 ¹⁾ 2.2.3 아동시설 ¹⁾ 2.2.4 가족복지시설 ¹⁾ 2.2.5 아동청소년 생활시설 2.2.6 여성 및 가족 생활시설 2.2.7 아동청소년 보호 2.2.8 기타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보육료지원, 종사자인건비, 평가인증운영비 유아교육비지원, 대체교사인건비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상담소 운영비지원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여성일자리창출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아동시설확충, 요보호아동그룹홈지원 한부모가족시설, 한부모가족단체지원 위기청소년지원, 인터넷중독치료, 청소년상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주: 1) 기존의 단일항목을 본 연구에서 세분화 함.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OECD는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영역을 “수급자의 고용상황 개선이나 그들의 소득능력을 증가시키는 활동들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지출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항목은 공적인 고용 서비스와 행정, 노동시장 훈련, 학업에서 직장으로 이동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실업자나 다른 사람들(아동과 장애인 제외)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고용을 촉진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관한 지출을 포함한다'. 또한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은 현금과 현물급여의 구분이 없다(OECD, 2007).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LMP)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OECD가 ALMP Database를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LMP Database를 바탕으로 항목별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과거 복지는 전통적인 가족이데올로기에 기초하였다. 즉 근로가 가능한 남성생계부양자라면 충분한 소득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남성생계부양자가 사망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의 빈곤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수립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일자리는 부족하고 경쟁자는 많아졌으며,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임금을 주는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로 과거에는 매우 당연했던 일자리가 최근에는 최고의 복지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의 둔화,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는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만 지급할 수 있도록 개혁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구직요건이다. 즉 실업자들은 공공고용안정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 PES)에 등록하고 구직활동을 할 때에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PES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지원센터와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가 있다.

〈표 2-9〉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ALMP

코드	항 목	프로그램 예시
6. ALMP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0.1.0 PES와 행정	직업안정기관, 직업상담원, 뉴스타트, 고용안정사업
	0.2.0 직업훈련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 새터민 직업훈련
	0.3.0 일자리순환 및 나누기	교대제전환지원금, 무급휴업근로자지원, 일자리나누리
	0.4.0 고용인센티브	고용촉진장려금(신규채용, 고령자 등), 고용창출지원금
	0.5.0 지원고용 및 재활	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0.6.0 직접적인 일자리창출	청년인턴제, 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 창업보육센터
	0.7.0 취업인센티브	창업점포지원, 청년벤처지원, 기술창업 아카데미

7) 실업(Unemployment)

OECD는 실업을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 지출로 정의한다. 현금급여에는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상과 해고수당이 포함된다. 해고수당은 그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환경 때문에 고용이 중단되거나 임금이 삭감된 사람들에게 공공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에만 해당된다. 또한 급여가 퇴직이나 다른 노동시장의 사유로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연금처럼 수급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조기은퇴 항목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현물급여가 있다”(OECD, 2007).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실업영역에 포함되는 급여로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조기재취업 등이 있다.

〈표 2-10〉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실업

코드	급여종류	항 목	프로그램 예시
7. 실업	현금급여	1.1.0 실업보상/해고수당 1.2.0 노동시장이유로 조기퇴직	구직급여, 상병급여, 조기재취업, 기타
	현물급여		

8) 주거(Housing)

OECD는 주거 영역에 대한 지출항목으로 “임대료 보조와 개인에게 주거비용을 보조하는 기타 급여를 포함한다. 또한 임대주택에 배정된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공부조도 포함한다(노르웨이는 주택 소유자가 그의 집에 살 때만 제공). 왜냐하면 여기에서 급여는 관습적으로 현물급여로 분류되는 ‘배정된’ 현금 급여와 관련되기 때문에 포함된다. OECD는 또한 노인과 장애인, 기타 저소득층에게 즉시적으로 제공하는 직접적인 현물 주거 급여는 다른 영역에서 각각 포함한다(노령, 장애관련, 기타 항목에서 각각). 한편, 모기지론, 공사비용 보조, 공공시설 비용에 대한 보조와 같은 다른 형태의 주거 지원은 사회적 속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시설이 저소득 가구에 직접적으로 제공될 때에만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지원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지원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거 지원에 포함하지 않는다(OECD, 2007)”.

OECD 기준에 따른 한국의 주거영역급여는 국민주택기금 사업 중 공공·국민임대주택 건설비용 일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OECD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은 노인, 장애인, 기타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여 현물급여로 포함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타 사회복지영역’의 ‘기타’ 부분의 현금급여에 포함된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용자와 전세자금용자 등과 용자금액은 전액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사회복지지출에서 주거영역의 추계 내용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9) 기타 사회정책(Other social policy areas)

OECD는 “다양한 이유로 관련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제공되거나 다른 급여들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제공되는 모든 지출을 기타 사회 정책 영역에 포함한다. 결혼이민자와 새터민 등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은 이 항목에서 각각 구분하여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항목에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지출 역시 이 항목의 기타에 포함한다(OECD, 2007)”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 사회복지지출 중 기타 사회정책 영역은 공공부조 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고 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부조제도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자활사업으로 자활근로, 성과중심자활사업, 디딤돌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자활급여와 자활소득공제,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 등이 포함된다. 셋째, 일시적인 빈곤 혹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저소득층난방비 지원, 저소득층에너지 보조금, 긴급복지, 한시생계구호 등이 포함되며 2010년부터는 희망키움통장이 포함될 예정이다. 넷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즉 새터민과 북한이탈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과 이재민구호가 포함된다. 특히 재해와 관련하여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의 재해부조금이 기타 사회정책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표 2-11〉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기타 사회정책

코드	급여종류	항 목	프로그램 예시
9. 기타	현금급여	1.1.0 소득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교육급여 자활소득공제
		1.1.1 노령수당 ¹⁾	
		1.1.2 기초생활보장급여	
		1.1.3 교육급여	
		1.1.4 고아에 대한 특별지원 ²⁾	
		1.1.5 취로구호 ²⁾	
		1.1.6 자활	
		1.1.7 중증장애인 생활비보조 ²⁾	
		1.2.0 기타현금급여	
		1.2.1 의사상자 예우	
	1.2.2 새터민	새터민정착금	
	1.2.3 기타		
	현물급여	2.1.0 공공부조	푸드뱅크,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지원 부랑인지활지원, 부랑인시설운영비지원 사할린대륙동포입소시설, 일본군위안부 피해지원 북한이탈청소년지원, 교육훈련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자활공동체 이재민구호, 주택피해복구비 TV 시청료 감면 공공임대주택건설비(저소득층 대상, 단, 당해 연도 기존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 공제)) 차상위층양곡할인, 긴급복지지원 등
		2.1.1 푸드뱅크	
		2.2.0 기타 현물서비스	
		2.2.1 급여감면 ²⁾	
		2.2.2 부랑인지원	
		2.2.3 사할린대륙동포입소시설, 일본군위안부 피해지원	
		2.2.4 새터민	
2.2.5 자활			
2.2.6 자연재해			
2.2.7 저소득가구 요금감면			
2.2.8 공공주택임대건설비			
2.2.9 기타			

주: 1) 기초노령연금의 도입(2008년)으로 더 이상 생산되지 않으나 이전자료가 있어 항목 구분을 유지하고 있음.

2) 과거의 제도에 따른 구분으로 지금은 데이터가 생산되지 않고 있음.

제3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작성원칙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기본적으로 OECD의 사회복지지출 추계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따라서 OECD가 각국의 사회복지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제안한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로 구성된 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에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이 결합한 총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에 조세의 영향이 반영된 순사회복지지출을 생산하는데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유럽을 중심으로 한 OECD의 기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의 차이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실제 보다 적게 추계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기업을 퇴사할 때 받는 실업급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정퇴직연령 이전에 급여를 수급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선진국의 퇴직연금제도와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법정퇴직금이 법정퇴직연령이전에 수급될 때는 고용주가 조성한 재원에서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지출로 추계되지 않는다. 이러한 항목은 한국에서 실업 이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지만, 해고수당과는 성격이 다른 관계로 실업항목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한국과 OECD의 상이한 기준으로 추계되지 못하는 지출을 파악하고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이 최대한 국제적인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제고하는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 2장 1절에서 살펴본 OECD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범위가 3절에서 다시 언급될 필요가 있다. OECD는 사회적 목적과 재분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지출의 국가간 비교를 위해 5가지 지표(공공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 자발적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와 9가지 기능 영역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국내적인 분류기준(재원부담, 공급주체, 기능구조)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내용들과 중복되는 내용들을 제외하고 논란이 있는 제도 혹은 신규 도입되는 제도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지표는 5가지이다. 먼저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PSE)은 사회적 목적과 재분배성격을 충족시키는 일반정부지출과 사회보험급여로 구성된다. 즉 정부 예산 중 사회적 목적을 갖는 12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 및 여성, 노동, 노인·청소년,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의료, 건강보험, 식품의약품안전)으로 구성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출 외에 지방정부의 지출을 포함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디지털회계시스템(D-Brain)의 추계와 차이가 있다. 한편 최성은 외(2010)는 정부의 12개 부문에 대한 예산의 합을 ‘사회예산’이라고 명명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추계하고 있으나 재분배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 관계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정부의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 12개 부문 중 재분배적 성격을 갖는 급여만 추계하는 관계로 12개 부문 중 일부 금액은 추계에 반영되지 않는다¹²⁾.

12) 대표적인 예로 사회복지시설의 용자사업과 자활대상자와 한부모가족의 자립자금용자사업을 들 수 있음. 또한 주택부문 역시 사회적 목적과 재분배적 성격을 갖는 지출만을 포함하고 있어 상당부분 추계에 반

복지국가의 성립 이후 복지는 중앙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능력과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된 것이 공공사회복지지출이다. 이러한 이유는 재원부담주체와 공급주체 모두 공공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사회적 목적과 재분배적 성격 모두 가장 강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공공사회복지지출로 사회적 목적과 재분배적 성격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체감한 여러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복지주체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고용복지의 일환으로 법정복리를 실현하기 시작했다. 즉 법정민간지출은 법적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여로써 법정퇴직금, 4대 사회보험에 대한 고용주부담금, 출산 전후 휴가급여 중 고용주 지급분(60일 이상 지급분), 질병휴가 기간 동안의 법정임금이 포함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통·통신비 감면과 문화관광료 할인 등이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역시 법정민간복지지출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민간항공사의 운임료 할인을 들 수 있다.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법정민간부문지출은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추계하고 있지만, 제도별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모두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의 급여 외에 고용주 부담의 급여가 제공되는 반면,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의 급여만 있지 고용주 부담의 급여가 없다. 따라서 법정민간지출에는 산전후휴가만 포함되며 육아휴직은 공공복지지출로 분류된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부성휴가에 대한 개별 급여가 법정민간복지지출에 포함되나 우리나라는 부성휴가에 대한 현금급여가 없는 관계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듯 법정민간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MPSE)은 정부가 법과 제도로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성격은 강하나 기업의 고용여부와 근무형태에 따른 차이, 대상조건의 엄격성으로 재분배적 성격은 다소 약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복지국가 의지가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공공사회복지지출과 함께 국가간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SE)을 구성한다.

영되지 않고 있음.

에스핑 안델센(1990)이 지적하듯이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기초한 사회복지제도의 형성은 노동시장에서의 근로가 가장 큰 복지이므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가장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체계가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세계화로 인한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맞벌이가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훌륭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복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의 규제를 받는 법정 복리 외에 비법정 복리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을 통한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늘려가는 추세이며, 공공부문의 재원 조달과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를 통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특히 제3섹터의 서비스 공급기관들은 정부의 재원을 받음과 동시에 이용자와 국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모금을 통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상당히 메워주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VPSE)은 정부의 재정부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공적인 성격을 지닌 기관을 이용하여 지출되므로 민간부문의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과 재분배적 성격을 가진다.

자발적민간부문지출의 대표적인 주체는 종교단체, 복지시설 및 기관, 시민단체, 그리고 모금기관 등이다. 우선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적 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각종 사회복지관련 현금과 현물이 포함된다. 복지시설의 경우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서 제공하는 자원의 총량을 의미한다. 생활시설에는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대상별 시설과 부랑인 및 노숙인, 정신요양, 결핵 및 한센 등 특별한 욕구를 가진 대상을 위한 복지시설이 있다. 이용시설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복지관, 아동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복지관 등 대상별 복지관과 함께 청소년, 부랑인 및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 및 그 가족, 알콜상담센터, 정신보건시설 등 복지시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금급여는 포함하는 반면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현물급여는 제외하고 있다.

모금의 경우, 모금기관, 사회복지 관련협의체, 그리고 기타(종교기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수행된 모금액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3섹터에 의한 자원은 현금자원 뿐 아니라 각 기관·단체들에 의해 조성·지급된 현물후원 등이 포함되며, 이는 중요한 사회복지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이 속해있는 공동체 차원의 사회복지자원은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이전과 상호부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집단의 공제급여가 있다. 이중 가족과 친지에 의한 현금이전은 사회적인 목적과 재분배적 성격이 약하므로 포함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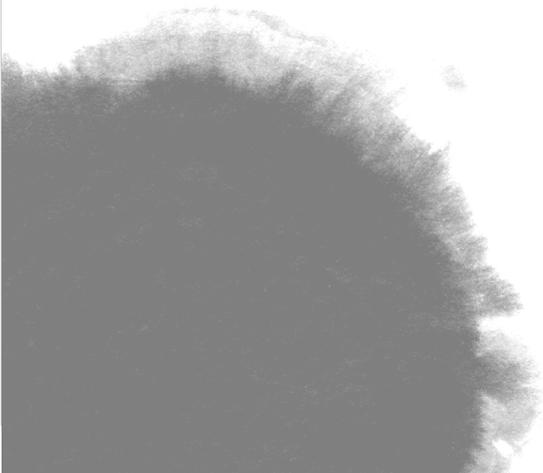
지 않으며, 학생, 의료이용자, 군인, 경찰, 교직원, 지방공무원, 건설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공제회가 포함된다.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인 사회복지지출에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이 합해진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은 사회복지지출에 비해서 범위가 넓어지고 공급주체에 따른 구분도 가능해진 장점이 있다. 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공급주체의 비교는 용이하나 총사회복지지출 그 자체로 국가간 비교에서 자주 이용되는 지표는 아니다. 왜냐하면 총사회복지지출은 조세 전 지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복지주체별 경향과 변화를 나타내기에는 용이하지만 조세시스템이 공·사지출에 끼치는 영향으로 인한 실제 사회복지지출의 크기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OECD는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순(稅後)사회복지지출이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부문에서의 조세정책을 구사하는 재정적인 노력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복지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경제의 생산량 중 그들이 배분받는 비중으로 볼 수 있다(OECD, 2001a). 순사회복지지출은 국가간 비교를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 차원의 재분배(re-allocate)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고경환 외, 2009).

03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추계방법



제3장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추계방법

제1 절 공급주체와 자원부담주체에 따른 추계방법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에는 정부의 일반지출과 사회보험, 조세지출, 교통·통신 등 요금 감면이 해당한다. 정부의 일반지출은 정부 예산 사업 중 사회적 목적을 가지며 재분배적 성격을 갖는 사업들을 구분한다. 이러한 기준은 OECD 기능구조 9개 부문을 기준으로 하며, 우리나라의 정부예산 중 사회적 목적을 갖는 12개 보건·복지부문¹³⁾으로 구성된다.

1. 정부 부문

정부 일반지출에 대한 추계는 기획재정부의 나라살림과 각 부처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나라살림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각 부처의 예산서는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함께 제시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포함되는 일반 정부 지출의 기금은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육성기금과 응급의료기금, 여성발전기금, 고용노동부 소관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보건처 소관 보훈기금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국무총리실 소관 복권기금 등이다.

1)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상제도

공공부조제도는 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13)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부문, 보육·가족 및 여성, 노동, 노인·청소년,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의료, 건강보험지원, 식품의약품안전 임.

제도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하여 보충적인 급여를 조건 없이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사회보상제도는 특정한 집단에 대한 특별보상의 취지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제도를 의미한다. 개인의 경제적·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종종 사회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회의 운영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로서 국가는 개인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일례로 전쟁 중 개인의 희생이나 재산상 손실의 경우 외교적 또는 군사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므로 국가의 보상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보상제도로는 국가보훈제도, 고엽제피해 보상과 위안부보호 등이 있다. 본 추계에는 <표 3-1>의 급여내용이 모두 포함되었다.

<표 3-1>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상제도의 개관

	공공부조제도		사회보상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¹⁾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보훈, 위안부보호, 사할린동포보호 등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선정된 자	애국지사, 순국·애지유족, 군경유족, 무공수훈자, 4.19 부상자 및 그 유족 등
급여내용	-7종(긴급급여 포함 8종)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자활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긴급지원,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보상금지급, 교육보호, 의료급여, 보장구 지급 등
전달체계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보훈처

주: 1) 재원조달은 국고와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재정분담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2)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노령, 장애, 기타 생활상의 곤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과는 차별되는 제도이다. 최근 10년간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노인복지서비스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노인인구와 장애인구의 증가에 따른 소득보장, 고용기회 확대, 의료문제, 기타 사회활동 참

여문제의 확충에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에는 요보호대상자(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부랑인 등)에게 상담, 재활, 시설입소, 직업보도 등을 행하는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과 고용촉진기능 등을 수행하는 고용서비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추계자료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의 세입세출예산서를 활용하여 추계하였다. 추계의 포괄범위는 중앙정부의 직접지출은 물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에 의한 지방비(자치단체고유사업)를 포함⁴⁾하였다. 한편, 정형선 외(2010)에 따르면 보건영역의 정부지출 중 개인의료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통계연보와 보건복지백서 등 보충자료를 이용하고, 집단보건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예결산자료와 국민건강증진기금결산자료, 보건소 집행내역조사를 통해 추계하며, 자본형성은 정부의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 의료용구산업현황 자료를 참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별 개관

제 도	소 관 부 처	급 여 종 류
노인과 장애인	보건복지부	- 노인관련 복지서비스 -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	- 장애인에 대한 특수학교 운영지원
가족	보건복지부	- 보육·아동사업 등 - 복지관 운영 등 지원
보건의료 ¹⁾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 개인의료서비스 - 집단보건서비스(시설·장비포함) - 자본형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²⁾	고용노동부 등	- 실업자·취업자에 대한 훈련 -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 실업자 창업지원 - 장애인 직업재활 등 - 기타 고용서비스와 행정

주: 1) 건강보험 급여 비포함.

2) 고용보험 급여 비포함.

2. 사회보험부문

사회보험은 정부의 일반지출과는 다르게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

14)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중 보건과 복지 분야의 자료수집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예산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달된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추계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 포함된다. 특히 공적연금은 근로자 및 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 등 적용대상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어있다.

1)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사회적 목적을 가지며 재분배 성격이 있어 공공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지만 기여금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므로 재분배적 성격이 정부의 일반지출에 비해 다소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공공기관을 통해 급여가 전달되므로 공급주체는 공공부문이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그리고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연금의 급여종류로는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제외)을 공통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그 외 급여는 연금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¹⁵⁾. 이들 연금급여의 성격은 기능구조와 연계된다. 즉 퇴직연금은 노령(Old-age) 영역에, 유족연금은 유족(Survivors) 영역에, 장애연금은 근로무능력(Incapability-related) 영역에, 재해부조금은 기타(Other policy areas)에 각각 포함한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1989년 전국민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2000년 보험자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던 의료보험제도가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되었다. 건강보험 역시 사회적 목적과 재분배적 성격을 가지고,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의해 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기능구조상으로는 보건(Health)영역에 포함되며,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보건 영역에서 건강보험은 사회보장기금(HF.1.2 사회보장기금)에 포함된다. 개인의료서비스의 추계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연보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사업연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집단보건서비스의 추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연보와 건강검진결과분석, 고용노동부의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 산재의료관리원의 산

15) 퇴직수당의 경우 각 연금에서 급여(국민연금 제외)를 실시하고 있음.

재의료관리원 손익계산서를 활용하고 있다(정형선 외, 2010).

3)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범위가 최근 1인 사업장에서 임시·일용직, 시간제근로자¹⁶⁾까지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장례비로 이루어져 있다. 고용보험의 급여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모성보호사업¹⁶⁾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 산재보험사업연보와 고용보험통계연보, 보충을 위해 각 기관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3. 기업부문

기업부문의 사회복지지출은 고용주의 법정급여, 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 기업의 법정복지, 사회공헌활동으로 구분된다. 고용주의 법정급여는 법적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자원으로써 법정퇴직금, 4대 사회보험에 대한 고용주부담금, 출산 전후 휴가급여 중 고용주 지급분(60일 이상 지급분), 질병휴가 기간동안의 법정임금이 포함된다. 또한 기업에서 제공되는 교통통신요금 감면은 크게 교통부문과 통신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통부문은 항공회사의 요금 감면을 의미하며, 통신부문은 KT, 하나로통신(현 SK 브로드밴드로 사명 변경), SKT, KTF, LGT(LG U⁺로 사명 변경), 데이콤(LG U⁺로 통합) 등의 사기업에서 제공하는 시내·시외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등에서의 요금감면을 의미한다. 한편 기업의 법정외복지에는 체력단련비와 각종 수당 등 사내복지와 가족수당, 학비지원, 주택자금지원과 같은 기업의 급여외 지원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공헌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NGO 등에 대한 기업의 기부금(품) 등이 포함된다.

16) 모성보호사업에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있음. 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산전후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72조) 휴가기간 중 급여의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남녀고용평등법 18조) 지급함. 육아휴직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근로자(근로기준법 19조)가 1년 내의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매월 5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고용주의 법정급여

민간복지 중 법률로 강제된 기업복지에 한하여 살펴보면 법정퇴직금과 산전후휴가급여, 그리고 상병으로 인한 유급질병휴가급여가 있다. 이들 세 급여는 근로기준법(1953)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현재는 5인 이상의 사업체로 확대되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1999년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2001년부터 유급질병휴가급여를 의무화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제2항).

법정퇴직금제도(동법 제34조)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법정퇴직금의 추계는 2005년도 자료까지는 퇴직자의 전체 기초자료가 수록된 국세청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이후부터는 국세연보를 이용하고 있다. OECD가 지난 2년간의 논의를 토대로 작성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법정퇴직금 지출은 실업(NO.7)에서 노령(NO.1)으로 분류가 변경되었다(Adema & Ladaique, 2009). 즉 정년퇴직자의 퇴직금만 노령급여에 포함하고, 자발적 퇴직자와 해고자의 퇴직금은 제외되었다. 이로써 퇴직금의 약 20%가 포함되게 되었다.

산전후휴가급여(동법 제72조)는 기업주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 유급보호휴가를 실시한 90일¹⁷⁾ 동안의 급여이다. 이들 3개월 중 2개월은 기업이, 나머지 1개월은 고용보험이 부담한다. 먼저 기업부담은 건강보험 급여화일에서 분만급여를 수령한 자와 자격화일에서 보수월액¹⁸⁾을 분석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2(개월)를 곱하여 추계하였다. 다음 고용보험 부담은 고용보험통계연보를 활용하였다. 다만, 추정상 전제는 분만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월평균소득을 수령한다는 조건에 따라 실시하였다.

$$\text{Maternity Bene Private} = \sum W_{ij} \times 2$$

W_{ij} = i연도 직장여성 중 분만한 j 취업자의 월평균소득

그리고 근로자의 유급질병휴가급여(동법 제82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경우 사용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휴업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이다. 이 급여의 추계는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유병률, 외병일수)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취업자 중 상용근로자수,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를 활용하여 추계하였다. 다만, 추정상 전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질병휴가 동안 월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가

17) 2001년 11월부터 90일로 확대됨.

18)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출을 위한 분만급여 수령시점의 월보수액을 의미함.

정 하에 실시하였다.

$$Sickness\ Bene = \sum M_{ij} \times B_{ij} \times 26.0714^{상수1)} \times E_{ij} \times W_{ij} \times 0.02^{상수2)}$$

이 때, $Sickness\ Bene =$ 질병휴가기간 동안 법정임금

$$M_{ij} = i \text{ 연도 } j \text{ 연령층의 유병률(\%)}$$

$$B_{ij} = i \text{ 연도 } j \text{ 연령층의 외병일수}$$

$$E_{ij} = i \text{ 연도 } j \text{ 연령층의 취업자수}$$

$$W_{ij} = i \text{ 연도 } j \text{ 연령층의 월평균임금}$$

상수¹⁾ = 표본집단의 14일간 유병률 및 외병일수의 연간화

상수²⁾ = 법정임금(60%)의 일할 환산치임

2)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감면제도 등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취약계층이나 사회보상대상자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교통·통신 등과 관련한 이용요금의 감면혜택을 법률¹⁹⁾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전화, 이동통신, 철도, 지하철, 국내선 항공기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의 일부를 할인 또는 면제받는 이 제도는 대상자와 서비스업종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현재 요금감면대상자인 노인인구와 등록 장애인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수 또한 늘고 있다. 이로서 앞으로 서비스요금의 감면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본 추계의 범위로는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에 국한하며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제외한다(외국의 자발적 참여 서비스로는 미국의 Senior Card, 뉴질랜드의 Senior Citizen's ID Card를 들 수 있음)²⁰⁾. 이러한

19) 관련 법률은 노인복지법(제26조: 경로우대, 동법시행령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장애인복지법(제27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동법시행령 제13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동법시행령 제85조: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제86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제23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방송법(제64조: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동법시행령 제44조: 수신료의 면제), 철도법(제7조의2: 운임 및 요금의 감면 등), 유료도로법(제15조: 통행료납부의 대상 등, 동법시행령 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전기통신사업법(제3조의2: 보편적 의무,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보편적 의무의 내용),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제5조: 무료관람),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제5조: 무료관람) 등임.

20) 미국은 지역시민단체와 자영업주들의 자발적 운동으로 Senior Card를 소지한 노인에 대해 음식료, 목욕료, 실비용품 등에 대해 일부 할인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도 한국과 같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경로우대제도가 있다. Senior Citizen's ID Card라 불리는 이 경로우대증은 오클랜드지역에서 버스

감면제도의 목표는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의 장소이동과 정보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사회생활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기본생활을 향상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교통·통신요금 등의 감액범위를 살펴보면, 서비스별 구체적인 감면율과 적용범위가 사업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통요금은 10%~무료, 통신요금은 30%~무료, 그리고 관람요금은 50%~무료이다. 이와 같이 교통·통신요금의 경우 일정한 감면 한도를 설정하고 그 이상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적거나 1회 이용의 단가가 낮을수록 감액범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행 교통·통신요금 등의 감액기준은 <부표 2> 를 참고하기 바란다.

취약계층 교통·입장요금 감면의 추계방법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철도청, 문화재청 등의 협조로 본 제도를 시행하는 각 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조사표의 내용을 분석하여 추계하였다. 다만, 기초 자료가 다소 미흡한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궁·능 무료금액은 내부자료를 기초로 별도 추정하였다(표 3-3 참조).

<표 3-3> 교통·통신요금 감면제도별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제 도	서비스대상	조사대상기관	조사방법
교 통	국내선항공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에어	실태조사
	버스, 여객선	국가보훈처	
	철도요금	한국철도공사	
	지하철요금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고속도로통행료	한국도로공사	
	TV수신료	한국방송공사	
	고궁·릉 입장료	문화재청	
통 신	시내·외 전화요금	한국통신, 하나로, 데이콤, 온세통신	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협조)
	이동통신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협조)

나 기차, 배 등을 이용할 때 40%의 요금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기업의 비법정복지

기업의 법정외 복리비는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고용주가 임의적으로 부담하는 주거비용, 식사비용, 보육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이의 추계를 위해서 먼저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1인당 월평균 금액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여 법정외복리비의 전체 규모를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를 2007년도까지만 공표하고 있어, 경제성장률 5%(전년대비)를 적용하여 잠정추계방식을 활용한다.

기업의 비법정복지는 사업내용에 따라 가족과 보건의료, 기타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부문에 포함되는 기업의 비법정복지는 고용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외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와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의료용구산업현황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정형선 외, 2010).

4)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이 사회에 갖는 책임활동의 한 형태로서 재정적 지원(현금기부)과 비재정적 지원(현물기부, 시설지원 등) 등 다양한 기업의 자산과 핵심역량을 사회에 투자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참여 및 투지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기업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의식 확대와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주로 기업 및 기업재단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회공헌이 점차적으로 활성화되고 사회공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됨에 따라 공공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민간기관 등에서의 참여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공헌활동 초기에는 기업들이 단순한 기부의 수준에 머무르는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의 참여 방법 및 활동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 임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직접 참여라든지, NGO 및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와 같이 일회적인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사회공헌의 진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지원 분야 또한 장학사업에 치중하던 초기와는 달리 사회복지, 의료복지, 학술연구, 환경보호, 국제교류, 긴급재난 등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미술관, 박물관, 문화 공연 등을 지원하는 메세나(Mecenat) 활동까지 활발한 모습을 띠고 있다. 향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다각화되어 사회공헌을 비롯한 인권, 노동, 환경 등 전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단순히 시혜적 차원으로 사회공헌에 접근하기 보다는 기업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가치 및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와 다국적 기업의 등장으로 글로벌 사회공헌이 증가추세에 있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기준 마련과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등의 글로벌 트렌드가 국내에도 반영되어 사회공헌 평가지표 개발 및 환경적, 사회적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NGO 등에 대한 사회복지목적성의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자원봉사활동은 제외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건영역과 기타 영역에 포함된다.

4. 제3섹터 부문

제3섹터는 그 성격상 완전한 자발성에 기초하되 공급주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자원의 특성을 가진다. 대표적인 자원제공 주체는 종교단체, 복지시설 및 기관, 시민단체, 그리고 모금기관 등이다. 우선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적 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각종 사회복지관련 현금·현물지출이 포함된다. 복지시설의 경우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이들을 종합한 복합시설에서 제공하는 자원의 총량을 의미한다.

먼저 생활시설에는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대상별 시설과 부랑인 및 노숙인, 정신요양, 결핵 및 한센 등 특별한 욕구를 가진 대상을 위한 복지시설이 있다. 이용시설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복지관, 아동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복지관 등 대상별 복지관과 함께 청소년, 부랑인 및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 및 그 가족, 알콜상담센터, 정신보건시설 등 복지시설이 있다.

모금의 경우, 모금기관, 사회복지 관련협의체, 그리고 기타(종교기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수행된 모금액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3섹터에 의한 자원은 현금지원 뿐 아니라 각 기관·단체들에 의해 조성·지급된 현물후원 등이 포함되며, 이는 중요한 사회복지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²¹⁾은 정부로부터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정부 재원을 이용하여 민간기관에서 급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재원부담주체는 공공지출이지만, 서비스제공은 민간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지출은 이미 정부의 일반 지출에서 추계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추계는 법인의 전입금과 후원금으로 제한된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자발적민간복지지출만을 추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자발적민간복지지출을 추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수는 2009년 말 기준으로 3,507개소이며, 이 중 이용시설은 2,526개(72.0%), 생활시설은 922개(26.3%)로 이용시설이 생활시설 보다 약 2.7배 많다(표 3-4참조).

〈표 3-4〉 전체 사회복지시설 수(2009년말 기준)

(단위: 개소, %)

	전체시설	구분		
		이 용 시 설	생 활 시 설	이용시설+생활시설
계	3,507	2,524	922	61
비율	100.0	72.0	26.3	1.7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9.

모집단 3,507개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종류와 시설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별 사회복지시설 유형은 노인복지 842개소(24.0%), 여성복지 716개소(20.4%), 지역사회복지 647개소(18.4%), 장애인복지 481개소(13.7%)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시설형태별로는 이를 살펴보면, 이용시설은 노인복지 824개소(32.6%), 지역사회복지 643개소(25.5%)와 여성복지 544개소(21.6%)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 생활시설은 장애인복지 320개소(34.7%), 아동복지 271개소(29.4%), 여성복지 172개소(18.7%) 순으로 나타났다.

21)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구체적으로는 민간(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사회복지시설과 교단과 교구, 그리고 예당이 운영하는 종교사회복지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민간시설법인과 교단, 교구 또는 예당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국한함.

〈표 3-5〉 사회복지시설의 모집단 현황(2009)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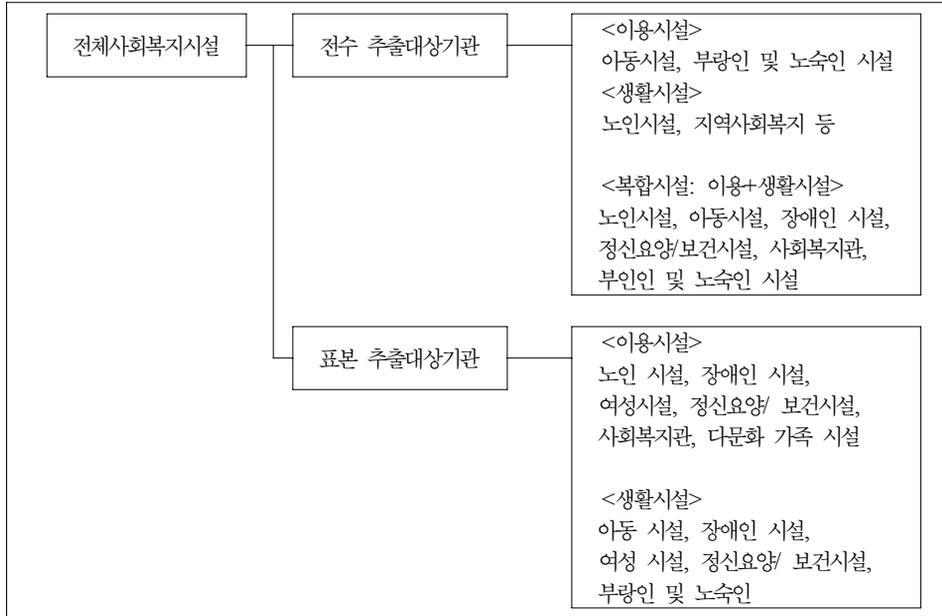
	계	지역 사회 복지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부랑인 및 노숙인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정신 보건
계 (구성비)	3,507 (100.0)	647 (18.4)	842 (24.0)	323 (9.2)	481 (13.7)	716 (20.4)	102 (2.9)	171 (4.9)	225 (6.4)
이용시설 (구성비)	2,524 (100.0)	643 (25.5)	824 (32.6)	43 (1.7)	160 (6.3)	544 (21.6)	19 (0.8)	171 (6.8)	120 (4.8)
생활시설 (구성비)	922 (100.0)	2 ¹⁾ (0.2)	2 (0.2)	271 (29.4)	320 (34.7)	172 (18.7)	60 (6.5)	0 (0.0)	95 (10.3)
이용+생활시설 (구성비)	61 (100.0)	2 ¹⁾ (3.3)	16 (26.2)	9 (14.8)	1 (1.6)	0 (0.0)	23 (37.7)	0 (0.0)	10 (16.4)

주: 지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관과 자활센터이고 정신보건에는 정신요양·보건, 알코올상담센터가 포함됨.

1) 초지중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노인요양원 운영.

모집단에 대한 표본추출은 [그림 3-1] 과 같이 실시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표본 추출은 전수조사시설과 표본추출시설로 구분한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즉 사회복지시설이 50개 미만인 시설유형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시설은 아동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등의 이용시설과 노인시설, 사회복지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이 결합된 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인 시설 등 127개소이다. 반면에 표본 추출대상기관은 장애인 시설, 여성복지시설, 정신요양 및 보건시설, 다문화가족시설 등 3,380개소이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시설은 전체 시설(3,507개소)의 3.6%이며, 표본추출대상시설은 전체 시설의 96.4%이다.

[그림 3-1] 사회복지시설별 표본추출 체계



다음으로 표본추출시설은 시설 수, 시설종류별, 생활자(종사자) 수, 후원전담부서/인력의 유무,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표본추출율을 차등적용(20%, 50%)하였다. 100개소 이상이 있는 시설로 표본추출율 20%가 적용된 시설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여성복지시설, 정신요양, 보건시설, 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센터 등 이용시설 2,462개소와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여성복지시설의 생활시설 763개소를 포함하여 전체 사회복지시설(3,507개소)의 91.9%이다. 반면에 100개소 미만 시설로 50%의 표본추출율이 적용된 시설은 정신요양 및 보건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의 생활시설은 155개소로 전체의 4.4%에 해당한다.

〈표 3-6〉 사회복지시설 수의 분포별 표본추출방법

	층 화 변 수	20% (100개 이상)	50% (51~99개)	100% (50개 미만)
이용 시설	· 시도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여성복지시설 정신요양, 보건시설 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센터	-	이동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생활 시설	· 생활(중사)지수 · 후원전담부서/인력	이동시설 장애인시설 여성복지시설	정신요양, 보건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노인시설
이용+생활	· 시설규모	-	-	노인시설 이동시설 장애인 시설 정신요양, 보건시설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이 조사결과와 각종 통계치는 가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와 이에 의한 평균 및 구성비이다. 여기서 조사결과를 그대로 합산한 단순표본합계치(Simple sample total)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각 조사시설마다 추출된 확률이 동일하지 않고 조사 미완률이 사회시설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에 대한 가중표본합계치는 조사완료 된 사회시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①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의 역수와 조사 완료율의 역수를 곱하여 각 시설별 1단계 확대승수(M_h)를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M_h = \frac{A_h}{A_h'} \frac{A_h'}{B_h} \dots\dots\dots (1)$$

$$= \frac{A_h}{B_h}$$

- M = 사회복지시설 추정용 승수
-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 ($h=1,2,3,\dots$)
- A = 기준 사회복지 시설 수 (미조사 사회복지 시설 수 포함)
- A' = 조사대상 사회복지 시설 수
- B = 조사완료 사회복지 시설 수

② 각 시설별로 조사완료 시설에 공식 (1)의 제 1단계 확대승수 (M_h)를 곱한 결과

를 합산하여 총 시설 추정치(\hat{B})를 산출한다.

$$\hat{B} = \sum_h M_h B_h \dots\dots\dots (2)$$

\hat{B} = 추정된 사회복지 시설 수 (미조사 사회복지 시설 수 포함)
 B = 조사완료 사회복지 시설 수
 M = 사회복지시설 추정용 승수

③ 공식(2)의 조사모집단 시설의 1단계 총 시설 추정치(\hat{B})를 기준 사회복지 시설 수 (A)에 일치하기 위하여 공식(1)의 시설별 1단계 확대승수를 2단계 확대승수로 조정하여 최종 가중치(W_h)를 산출한다.

$$W_h = M_h \left(\frac{A_h}{\hat{B}_h} \right) \dots\dots\dots (3)$$

A = 기준 사회복지 시설 수(미조사 사회복지 시설 수 포함)
 M = 사회복지시설 추정용 승수
 \hat{B} = 추정된 사회복지 시설 수(미조사 사회복지 시설 수 포함)

무응답으로 인한 편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비율대체(ratio imputation)에 의한 대체방법을 이용하였다²²⁾. 비율대체는 보조변수를 이용하는 대체법으로, 보조변수를 이용하여 비율예측치(ratio predicted value)로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관심변수에서 발생한 무응답에 대해서 비교적 안정되게 대처할 수 있다.

전체 조사대상시설 3,507개소 중 1,027개 시설을 표본추출 하였다. 목표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허용오차 ±3.50%였다. 표본집단의 대상별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 171개소(16.7%), 여성복지 170개소(16.6%),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154개소(15.0%) 순으로 나타난다. 시설형태별로 보면, 이용시설이 699개소(68.1%), 생활시설이 297개소(28.9%), 복합시설이 31개소(3.0%)로 추출되었다.

22) 평균대치법(mean imputation)과 중위수대치법(median imputation)은 대치되는 값들이 중심값에 집중되어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회귀대치법(regression imputation)은 대치되는 값의 범위가 -∞에서 ∞로 추정되는 특징이 있음. 본 연구에서 대치되는 변수들은 재정지출로 대치된 값이 0 보다 작은 범위도 있는 만큼 회귀대치법은 적합하지 않다. 특히 적합방법을 탐색하기 위해 회귀대치법으로 관심변수를 분석한 결과 음의 값들이 다수 발견됨.

〈표 3-7〉 사회복지시설의 표본집단 현황(2009)

(단위: 개소, %)

	계	지역 사회 복지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부랑인 및 노숙인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정신 보건
계 (구성비)	1,027 (100.0)	154 (15.0)	171 (16.7)	122 (11.9)	135 (13.1)	170 (16.6)	77 (7.5)	62 (6.0)	136 (13.2)
이용시설 (구성비)	699 (100.0)	150 (21.5)	170 (24.3)	44 (6.3)	60 (8.6)	108 (15.5)	25 (3.6)	62 (8.9)	80 (11.4)
생활시설 (구성비)	297 (100.0)	2 (0.7)	1 (0.3)	71 (23.9)	74 (24.9)	62 (20.9)	39 (13.1)	0 (0.0)	48 (16.2)
이용+생활시설 (구성비)	31 (100.0)	2 (6.5)	0 (0.0)	7 (22.6)	1 (3.2)	0 (0.0)	13 (41.9)	0 (0.0)	8 (25.8)

주: 지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관과 자활센터이고 정신보건에는 정신요양·보건, 알코올상담센터가 포함됨.

한편 최종적으로 조정된 기중치 식(3)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재정의 추계는 모평균 \bar{y}_h 라 하면 다음과 같은 기중평균을 사용하였다.

$$\bar{y}_h = \frac{\sum_{i=1}^{n_h} W_{hi} y_{hi}}{\sum_{i=1}^{n_h} W_{hi}}$$

y_{hi} = h층의 i번째 시설의 세출재정 관찰값

또한 분산추정치와 상대표준오차는 각각 다음과 같다.

$$var(\bar{y}_h) = \frac{n_h(1-f_h)}{(n_h-1)} \sum_{i=1}^{n_h} (y_{hi} - \bar{y}_h)^2,$$

$$\widehat{CV}(\bar{y}_h) = \frac{\sqrt{var(\bar{y}_h)}}{\bar{y}_h} \times 100(\%)$$

$$f_h = \frac{n_h}{N_h}$$

N_h = h층의 모집단 규모

n_h = h층의 표본규모

한편, 사회복지시설실태조사를 위해 개발된 조사표는 일반사항과 수입조사표, 그리고 지출조사표로 이루어져있다(부록 3 조사표 참조). 조사기간은 2010년 11월9일부터 2011년 1월 9일까지 총 60일간 전자메일과 팩스,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원 4인이 전화로 조사를 독려하고 응답에서 빠진 항목을 보충사항을 조사하였다. 조사시설 1,027

개소 중 조사표 일반문항과 세입세출까지 회수된 곳은 761개소(응답률 74.1%)로 나타났다.(표 3-8 참조).

〈표 3-8〉 사회복지시설종류별 응답 및 회수율

(단위: 개소, %)

	계	지역사회 복지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부랑인 및 노숙인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정신 보건
조사시설(A)	1,027	154	171	122	135	170	77	62	154
응답시설(B)	761	130	111	90	118	120	58	32	102
조사표회수율 (B/A*100)	74.1	84.4	64.9	73.8	87.4	70.6	75.3	51.6	66.2

한편 사회복지시설별로 세출자료에 대한 추계치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설별 세출 추계치의 상대표준오차를 구해보면 <표 3-9>와 같다. 상대표준오차가 30%이상인 시설로는 노인복지, 부랑인 및 노숙인,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노동자로 나타났다. 설계당시 허용오차를 3.5%로 예정하였으나 조사완료시 허용오차가 9.6%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완료 표본수가 낮기 때문이다. 앞으로 허용오차를 줄이기 위해 조사완료 수를 늘리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이들 시설에 대한 추계치를 이용할 때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3-9〉 사회복지시설종류별 세입 추계치의 상대표준오차

(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표본 수	설 계 추출율	조사완료 추출율	평 균	상대표본오차
전 체	761	29.3	21.7	731,829	9.6
지역사회복지	130	23.8	20.1	909,905	14.6
노인복지	111	20.3	13.2	564,872	31.1
아동복지	90	37.8	27.9	1,153,500	21.3
장애인 복지	118	28.1	24.5	1,446,208	10.6
여성복지	120	23.7	16.8	146,698	23.7
부랑인 및 노숙인	58	75.5	56.9	1,176,300	32.2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32	36.3	18.7	182,444	35.1
정신보건시설	102	60.4	45.3	763,481	19.4

2)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기업관과 사회서비스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공익적 목적관을 동시에 지닌 제3의 경제주체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가지며, 재분배적 성격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지출의 추계 대상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의 등장은 IMF 이후 지속된 경제침체 속에서 심화된 소득양극화와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경제적 변화와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 저출산및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서 유래하였다. 즉 이러한 사회적 변화속에서 증가하는 실업과 빈곤을 치유하기 위하여 유럽의 대안인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학계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사회적기업이 한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두하기 시작한 것이다(노동부, 2008).

그러나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2조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특정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법령에 의거하여 인증된 정부가 경영지원, 시설비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사회적기업이 대부분 사회복지재단과 민간기부금 등을 통해 민간부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다양한 재원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다²³⁾.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하는 부분은 정부의 일반지출에서 추계될 필요가 있고, 사회적기업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되어 지출되는 경우에 한해서 자발적민간부문으로 추계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에 관한 추계는 해마다 발간되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23) 프랑스에서 사회적기업은 노동통합기업을 지원하는 ‘까세 데 드포 에콘시그나시옹’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기금은 지방정부와 은행의 기부금, 연대를 위한 기탁금 모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임. 또한 중소기업의 설립, 발전과 회복을 위한 공동체 저축안 ‘EFICEA’ 역시 사회적기업의 주요한 재원을 제공하고 있음(OECD, 1999).

5. 조세지출

한국에서 조세부담은 직접세와 간접세, 사회보험료로 구성되어 다소 체계화된 반면에 조세혜택은 관세감면, 자동차세 면세, 재산세 등 감면, 근로소득 공제, 법인세 감면 등으로 구성되어 다소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다.

〈표 3-10〉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개념적 구성항목

분류	종류	대상	자료원
조세부담	1. 직접세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 ¹⁾ /기업 질병휴가급여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통계청, 고용노동부
	2. 간접세	이전소득자의 가계지출	통계청
	3. 사회보험료	연금수령자의 지역건강보험료 이전소득에 부과되는 사회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조세혜택	1. 관세 감면	장애인용 의료용구 등의 수입물품 감면	관세청
	2. 자동차세 면세	장애인용 자동차 · 구입단계	국세청
		· 등록 및 보유단계	행안부
	3. 재산세 등 감면	비영리법인	행안부
	4. 근로소득 공제	노인, 장애인, 부녀자세대주, 기부금 등 공제	국세청 기획재정부
5. 법인세 감면	기업	국세청 기획재정부	

주: 1) 2007년도까지는 과세, 2008년부터 비과세

1) 조세부과 제도

조세부담 추계는 세수를 부과 또는 징수한 행정자료를 이용한다. 아래에서는 직접세와 간접세 및 사회보험료의 추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직접세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이전소득에 부과된 직접세액 규모에 대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차선택으로 이전소득에 대한 직접세액을 추정하기 위해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평균항목별세율’(Average Itemised Tax Rates: AITR)을 측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구별 소득금액과 세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을 사용한다. 이 때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²⁴⁾’은 ‘결정세액’을 공제 전의 ‘근로자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begin{aligned} \text{이전소득에 대한 직접세액} &= \text{이전소득금액} \times \text{실효세율}^* \\ * \text{실효세율} &= \frac{\text{결정세액}}{\text{근로자 연간소득(공제전)}} \end{aligned}$$

현재 소득세법(제12조)에서 이전소득 중 일부 연금 소득과 실업급여 소득은 비과세하고 있다.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과세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급여 중 유족연금, 장애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이며,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은 비과세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노령연금은 연금소득,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표 3-11〉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범위

구 분		연금소득의 범위	적 용 례
공적 연금 소득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2002.1.1.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 받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지역연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해 지급받는 연금	
사적 연금 소득	퇴직연금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2005.1.1.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2004.12.31이전: 퇴직소득 과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2006.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개인연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2001.1.1.이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 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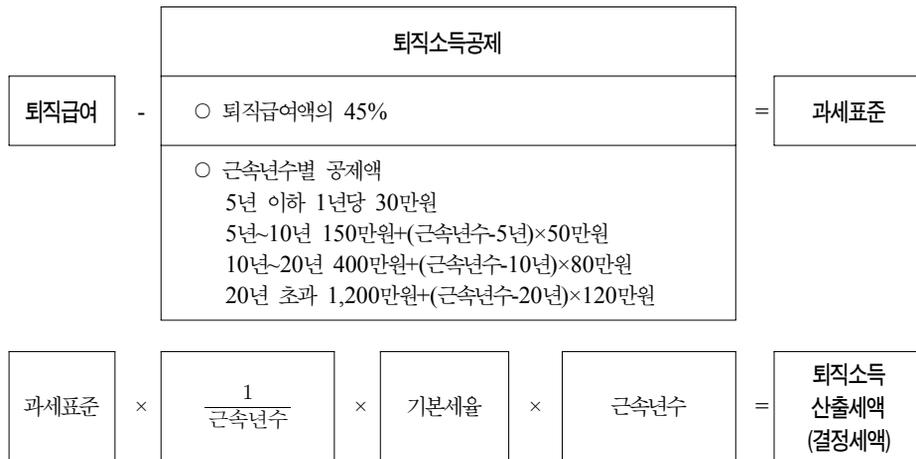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08

한편 법정퇴직금과 질병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소득세법(제4조)에서 과세하고 있으며, 산전후휴가급여는 2008년부터 비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다.

24) OECD Taxing Wage(2008-2009)에서는 가구유형별로 실효세율을 제시하고 있음. 4가지 가구유형은 미혼가구, 홑벌이-무자녀, 홑벌이-두 자녀, 맞벌이-두 자녀임.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구형태별 자료가 없어 가구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함.

- 법정퇴직금 과세: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35%(2009년 기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근속연수로 곱한 세액으로 과세
- 산전후휴가급여 및 질병휴가기간 동안의 유급급여: 근로소득을 구성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35%(2009년 기준)의 세율 적용

[그림 3-2]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② 간접세(Indirect tax)

간접세를 추계하는 방법은 미시자료를 활용한 추계와 거시자료를 활용한 추계가 있다. 먼저 미시자료를 활용한 추계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자료는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가구(농가 및 어가가구는 제외), 1인가구의 지출항목이 비교적 자세하게 조사되어 있어 간접세 부담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가계동향조사”에서 공적이전소득자²⁵⁾의 사례수는 비교적 높(전체조사가구의 가구의 25.5%, 2009)지만 간접세율을 추계하기 위한 세부소비품목을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미시자료를 활용한 경우는 이전소득자에 대한 간접세율의 추계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미시자료의 수집 또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OECD는 조세자료와 국민계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간접세율을 추계²⁶⁾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국민전체가 부담하는

25) 공적이전소득 자는 공적연금·사회수혜금·사회적현물이전·세금환급금,의 수급자의 합으로 봄. 여기에 기초

26) OECD는 간접세율을 보다 쉽게 추계하기 위해 각 회원국별 조세자료(OECD Revenue Statistics)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을 기초로 목시적 평균 간접세율(average implicit indirect tax rate)을 계산

간접세율이 추계된다는 한계가 있으나 이전소득자와 일반소득자간의 소비형태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방법을 권하고 있다.

평균간접세율 산출을 위해서 본 연구는 일반소비세와 특정소비세를 활용하였다. 먼저 ‘일반소비세’(5110)에는 부가가치세, ‘특정소비세’(5121)에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담배소비세, 이들에 대한 부가세(교육세, 방위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 이를 식으로 정리하여 추계한 결과 간접세율은 Minim 11.03%('09), Medium 13.43%, 그리고 Maxim 15.07%로 나타났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이전소득자의 소비범주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Minim방식을 선택하였다. 참고로 OECD 지침서에 의한 간접세 개념과 해당 세목에 대해서는 <부표 4>에 정리해 두었다.

Minim = (일반소비세 + 국내소비세) ÷ (민간소비 + 정부소비 - 공무원 임금)

Medium =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 ÷ (민간소비 + 정부소비 - 공무원 임금)

Maxim =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 ÷ 민간최종소비지출

본 연구에서 실제로 추계하고자 하는 간접세액의 세원은 <표 3-12>와 같이 크게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세원은 정부부문(서비스부문 비포함²⁷⁾)의 현금급여, 사회보험 현금급여, 법정민간부문의 현금급여, 자발적민간부문의 현금급여 그리고 조세감면이다. 이 때 간접세액을 추계함에 있어 현금급여는 포함하고 현물급여는 제외하였다.

하여 사용하고 있음.

27) 부가가치세법(제12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종교 및 자선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하고 있음.

〈표 3-12〉 공공·민간부문별 간접세액 추계범위

부 문	추 계 범 위
정 부 부 문	· 공공부조의 현금급여(생계보호, 국가보훈의 보상금 등): 포함 · 공공부조의 현물급여(의료급여, 교육보호): 제외 · 국가공급의 사회복지서비스: 제외 ·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액: 제외
사 회 보 험	· 현금급여(공적연금, 실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포함 · 현물급여(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제외
법정민간부문	· 현금급여(법정퇴직금, 유급질병휴가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 포함 ·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감면액: 제외
자 발 적 민 간 부 문	· 현금급여(기업의 고용연계급여 등): 포함 · 현물급여(종교 및 자선단체의 이천지출(현물), 기업재단의 사회공헌 활동 및 기업의 사회복지활동, 학교안전공제회, 대한의사협회공제회, 민간의료비 등): 제외
조 세 지 출	·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지방세 및 지방조례),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장애인용 자동차 면세금액(구입단계), 근로소득공제에 따른 소득세 감면: 포함

사회보험료는 연금수령금액에 대한 지역건강보험료, 근로소득자의 산전후휴가급여와 유급질병휴가급여에 대한 사회보험료가 포함된다. 먼저 연금수령자가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일 경우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은 연금소득 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소득 등이 반영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이 보험료는 제외한다. 그 이유는 이를 포함하였을 때 과대추계가 제외하였을 때 과소추계보다 참값으로부터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전소득자인 근로자는 산전후휴가급여와 질병휴가기간 동안 유급급여에 부과되는 사회보험료(근로자 부담)를 부담한다. 이의 추계는 근로자부담의 3대 사회보험료(연금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평균), 고용보험료율)의 합을 반영하였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표 3-13 참고).

〈표 3-13〉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요율(2009)

종 류	근로자	사업주	합계	
국민연금	4.5%	4.5%	9.0%	
건강보험	2.54%	2.54%	5.08%	
고용보험	실업급여	0.45%	0.45%	0.9%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	0.25~0.85% (종업원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0.25~0.85%
산재보험	-	평균 1.8% - 최고36%(석탄광업) - 최저0.7%(전문기술서비스업등)	0.7~36%	

2) 조세감면제도

정부는 사회적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개인에게 조세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조세감면은 세금감면, 면제,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감면은 비록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과할 조세를 감면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음으로 간접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세혜택(TBSPs)을 구하기 위해 세금감면, 면제,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출(Tax Expenditure) 내역을 파악해야 한다. 조세지출의 방식은 특정 소득이나 특정 납세자에 대한 감세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조세혜택(TBSPs)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순사회복지지출에 계산되는 조세지출은 후자만 포함된다.²⁸⁾

첫 번째 유형인 특정소득 또는 납세자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거나 비과세소득으로 하는 경우는 이미 직접세 계산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세혜택(TBSPs)으로 보지 않는다. 두 번째 유형은 현금 지급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세액공제 등의 조세혜택(TBSPs)과 민간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민간건강보험, 사적 연금에 적용되는 조세혜택(TBSPs)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조세혜택(TBSPs)의 개념에 부합되는 조세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의 구입·등록·보유단계의 자동차세 감면²⁹⁾이다. 구입단계에서 장애인 차량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며, 보유단계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둘째,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일부 또는 전액 면제³⁰⁾이다. 여기에는 시각·청각·언어의 장애인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과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등이다. 셋째, 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주체인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³¹⁾이다. 즉 공익법인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 넷째, 노인, 장애인, 부녀자세대주 등이 있는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³²⁾이다.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28) OECD, 앞의 자료, p.34

29)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지방세법 제7조

30) 관세법 제91조

31) 지방세법 제288조

원, 부녀자 1인당 연 50만원, 6세 이하 직계비속 1인당 연 100만원(출생한 당해연도는 200만원) 소득공제되고 있다. 끝으로 기업의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³²⁾이다. 실제 추계에서 법인세 감면 부분은 자료상 한계로 제외하였다.

이 중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과 지방조례에 의한 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은 지방세법에 감면대상을 직접 명시한 것으로 감면대상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단체, 나관리협회, 그리고 영육아보육시설³⁴⁾ 등이다. 다음 지방조례에 의한 감면은 지방세법에 감면대상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지방세법상 감면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위임받아 조례에 의해 감면대상을 정해 과세면제하는 것으로 이 중 사회복지지출과 관련된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소유 자동차
- 한센정착농원(음성나환자집단촌)
- 종교단체의 의료업, 노인복지시설, 의료취약지구 의료시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살펴 본 조세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이다.

- 연 100만원 이내의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³⁵⁾
- 당해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금액(연 500만원 한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³⁶⁾
- 일정 금액을 한도로 교육비 근로소득 특별공제³⁷⁾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한 전세자금 차입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연 1,000만원 한도) 전액을 근로소득 특별공제³⁸⁾

둘째, 기부자 또는 복지증진시설투자에 대한 국세 공제이다.

- 개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공제, 기타

32)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4호

33)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법인세법 제24조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 제22조

35)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36)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37)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38)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공익성 기부금(종합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은 10% 특별공제³⁹⁾

- 법인이 사회복지·종교·교육·문화 등 관련 법인, 이재민, 국군장병 등에 대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법정기부금은 75%, 특례기부금은 50%, 지정기부금 5% 손금 산입⁴⁰⁾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등을 취득한 내국인에 대해 시설취득가액의 7% 세액공제⁴¹⁾

셋째, 기타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 개인연금저축에 가입(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정)한 2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해 불입액의 40% 소득공제⁴²⁾
- 개인연금저축에 가입(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것은 계약 만료시까지 적용)한 2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 의수족·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⁴³⁾
- 사용자부담 국민건강보험료 부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비과세⁴⁴⁾
-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저축에 대한 비과세⁴⁵⁾ 등이다. 이에 대한 추계는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보고서,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의 통계연보와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6. 시장부문

시장부문 사회복지지원에는 개별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가입한 사보험을 통해 이전된 보험금 총액이 해당된다. 지금까지 시장부문의 사보험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다고 보기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형성되었고, 가구간 재분배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비사회적인 지출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불의의 사망·상해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Adema, 2001), 위험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

39)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40)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법인세법 제24조

4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42)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1항

43)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44)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5호

45) 조세특례법 제88조의 2, 제88조의 4

금 지출과 만기도래에 의한 저축성 보험금 지출의 성격을 분리해 내면 사회복지 자원으로 파악이 가능하다⁴⁶⁾.

시장부문의 자발적민간지출의 범위는 사적 의료 및 연금보험을 포함하고 사회서비스의 영리기관을 포함하는 등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손해보험 중 대인치료비와 실손형 민영보험으로 제한한다. 먼저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자동차사고가 누구에게나 불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므로 민간회사가 운영하더라도 일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추계는 보험개발원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과실상계전 결정금액으로 집계한다. 다만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한 치료비와 보험회사가 향후의 의료비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불하는 ‘향후치료비’는 제외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영보험회사에 의한 건강관련 보험 중에서 암 등 질환의 발생에 대해 약정된 정액형 민간의보는 국민보건계정에서 별도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실손형 의료보험만 포함하는데, 손해보험회사들이 기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실손형 보험상품은 1970년대부터 시작했고, 현재는 개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판매하고 있다. 2005년 8월부터는 생명보험회사에서도 개인을 대상으로 실손형 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형 의료보험 모두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조달되며, 민간회사에서 공급하고 있어 자발적민간부문에 해당하며, 기능별로는 ‘보건’영역에 포함된다.

7. 공동체 부문

개인이 속해있는 공동체 차원의 사회복지자원은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이전과 개인 또는 집단단위의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상호부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집단의 공제급여가 포함된다. 사적이전은 가족과 친지에 의한 현금이전을 의미하며, 자원봉사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발적 봉사활동⁴⁷⁾을 뜻한다. 공제급여에는 학교 의료, 군, 군인,

46) OECD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사망, 장애, 의료 서비스, 은퇴와 같은 지급금에서 사회적인 성격을 분리해낼 수 있다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자발적인 민간부문에서 중요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Adema and Ladaïque, 2009)함. 다만 그런 정책들이 대부분 모기지에 포함되며, 국가간 비교가능한 데이터가 유용하지 않아 현재 SOCX에는 포함하지 않음(Adema and Ladaïque, 2005).

47)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산출량접근법(output-related method)과 투입량접근법(input-related method)이 있음. 전자는 자원봉사노동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용역에 화폐가치를 부과하는 방식인 반면, 후자는 노동시간에 화폐가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종합적대체법, 전문가대체법, 기회비용법의 세 가지 접근법으로 구분됨. 종합적대체법(global substitution method)은 자원봉사를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여, 그와 같은 직업을 수행할 한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가치평가에 사용하는 방법이며, 전문가대체법(specialized substitution method)은 자원봉사와 같은 직무의 숙련을 가진 전문가

경찰, 교직원, 지방공무원, 건설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공제회가 포함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제급여는 추계에 포함하고 있으나 사적이전과 자원봉사는 제외하였다.

제2절 사회복지지출의 지표별 추계방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추계는 4가지 기준(사회적 목적, 재원부담주체, 공급주체, 재분배성격)을 통해 지출 항목을 결정하고, 지출의 성격을 기준으로 기능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즉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이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사회적 목적과 재분배 성격이었다면, 개별 제도와 각 지출이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추계에 어떻게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재원부담주체와 공급주체이다. 마지막으로 지출의 성격을 기준으로 기능구조에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복지지출이 추계된다.

앞의 절이 사회적 목적과 재분배 성격을 가진 지출을 기준으로 재원부담주체와 공급주체에 따른 지출의 추계방법에 대한 것이었다면 본 절에서는 실제로 생산해야 하는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지표의 추계방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 언급했던 재원부담주체와 공급주체에 관한 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OECD는 재원부담주체와 공급주체 각각에 대한 분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순수공공급여와 공공급여, 민간급여, 순수민간급여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재원부담주체와 공급주체의 2차원을 기준으로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지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재원부담주체가 공공부문이며 공급 역시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순수공공급여는 공공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된다. 또한 재원부담 주체는 민간부문이나 재분배의 성격을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보험과 같은 공공급여 역시 공공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재원부담주체와 공급주체가 민간부문인 순수민간급여는 OECD 기준에서 비사회적급여로 인식되어 배제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실제로 민간부문에서 재원이 조성되고 공급되지만 법적인 규제가 있는 급여는 법정민간지출에 포함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법정퇴직금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모금을

의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기회비용법(opportunity cost method)은 자원봉사자가 무급노동을 수행함에 따라 상실하게 되는 시장임금을 가치평가에 사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임.

통해 조성한 재원을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출한다면 이 역시 사회적 목적과 재분배적 성격을 가지므로 자발적민간지출에 포함할 수 있다.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는 기업과 고용보험재원으로 구성된 공공/민간부문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공공지출로,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자발적민간지출에 포함된다. 또한 민간부문에 의해서 재원이 조달되었으며, 민간부문에서 지급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통신비 감면은 법정민간지출에 포함된다. 다만, 정부의 재원이 들어간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통신 등 요금 감면은 공공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을 도시화하면 아래의 <표 3-14> 와 같다.

<표 3-14> 재원부담주체와 공급주체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지출 지표

		재원부담주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공/민간부문
공 급 주 체	공공부문	공공사회복지지출 (순수공공급여)	-	공공사회복지지출 (공공급여)
	민간부문	-	법정/자발적민간지출 (순수민간급여)	자발적민간지출 (민간급여)
	공공/민간부문	-	법정민간지출	-

1. 공공사회복지지출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재원부담주체가 공공부문이고 공급기관 역시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는 순수공공급여와 재원부담주체는 공공과 민간이 혼합하지만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공공급여(사회보험)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르면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일반 정부지출과 사회보험지출, 공공기관의 취약계층 요금감면으로 제한된다. 취약계층 요금감면은 전년도까지 공급기관을 중심으로 법정민간부문으로 추계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재원부담과 공급주체를 고려한 추계 기준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었다. 반면에 조세지출은 정부지출이지만 조세를 통한 정부의 자원배분 노력을 살펴보는 데 있는 만큼 공공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추계 내용은 2장에서 상세히 설명한 관계로 생략한다.

〈표 3-15〉 공공사회복지지출 개념틀

구 분		구 성 항 목
일반정부	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등
	사회보상	• 국가보훈, 재해구호, 북한이탈주민지원, 고엽제피해보호, 사할란동포 및 일본군위안부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과 장애인, 가족복지, 보건의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요금감면 등
사회보험	사회보험	• 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공공사회복지지출을 기능구조별로 구분하는 것은 부처와 사회복지사업의 기능코드를 중심으로 추계하였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은 “노령”에 포함되고,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의 사업은 “가족”에 포함하며,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사업 등은 “적극적노동시장 프로그램”으로 포함한다. 다만, 공공부조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과 기능영역에서 구분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기타 사회복지정책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2. 사회복지지출

앞서 살펴본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이 사회복지지출이다.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업이 주된 공급주체가 된다. 즉 법정 민간복지지출은 기업에서 피고용인의 보호를 위한 법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법정퇴직금과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교통비와 통신비를 감면하는 경우도 법정민간복지지출에 해당한다.

〈표 3-16〉 사회복지지출 개념틀

구 분		구 성 항 목
일반정부	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등
	사회보상	• 국가보훈, 재해구호, 북한이탈주민지원, 고엽제피해보호, 사할란동포 및 일본군위안부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과 장애인, 가족복지, 보건의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사회보험	사회보험	• 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업	법정복지	•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교통·통신요금 감면	• 사기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 요금 감면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주로 노령과 가족부문에 포함되는 반면 교통·통신비 요금감면은 대상별로 노령영역과 근로무능력관련, 가족, 기타 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표 3-17〉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기능	관련부처	프로그램 예시
노령	고용노동부	- 법정퇴직금
	보건복지부	- 교통비 감면(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근로무능력	보건복지부	- 교통·통신비 감면(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에어, 휴대폰 이용요금)
	고용노동부	- 질병휴가급여
보건	국토해양부	- 자동차책임보험 대인치료비
가족	고용노동부	- 산전후휴가급여
	보건복지부	- 이동복지시설 통신 요금
기타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통신 요금 감면

3.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 기업과 제3섹터 및 공동체, 시장부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추계를 위해 실태조사와 2차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등 제 3섹터의 경우 정부의 재원 부담은 공공사회복지지출에서 추계되고 있는 관계로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등 순수한 민간사회복지지출만 추계에 포함한다. 또한 모금기관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모금한 금액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주는 경우 이중계산의 우려가 있어 이 점을 추계시 반영하고 있다.

〈표 3-18〉 자발적민간부문 추계 범위 및 자료원

분 류	종 류/사업내용	자 료 원
1. 복지사업 민간모금 ¹⁾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회복지사업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재해의연금모금, 재해지원사업	전국재해구호협회
	3) 적십자회비 모금, 구호사업 외	대한적십자사
	4) 결핵협회모금, 결핵예방·연구사업	대한결핵협회
	5) 한국사회복지협의회(MBC 어린이 생생명모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 이동시설지원·가정결연사업 외	사회복지법인윌드비전
	7) 가정위탁 지원사업 외	어린이재단
	8) 심장병 검사지원사업 외	한국심장재단
	9) 이동교육·장학결연사업 외	세이브더칠드런
	10) 국내난치병 어린이 지원사업 외	UNICEF 한국위원회
	11) 결연후원사업	어린이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12) 교육문화지원·기금프로그램개발사업 외	아이들과 미래
	13) 저소득층 자활지원 외	아름다운재단
	14) 아동학대예방·결식아동지원사업 외	Good Neighbors
	15) 소외계층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한국여성재단
	16) 불우이웃돕기사업 외	한국라이온스클럽
	17) 시각장애인 개인수술 및 실명후 재활지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18) 독거노인전용공동주택건립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19) 기초생활보호 등 구호사업 및 복지시설 등 지원	구세군대한분영
	20) 저소득아이들 복지지원	위스타트운동본부
2. 종교단체 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참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기업의 사회복지활동	고용연계급여 - 교육비·학비·근로자 휴양비 등 지원	고용노동부
	기업·기업재단의 사회공헌활동	전국경제인연합회
4. 특정집단의 공제회	1) 의료분쟁 2) 학교생활 중의 사고	대한의사협회 각 사·도 교육청
5. 민간의료비	실손형 보험	보험개발원

주: 1) 사회복지조직이나 기관에 의한 민간모금임.

4. 총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은 사회복지지출에 자발적민간부문의 지출을 추가한 것이다. 자발적민간부문의 사회복지지출은 재원부담이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급여의 공급 역시 민간에서 이루어진다. 급여의 공급은 기업부문과 제3섹터, 공동체, 시장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총사회복지지출은 순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해된다. 즉 한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총량을 알아보고 이를 공사부문으로 구분하여 복지주체들의 역학관계를 알아보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표 3-19〉 총사회복지지출의 개념틀

구 분		구 성 항 목
일반정부	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등
	사회보상	• 국가보훈, 재해구호, 북한이탈주민지원, 고엽제피해보호, 사할란동포 및 일본 군위안부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과 장애인, 가족복지, 보건의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요금감면 등
사회보험	사회보험	• 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업	법정복지	•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교통·통신요금 감면	•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감면
	자발적복지	• 기업의 고용연계 급여 - 가족수당, 학비지원, 주택자금지원 등
	사회공헌활동	• 기업·기업재단의 사회복지활동 - 사회복지, 재해복구·예방 등
제3섹터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사업 관련 지출
	민간모금단체	• 민간모금단체의 자발적민간지출
공동체	공동체	• 특정집단의 공제급여 - 학교안전공제회, 대한의사협회공제회
시장	민간의료비	• 민간의료비 - 자동차책임보험의 대인치료비, 실손형 보험금 - 비영리단체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출

주: 1) 기업과 기업재단과의 재정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관계로 기업의 기부금과 사회복지활동은 제외하며 기업의 ‘현물급여’와 ‘기업재단’을 중심으로 살펴봄.

5. 순사회복지지출

각국의 조세제도를 반영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순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세의 부과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순사회복지지출의 추계는 총공공지출(1)과 총법정민간지출(7) 그리고 총자발적민간지출(10)에 각각 직접세와 사회보험료, 간접세를 공제한다. 이 때 각 부문별 지출 중 조세가 부과되는 현금급여만 추계에 포함하고 현물 급여는 제외 한다⁴⁸⁾.

48) 현물급여는 정부나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로 그 범위는 보건, 복지, 노동, 교육, 의료서비스 등이 있음.

〈표 3-20〉 순사회복지지출의 산출구조

부 문	가 감	NO.	산 출 구 조
공 공 부 문	-	1.	총공공지출(직접) 직접세와 사회보험료
	-	2.	순공공지출(현금형태) 간접세
	+	3.	순공공지출(직접)
	-	T1	현금급여적 조세혜택(TBSPs) ¹⁾ 간접세
	+	4.	순TBSPs(현금형태)
	+	T2	민간부문의 조세혜택(TBSPs) ²⁾
민 간 부 문	-	5.	순TBSPs(연금 제외)
	-	6.	순공공지출(경상)[3+5]
	-	7.	총법정민간지출 직접세와 사회보험료
	-	8.	순법정민간지출(직접)
	-	9.	순공공·법정지출[6+8]
	-	10.	총자발적민간지출 직접세와 사회보험료
	-	11.	순자발적민간지출(직접)
	-	12.	순민간지출[8+11]
		13.	(총)순사회복지지출[6+12-T2] ³⁾

주: 1) 조세혜택제도(TBSPs)의 한 유형으로 근로가구 중 아동·노인·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여성가구주 등에 대한 조세감면임.

2) 조세혜택제도(TBSPs)의 한 유형으로 민간급여와 같은 효과가 있는 지원금 또는 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임.

3) T2의 공제는 이중계산을 피하기 위함.

자료: Adema & Ladaïque, 2009: 46.

특히 정부가 생활안정과 사회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회적·재정적 조세혜택(T1, T2)은 ‘현금급여적 조세혜택’과 ‘민간부문의 조세혜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T1은 근로가구 중 아동·노인·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여성가구주 등에 대한 조세감면이다. 이 때, 직접세 계산에 반영된 연금급여는 TBSPs에서 제외한다. T2는 민간급여와 같은 효과가 있는 지원금 또는 시설에 대한 TBSPs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복지지출에서 법인세 감면등과 같은 조세혜택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구한 각 부문별 세부항목의 세 가지 부문 - 순공공지출(6), 순법정민간지출(6), 그리고 순자발적민간지출(11) - 의 총합에서 민간부문의 조세혜택(T2)을 제외한 것이 바로 순사회복지지출이다.

민간부문의 조세혜택(T2)은 순공공지출(6)을 추계하는 과정에는 더하지만 순사회복지지출(13)을 계산할 때에는 공제하고 있다. 이는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예로서 기업의 복지지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들 수 있다. 이미 기업의 복지지출은 총자발적민간지출(10)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이 정부로부터 법인세감면혜택을 동시에 포함하면 이중계산이 된다.

제3절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현황

OECD는 5가지 사회복지지출 지표와 9가지 기능구조에 대하여 각각의 통계작성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통계를 생산토록 권고하고 있다. 9개 부문의 정책영역은 16개의 관심영역과 37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생산해야 할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통계는 총 62개이다. 본 연구에서 생산한 통계는 8개 부문 50개 항목으로 평균생산율은 80.6%이다. 미생산된 12개의 통계는 국내에 제도 자체가 도입되지 않거나, 기초자료 부족 등으로 OECD가 요구하는 항목으로 세분화할 수 없는 것 1개 항목(1.5%)이다.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대표적인 급여는 질병급여(SOCX Category no 3.1.4)⁴⁹⁾와 주거급여 등이다. 다음으로 OECD는 구직급여의 산출에 있어 단순한 실업과 노동시장 이유로 인한 조기퇴직급여를 구분하여 생산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 고용보험은 이들의 실직원인과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생산이 불가능하다.

〈표 3-21〉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현황: 기능구조(2009년)

사 회 복 지 지 출 통 계 의 구 성				생 산 현 황
부 문	관심영역	세 부 관심영역	총요구 개 수	생산수(생산율) ¹⁾
1. 노령	2	5	8	7(87.5)
2. 유족	2	4	7	5(71.4)
3. 근로무능력 관련	2	8	11	10(90.9)
4. 보건	2		3	2(66.7)
5. 가족	2	5	8	8(100.0)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7	8	8(100.0)
7. 실업	2	2	5	3(60.0)
8. 주거	2	2	5	
9. 기타	2	4	7	7(100.0)
계	16	37	62	50(80.6)

주: 1) 생산율 = 생산수/요구통계수×100, OECD요구 통계 중 우리나라의 제도와 급여가 없는 경우, 미생산(제출)한 것으로 계산함.
 자료: 부문과 영역은 OECD, 2005 Edition of SOCX Database An interpretive guide, 2007의 작성기준을 원칙으로 함.

기능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요구통계수가 가장 많은 것이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로 11개(17.7%)⁵⁰⁾이며 다음으로 ‘가족’,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이 8개(12.9%)인 반

49) OECD가 요구하는 질병급여는 아직 미도입 상태이지만, 우리나라 제도 중 각 사업장이 근로자의 질병휴가기간 동안 지급하는 유급휴가급여를 법정민간급여로 포함하고 있음.

면 ‘보건’ 3개(4.8%)가 가장 낮다.

한편 OECD SOCX 2007을 기준으로 각국의 통계생산율은 78.6%로 나타났으며, 핀란드(91.9%)와 체코(90.3%), 독일(90.3%)이 높게 나타나고, 우리나라는 77.4%(2009년, 80.6%)로 평균과 근접하며,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46.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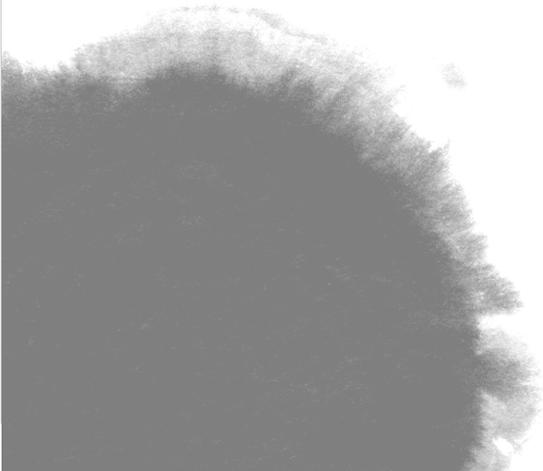
〈표 3-22〉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율 국제비교(2007)

	OECD 평 균	한국	핀란드	체코	독일	스웨덴	일본	영국	미국	터키
생산율 ^{주)} (%)	78.6	77.4 (80.6)	91.9	90.3	90.3	85.5	82.3	77.4	64.5	46.8

주: 생산율=생산수/요구통계수×100, OECD요구통계를 기준으로 통계가 없는 항목은 미생산한 것으로 계산함.
한국의 ()은 2009년도 임.

50) ‘전체 요구통계수’에 대한 ‘각 부문별 요구통계수’의 백분율임.

한국 사회복지기술의 추계결과



제4장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

제1절 사회복지지출의 지표별 추계결과

OECD는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SOCX)에 5가지 지표(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9가지 기능 영역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먼저 사회복지지출 지표의 추계결과를 살펴보고, 각 지출의 기능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사회복지지출의 추계를 위해서 이용되고,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과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 대신 이들을 통한 추계값인 사회복지지출과 총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별 추계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복지지출 지표 5가지의 추계결과와 이 중 4가지 지표(공공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를 살펴보도록 한다.

1. 공공사회복지지출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정부의 일반 지출과 사회보험지출, 공공기관의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정부의 일반지출 추계 결과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통해 공공부조와 공공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2008년 31조원, 2009년 36조원을 지출하고 있다. 2009년 기초생활보장부문의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1.8%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최성은 외, 2009)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미취학아동에 대한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증가,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09년 정부의 일반 지출은 전년 대비 14.6%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4-1〉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지출규모

(단위: 십억원)

프로그램		항목	2008	2009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해산 장제급여, 자활, 기초노령연금급여 등	12,448	14,585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이교육지원, 방과후학교운영, 급식비, 학비지원, 다문화가정지원 등	1,524	1,465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 기념사업	2	1	
	소방방재청	이재민구호, 주택피해복구비	9	40	
	통일부	새터민정착금, 새터민교육훈련	65	62	
	국가보훈처	보훈보상금-군경유족, 애국지사 및 그 유족, 상이군경, 기타 등.	2,133	2,265	
	지방정부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 장제급여, 교육급여, 자활근로사업 등	312	315	
	복권위원회	재해재난대비긴급구호비	2	1	
노령 및 근로 무능력	보건복지부	노인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1,890	1,691	
	복권위원회	가시간병방문도우미사업, 장사시설현대화	83	82	
	여성가족부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	0	1	
	한국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외	교통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541	556	
	문화재청, 한국방송공사	고궁·릉 입장료, TV시청료	11	12	
	지방정부	노인 복지서비스	1,070	1,156	
사회 복지 서비 스	가족	보건복지부	아동보호, 사회복지시설지원 등 청소년육성지원	3,475	4,057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	1,083	1,137
		여성가족부	아동보호, 복지시설 지원	59	56
		복권위원회	저소득가정지원	20	48
		지방정부	아동, 사회복지서비스	1,168	1,556
	주택보급	국토해양부	공공임대주택건설비(당해 연도 기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 공제)	2,168	3,621
	보건	보건복지부	의료고정자본형성	941	1,251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국방부	집단보건의료	1,801	2,259
	ALMP	고용노동부	공공고용서비스 및 행정	143	204
	기타	보건복지부	기부식품제공사업	-	11
지방정부		기타 복지서비스	789	782	
복권위원회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비지원	14	40	
한국방송공사		취약계층의 TV시청료	14	14	
합 계			31,763	37,266	

다음으로 사회보험지출의 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4개의 직역연금으로 구분되어 있어 각각의 자료원을 이용하여 추계하고 있다. 전체 연금의 추계결과는 2008년 17조원, 2009년 18조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의 지출액이 가장 크지만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국민연금의 지출액은 최근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개시되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표 4-2〉 공적연금별 지출규모

(단위: 십억원)

연금종류	자료원	연도	노령	유족	장애	기타	계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2008	5,114	751	316	-	6,181
		2009	6,275	869	328	-	7,472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공단	2008	7,359	467	37	0	7,863
		2009	7,119	511	39	0	7,669
사학연금	사학연금공단	2008	1,288	81	1	0	1,370
		2009	1,329	86	2	0	1,417
군인연금	국방부	2008	1,696	230	18	0	1,944
		2009	1,802	248	18	0	2,068
별정 우체국연금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2008	24	1	-	-	25
		2009	23	1	-	-	24
계		2008	15,480	1,530	372	0	17,382
		2009	16,548	1,714	386	0	18,650

주: 2009년도 연금중 보건부분(공무원연금의 공무원요양비, 일시금 16십억원, 사학연금의 직무상요양비, 일시금 2십억원)은 제외함.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09.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보』, 2009.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2009.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2009.
 별정우체국관리단, 내부자료, 2009.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역시 2009년 지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8년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년 고용보험지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4-3〉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출규모

(단위: 십억원)

구분	관련부처	프로그램	2008	2009
고용보험 ¹⁾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상병급여, 재취업, 기타(미지급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2,865	4,116
산재보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재활급여	3,422	3,463

주: 1) 대부사업과 유사 보조사업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2008-2009.
 고용노동부, 노동통계연감, 2010.

건강보험 역시 2009년 지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장기요양 보험은 2008년에 비해 2009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4-4〉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규모

(단위: 십억원)

구분	관련부처	프로그램	2008	2009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의료비, 요양급여	26,077	30,314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전문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425	1,73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년도.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의 교통·통신비 등 요금감면을 통한 지출액은 2008년 5,667억 원, 2009년 5,811억원으로 2.5%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교통·통신비 등 감면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많아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5〉 공공부문의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 규모

(단위: 백만원, %)

		2008	2009
교통	철도(*91.1)	174,234	181,009
	지하철(*91.1)	324,734	330,037
	고속도로통행료(*97.8)	42,209	44,690
통신	TV 수신료(*97.1)	22,500	21,930
입장료	고궁·릉(*90.9)	3,070	3,493
계		566,747	581,159

주: (*)안은 최초 도입된 년도임.

이상의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면 〈표 4-6〉과 같다. 먼저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는 2008년 86조원, 2009년 102조원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하였다. 또한 2009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공급주체별 구분을 살펴보면, 정부 36.0%, 사회보장기금 63.4%, 공공기관의 요금감면 0.6% 순으로 나타나 사회보장기금을 통한 지출 비중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 결과

(단위: 십억원)

	계	정부일반지출	사회보험	교통·통신비 등 요금감면
2008	85,569	31,196	53,806	567
2009	101,780	36,685	64,513	581

다음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을 기능구조별로 살펴본 결과, 보건영역(2008년 43.3%, 2009년 42.1%)과 노령영역(2008년 23.9%, 2009년 23.5%)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 보건영역의 비중은 다소 감소한 반면 노령영역 비중은 다소 증가하여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009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전년 대비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구조별 증감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이 118.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실업영역이 4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노동시장 이중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 및 폐업의 증가로 구직급여가 증가하고 고용안정서비스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표 4-7〉 공공사회복지지출¹⁾의 기능별 추계 결과

(단위: 십억원, 조원, %)

	2008		2009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1. 노령 ²⁾	20,411	23.9	23,967	23.5	17.4
2. 유족	2,667	3.1	2,927	2.9	9.7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³⁾	5,953	7.0	6,387	6.3	7.3
4. 보건 ⁴⁾	37,084	43.3	42,886	42.1	15.6
5. 가족	7,562	8.8	8,583	8.4	13.5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1,958	2.3	4,281	4.2	118.7
7. 실업 ⁵⁾	2,865	3.3	4,116	4.0	43.7
8. 주거	-	-	-	-	-
9. 기타 ⁶⁾	7,070	8.3	8,632	8.5	22.1
공공사회복지지출	85,569	100.0	101,780	100.0	18.9
경상GDP(조원)	1,026.5		1,065.0		3.75
경상GDP 대비 비율	8.34		9.56		14.6

주: 1)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고유사업)에 의한 지방비 포함.

2)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 금액이 포함됨.

3)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질병 관련 급여임.

4) 정형선,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 보건계정 구축, 보건복지가족부·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에서 재구성.

5)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임.

6) 공공부조사업 중 대부분 현금급여를 포함.

2. 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의 합으로 구성된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추계는 앞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법정퇴직금과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교통·통신비 요금 감면이 포함된다.

먼저 법정퇴직금의 추계 결과 2008년 약 4조원, 2009년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퇴직금은 전체 지출 금액(2008년 19조원, 2009년 25조원) 중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한 사람들(20%)의 금액만을 추계해야 하는 관계로 지출액과 추계값이 다르다.

〈표 4-8〉 법정퇴직금 지출규모

(단위: 명, 십억원)

	연도	수급자수	금액	추계값
법정퇴직금	2008	2,565,595	19,794	3,959
	2009	2,932,758	25,411	5,082

주: SOCX에 포함되는 법정퇴직금은 정년퇴직하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연령대를 고려할 때 전체 금액의 약20%로 추계됨.
자료: 2010 국제통계연보,

다음으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의 추계결과를 살펴보면,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지만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 산전후휴가 급여는 1,785억원으로 전년(1,666억원)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지출규모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수급자수	금액
산전후휴가급여	2008	72,260	166,631
	2009	75,047	178,477
육아휴직급여	2008	29,145	98,431
	2009	35,400	139,724

자료: 2009 고용보험통계연보, 한국고용정보원.

유급질병휴가급여의 추계결과 2008년과 2009년 모두 약 0.7조원 수준으로 나타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유급질병휴가급여 추계결과

	유급질병휴가급여 (십억원)	연평균 외병일수 (일)	전산업 월평균 정액급여(원)	상용근로자수 (천명)
2008	697	3.40	1,889,309	6,986
2009	694	3.0	1,878,803	7,088

끝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부문의 교통·통신비 감면을 추계한 결과 2009년 5,572 억원으로 전년(4,391억원) 대비 2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요금감면이 증가했으나 국내항공요금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민간부문의 교통·통신 감면 규모

(단위: 백만원, %)

		2008	2009	증가율
교통	국내항공요금(*91.8)	21,072	18,852	-11.8
	버스, 선박(*04)	4,450	5,220	17.3
통신	전화(*89.7), 이동통신(*96.6)	413,620	533,140	28.9
계		439,141	557,213	26.9

주: () 는 최초 계도가 도입된 시기임.

이상과 같은 법정민간사회복지추계결과를 포함한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는 〈표 4-12〉 과 같다. 2009년 사회복지지출은 111조원으로 전년(92조원) 대비 20.2% 증가하였다. 2009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역시 10.38%로 전년(8.96%) 대비 증가율은 15.8%이다. 2009년도 사회복지지출의 지표 구성을 비교하면, 공공사회복지지출이 92.1%, 법정사회복지지출이 7.9%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12〉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계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2008	91,949 (8.96)	85,569 (8.34)	6,379 (0.62)
2009	110,548 (10.38)	101,780 (9.56)	8,769 (0.82)

주: () 은 경상GDP 대비 비율을 나타냄.

기능구조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의 추계 결과 역시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마찬가지로 보건영역(2008년 40.3%, 2009년 38.8%)과 노령영역(2008년 27.4%, 2009년 28.0%)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또한 보건영역의 비중이 3% 정도 감소하고, 노령영역의 비중이 1%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의 증감을 역시 적극적노동시장 프로그램(118.7%)과 실업(43.7%)영역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3〉 사회복지지출¹⁾의 기능별 추계

(단위: 십억원, 조원, %)

	2008		2009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1. 노령 ²⁾	25,154	27.4	30,965	28.0	23.1
2. 유족	2,667	2.9	2,927	2.6	9.7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³⁾	7,029	7.6	7,487	6.8	6.5
4. 보건 ⁴⁾	37,084	40.3	42,886	38.8	15.6
5. 가족	8,069	8.8	9,110	8.2	12.9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1,958	2.1	4,281	3.9	118.7
7. 실업 ⁵⁾	2,865	3.1	4,116	3.7	43.7
8. 주거	-	-	-	-	-
9. 기타 ⁶⁾	7,123	7.7	8,776	7.9	23.2
사회복지지출(십억원)	91,949	100.0	110,548	100.0	20.2
경상GDP(조원)	1,026.5		1,065.0		3.75
경상GDP 대비 %	8.96		10.38		15.8

주: 1)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고유사업)에 의한 지방비 포함.

2)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 금액이 포함됨.

3)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질병 관련 급여임.

4) 정형선,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 보건계정 구축, 보건복지가족부·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에서 재구성.

5)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임.

6) 공공부조사업 중 대부분 현금급여를 포함.

3. 총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은 사회복지지출과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는 사회복지시설과 민간모금기관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적기업, 기업의 법정 외 복리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자동차보험과 실손형 보험에 대한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하였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지원금 규모는 표본조사를 근거로 추계하였다. 2009년 사회복지지출의 민간지원금은 3,186억원으로 전년(2,756억원) 대비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지원금(1,242억원, 2009년)은 비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지원금(1,943억원, 200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평균 지원금은 2008년 1.2억원에서 2009년 0.9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지원금 규모

(단위: 백만원, %)

	2008			2009		
	계	종교계시설	일반시설	계	종교계시설	일반시설
지출규모	275,579	107,509	168,070	318,585	124,270	194,315
평균 지원금	123	131	118	91	111	82
전년대비증가율	17.1	56.0	0.2	15.6	15.6	15.6

주: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지원금 = 법인 유입금 + 후원금(종교기관, 공공기관, 개인, 기타 등)으로 구성됨
2007년 지출규모는 236,089백만원이고, 지원금은 105백만원임(고경환 외, 2009).

다음으로 시설형태별 민간지원금을 살펴보면, 생활시설의 민간지원금이 이용시설의 민간지원금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증감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용시설은 전년 대비 민간지원금이 69.2% 증가한 반면, 생활시설은 전년 대비 4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5〉 시설형태별 민간지원금 규모(2009)

(단위: 백만원, %)

	2008		2009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계	275,579	100.0	318,585	100.0	15.6
이용시설	119,874	43.5	202,811	63.7	69.2
생활시설	155,704	56.5	89,562	28.1	-42.5
이용+생활	-	-	26,212	8.2	100.0

민간모금기관이 200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배분한 금액은 4,542억원, 이중 사회복지시설지원금액이 2,160억원으로 나타났다(표 4-16 참조).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결과 208억원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의 법정 외 복리비와 사회공헌활동, 자동차보험과 실손형 보험의 지출을 총합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 19조원으로 전년(2008년 18조원) 대비 6.8% 증가하였다. 2009년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공급주체별 구성을 살펴보면, 기업부문이 76.8%로 가장 높고 시장 20.0%, 제3섹터 4.1%로 나타난다. 즉 제3섹터는 여전히 정부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6〉 자발적민간지출의 총규모

(단위: 억원, %)

부문	구분	2008		2009	
			비율		비율
계		179,570	100.0	191,174	100.0
이중계산 ¹⁾		-873 (1,853)	-0.5	-2,160	-1.1
제3섹터	사회복지시설	2,756	1.5	3,186	1.7
	민간모금기관	160	0.1	208	0.1
	사회적 기업	4,163	2.3	4,542	2.4
기업	기업의 법정의 복리비	136,693	76.1	136,224	71.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6,989	3.9	10,750	5.6
시장	자동차보험, 실손해보험	29,683	16.5	38,424	20.1

주: 1) 민간모금기관의 사회복지시설지원금

2) 자발적민간지출의 "보건부문"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민간모금기관, 기업의 법정의 복리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규모는 2008년 8,480억원, 2009년 9,155억원임. SOCX의 Health는 OECD Health database로부터 인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한 결과는 〈표 4-17〉 과 같다. 2009년 총사회복지지출은 130조원으로 전년(110조원) 대비 1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GDP 대비 총사회복지지출 역시 12.17%로 전년(10.71%) 대비 13.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2009년 총사회복지지출의 지표 구성을 살펴보면, 공공사회복지지출 78.5%,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6.8%,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14.7%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복지주체의 역할과 책무가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 4-17〉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계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지출	자발적민간지출
2008	109,906 (10.71)	85,569 (8.34)	6,379 (0.62)	17,957 (1.75)
2009	129,666 (12.17)	101,780 (9.56)	8,769 (0.82)	19,117 (1.79)

주: ()는 경상GDP 대비 비율임

총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결과 역시 공공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과 유사하게 보건영역(2008년 36.4%, 2009년 36.0%)과 노령영역(2008년 22.9%, 2009년 23.9%)

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건영역이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36.0%, 2009)은 사회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38.8%, 2009)보다 낮고, 공공사회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1%(2009)보다 낮다. 반면에 노령영역은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법정퇴직금의 영향을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부조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 사회정책영역은 주로 정부의 일반지출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8.5%, 2009)과 사회복지지출 대비 비중(7.9%, 2009)에 비해 총사회복지지출의 비중(16.6%, 2009)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부조와 저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의 영향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총사회복지지출의 증감율을 살펴보면,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과 실업영역의 높은 증가율이 발견되나 가족영역의 증감율 역시 15.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족영역은 공공사회복지지출에서의 증가율(13.5%)에 비해 총사회복지지출에서의 증가율(15.9%)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가족영역의 자발적 민간지출의 영향이 다소 크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표 4-18〉 총사회복지지출¹⁾의 기능별 추계 결과

(단위: 십억원, 조원, %)

	2008		2009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1. 노령 ²⁾	25,188	22.9	31,002	23.9	23.1
2. 유족	2,667	2.4	2,927	2.3	9.7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³⁾	7,062	6.4	7,514	5.8	6.4
4. 보건 ⁴⁾	40,052	36.4	46,728	36.0	16.7
5. 가족	8,968	8.2	10,394	8.0	15.9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1,958	1.8	4,281	3.3	118.7
7. 실업 ⁵⁾	2,865	2.6	4,116	3.2	43.7
8. 주거	1,064	1.0	1,140	0.9	7.1
9. 기타 ⁶⁾	20,081	18.3	21,563	16.6	7.4
총사회복지지출(십억)	109,906	100.0	129,666	100.0	18.0
경상GDP(조)	1,026.5		1,065.0		3.75
경상GDP 대비 %	10.71		12.17		13.6

주: 1)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고유사업)에 의한 지방비 포함.

2)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 금액이 포함됨.

3)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질병 관련 급여임.

4) 정형신,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 보건계정 구축, 보건복지가족부·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에서 재구성.

5)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임.

6) 공공부조사업 중 대부분 현금급여를 포함.

총사회복지지출의 구성과 증감을 살펴본 결과 민간사회복지지출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과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을 합한 민간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를 살펴보았다. 2009년 민간사회복지지출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하였으며, 2009년 기능구조별 민간사회복지지출의 구성비는 기타 사회정책 영역의 비중이 가장 높고 노령과 보건 영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법정퇴직금과 산전후휴가 및 유급질병휴가 등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영향이 노령영역과 보건영역에서 두드러지는 데 반해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영향은 기타 사회정책영역에서 두드러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9〉 민간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 결과

(단위: 십억원, 조원, %)

	2008		2009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1. 노령 ¹⁾	4,777	19.6	7,035	25.2	47.3
·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	3,959	16.3	5,082	18.2	28.4
· 퇴직연금	779	3.2	1,910	6.8	145.3
2. 유족	-	-	-	-	-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²⁾	1,110	4.6	1,126	4.0	1.5
4. 보건 ³⁾	2,968	12.2	3,842	13.8	29.4
5. 가족	1,406	5.8	1,811	6.5	28.8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	-	-	-
7. 실업	-	-	-	-	-
· 실업보상	-	-	-	-	-
8. 주거	1,064	4.4	1,140	4.1	7.1
9. 기타	13,012	53.5	12,932	46.4	-0.6
민간사회복지지출(십억원)	24,336	100.0	27,886	100.0	14.6
경상GDP(조원)	1,026.5		1,065.0		3.75
경상GDP 대비 %	2.37		2.62		10.5

주: 1)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 기업의 퇴직연금, 교통요금 감면 등이 포함.

2)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질병 관련 급여임.

3) 정형선,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 보건계정 구축, 보건복지가족부·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에서 재구성.

4. 순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의 추계는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조세지출을 고려한 것이므로 조세부담과 조세혜택을 먼저 추계해야 한다. 먼저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고려한 직접세율은 2008년 4.65%에서 2009년 4.07%로 감소하였다.

〈표 4-20〉 직접세율 추계 결과

(단위: %)

	2008	2009
직접세율	4.65	4.07

주: $\text{근로소득결정세액} + \text{과세대상근로소득(급여총계에서 비과세소득, 과세미달자 제외)} \times 100 = \text{직접세율}$
 자료: 2010 국제통계연보, 국제정.

다음으로 거시자료를 활용하여 간접세율을 추계한 결과 간접세율은 2008년 최소 11.23%에서 최대 15.33%, 2009년 최소 11.03%에서 최대 15.0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세율과 간접세율의 이러한 감소는 감세정책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21〉 간접세율 추계 결과

(단위: %)

		2008	2009
Macro data	Minim	11.23	11.03
	Maxim	15.33	15.07

주: $\text{Minim} = (5110 \text{ 일반소비세} + 5121 \text{ 국내소비세}) / (\text{민간소비} + \text{정부소비} - \text{공무원임금}) \times 100$
 $\text{Maxim} = (5000 \text{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 / \text{국민계정의 민간최종소비지출} \times 100$
 자료: OECD(2010), Revenue Statistics 1965-2009이며, 2009년은 예상액임.
 한국은행 홈페이지, 국민계정

한편 조세감면의 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세법과 지방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과 장애인에 대한 조세감면, 근로자 등을 위한 조세감면제도를 통해 2008년 10조원, 2009년 9조원의 지출이 추계되었다. 그러나 2008년에 비해 2009년의 조세감면액은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접세율과 간접세율을 통한 조세부담이 줄어든 대신 조세감면액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등을 위한 조세지출액은 96.0%에 달하고 있다.

〈표 4-22〉 조세감면 규모

(단위: 십억원)

	2008	2009
계	10,848	9,792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액	77	81
지방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액	209	229
장애인용 자동차 구입단계 면세금액	56	59
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세금액	11	25
근로자 등을 위한 조세지출액	10,495	9,397

자료: 『2010 세정연감』, 행정안전부
 국제정 내부자료, 2010.
 관세정 내부자료, 2009.
 『조세지출보고서』,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각 년도.

총사회복지지출에 조세부담과 조세혜택을 추계하여 순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23〉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요소 GDP 대비 %)

	2008		2009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1. 총사회복지지출	109,906	100.0	129,666	100.0	17.98
2. 조세부담 ¹⁾	6,029	5.5	6,583	5.1	9.18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622	0.6	667	0.5	7.33
간접세	5,408	4.9	5,916	4.6	9.39
3. 조세혜택 ²⁾	10,848	9.9	9,792	7.6	-9.73
순사회복지지출	114,724	104.4	132,875	102.5	15.82
(요소GDP 대비 비율)	12.66		14.04		10.90

주: 1) 직접세는 기업복지의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에 부과된 소득세임(참고로 사회보험의 각종 급여에는 소득세가 면세임). 간접세 추계는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현금급여, 기업복지 중 현금급여(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TBSPs의 평균간접세율로 추계함.

2) 근로소득 공제제도에 따른 감세, 장애인용 자동차 면세액,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그리고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임. 단, 기업의 사회복지관련 지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자료수집의 한계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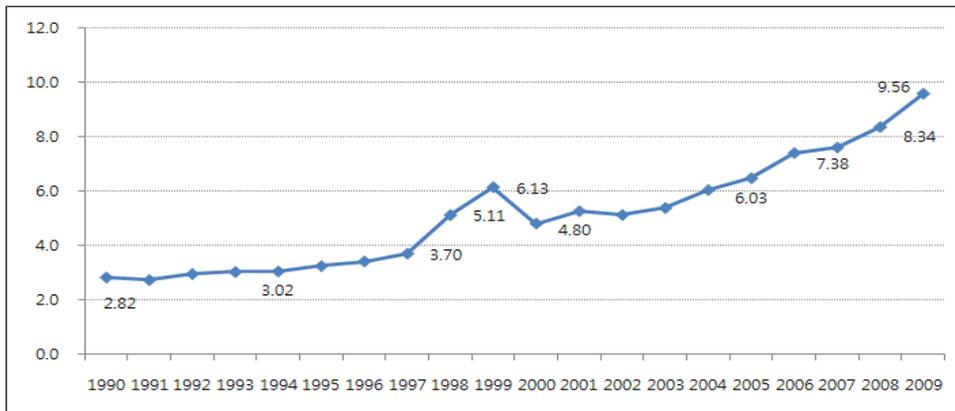
제2절 사회복지지출의 추이분석

1. 공공사회복지지출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1990년 2.82%에 불과하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999년 IMF 위기 이후 대량 실업과 취약계층 증가에 대응한 긴급복지의 증가로 6.13%까지 급증하였다가 이후 예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00년 이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9.56%이다.

[그림 4-1]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1990-2009)

(단위: %)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별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능구조에서 최소한 10 배 이상의 급격한 지출 증가가 나타난다. 한국의 사회복지제도가 공공부조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가족은 전통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의 출발점이자 대안으로서 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바 가족영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괄목할만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탈산업화, 세계화 등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비정규직 양산, 조기퇴직 및 자영업자의 폐업 등의 문제가 속출하자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고용안정서비스가 등장하였다. 따라서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의 과거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최근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유족급여와 근로무능력급여, 보건영역은 지난 20년간 10배 내외의 성장을 보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추이¹⁾: 기능별

(단위: 십억원, %)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1. 노령 ²⁾	1,166	4,346	7,479	12,390	15,707	20,411	23,967
2. 유족	298	637	1,040	2,013	2,471	2,667	2,927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³⁾	563	1,491	2,229	4,535	5,375	5,953	6,387
4. 보건 ⁴⁾	2,926	5,914	13,147	25,935	34,297	37,084	42,886
5. 가족	60	262	665	2,211	4,861	7,562	8,583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51	168	2,313	1,035	1,267	1,958	4,281
7. 실업 ⁵⁾	-	-	471	1,752	2,434	2,865	4,116
8. 주거	-	-	-	-	-	-	-
9. 기타 ⁶⁾	335	451	1,600	6,018	7,547	7,070	8,632
공공사회복지지출	5,398	13,268	28,943	55,888	73,959	85,569	101,780
경상GDP 대비 %	2.82	3.24	4.80	6.46	7.59	8.34	9.56

주: 1)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고유사업)에 의한 지방비 포함.

2)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 금액이 포함됨.

3)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질병 관련 급여임.

4) 정형선,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 보건계정 구축, 보건복지가족부·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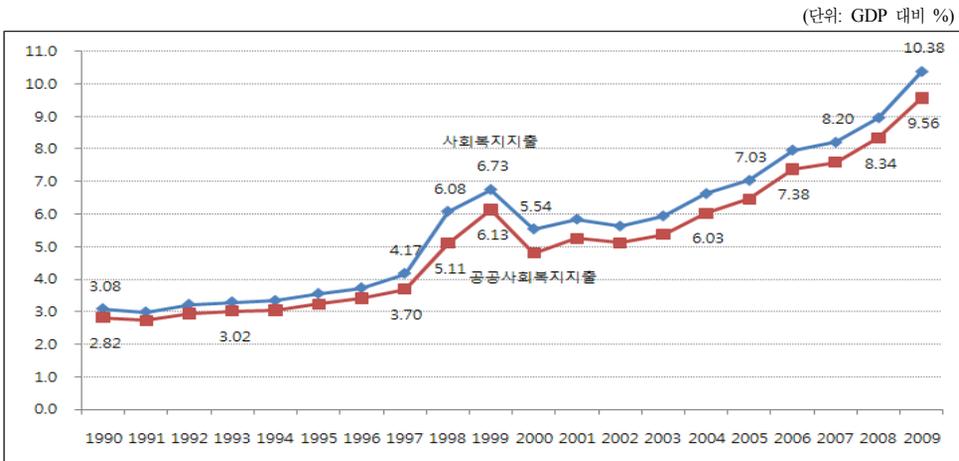
5)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임.

6) 공공부조사업 중 대부분 현금급여를 포함.

2. 사회복지지출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추이와 거의 일치한다. 즉 사회복지지출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차이가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인데,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사회복지지출의 추이에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4-2] 사회복지지출 추이(198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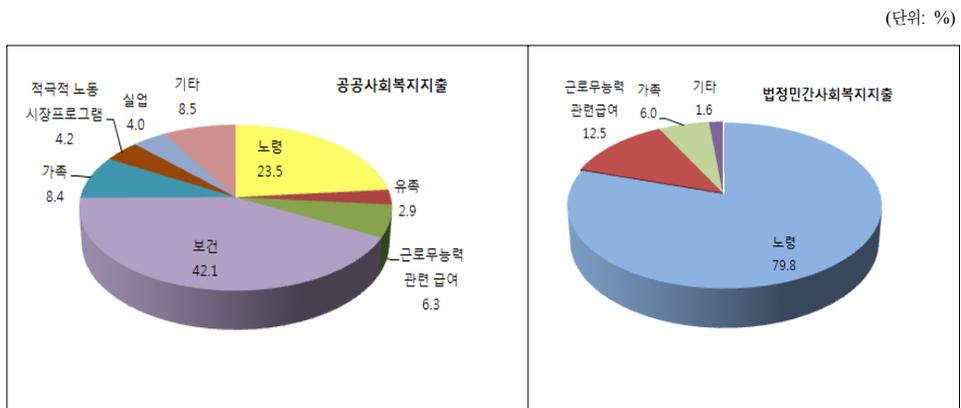
사회복지지출의 기능구조별 추이를 살펴보면, 가족영역(약 152배)과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약 84배)의 증가가 매우 급격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유족과 실업의 증가율은 10배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25〉 사회복지지출 추이: 기능별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1. 노령	1,525	5,357	11,048	15,836	20,000	25,154	30,965
2. 유족	298	637	1,040	2,013	2,471	2,667	2,927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705	1,744	2,892	5,713	6,587	7,029	7,487
4. 보건	2,926	5,914	13,147	25,935	34,297	37,084	42,886
5. 가족	60	263	879	2,518	5,321	8,069	9,110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51	168	2,313	1,035	1,267	1,958	4,281
7. 실업	-	-	471	1,752	2,434	2,865	4,116
8. 주거	-	-	-	-	-	-	-
9. 기타	335	459	1,619	6,040	7,591	7,123	8,776
사회복지지출(십억원)	5,900	14,542	33,407	60,842	79,967	91,949	110,548
경상GDP 대비 %	3.08	3.55	5.54	7.03	8.20	8.96	10.38

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 정책영역을 비교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2009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보건(42.1%)과 노령(23.5%), 가족(8.4%)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노령(79.8%), 근로무능력관련급여(12.5%), 가족(6.0%)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4-3〕 사회복지지출 지표별 정책영역 비교



사회복지지출의 추이를 공급주체와 프로그램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지출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표 4-26〉 사회복지지출 추이: 프로그램

(단위: 십억원)

주체	제도	프로그램	1990	1995	2000	2005	2008	2009
정부	공공부조	소 계	599	1,042	3,199	8,462	14,215	16,233
		기초생활보장 ¹⁾	599	1,042	3,199	8,462	11,972	12,822
		기초노령연금	-	-	-	-	2,243	3,412
	사회보상	소 계	355	711	1,051	1,756	2,280	2,502
		국가보훈	315	677	1,025	1,672	2,133	2,265
		재해구호 ²⁾	40	33	19	28	61	156
		북한이탈주민지원	-	1	7	50	66	65
		사할린동포	-	-	-	-	9	8
		고엽제, 위안부보호	-	-	-	1	2	1
		의사상자예우	-	-	-	5	8	7
	사회복지서비스	소 계	547	1,446	4,884	8,716	15,269	18,531
		시설보호 ³⁾	39	291	545	161	3,727	4,338
		재가복지 ⁴⁾	104	424	1,152	3,129	4,830	5,130
		근로복지 ⁵⁾	51	166	1,862	269	143	204
		보건의료 ⁶⁾	353	565	1,119	1,808	2,742	3,510
		주택보급	-	-	-	2,776	2,168	3,621
		교육복지	-	-	206	573	1,083	1,137
		교통통신 등 감면	-	- ¹¹⁾	- ¹¹⁾	- ¹¹⁾	567	581
		아동발달계좌	-	-	-	-	10	10
	사회보험	소 계	3,896	10,068	19,808	36,955	53,806	64,513
		연금 ⁷⁾	1,235	4,482	7,656	12,095	17,399	18,668
		의료보장 ⁸⁾	2,122	4,450	9,774	19,242	27,615	32,140
		산업재해보상보험	539	1,134	1,456	3,026	3,422	3,463
고용보험		-	2	922	2,592	4,945	8,512	
장기요양보험 ⁹⁾		-	-	-	-	425	1,731	
기업	민간복지서비스	교통통신 감면	-	55 ¹¹⁾	272 ¹¹⁾	715 ¹¹⁾	439	557
		소 계	502	1,220	4,193	4,240	5,940	8,211
	기업복지	법정퇴직금	359	984	3,474	3,182	3,959	5,082
		퇴직연금	-	-	-	-	779	1,910
		산전후휴가급여	-	-	212	307	506	526
		유급질병휴가급여 ¹⁰⁾	143	235	506	751	697	694
사회복지지출			5,900	14,542	33,407	60,842	91,949	110,548

주: 1) 생계보호, 일시구호, 교육보호, 부랑인시설보호,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의료급여.
 2) 주택복구비, 이재민구호비.
 3) 장애인복지시설보호, 노인시설보호, 아동시설보호, 모자보호 및 선도보호시설 등.
 4) 재가장애인보호, 재가노인지원, 아동건강육성,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등.
 5) 고용서비스, 직업훈련기관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훈련 및 운영비,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등.
 6)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건 지출.
 7)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직원연금.
 8) 직장·지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건강보험.
 9) 장기요양급여비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구법),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급여비임. (단, 방문간호만 제외).
 10) 근로자의 유급질병휴가에 대한 급여임.
 11) 총액은 추계하고 있으나 공공과 민간으로 분류는 한 단계 노력이 요구되어 차후 정리 할 예정임.

사회복지지출의 재원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부담율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데 반해 2009년에는 약 12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과 2009년의 재원부담율을 비교하면, 공공부문은 19배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고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7〉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재원별

(단위: 십억원)

		1990	1995	2000	2005	2008	2009
공공 부 문	정 부 ¹⁾	1,501	3,200	9,134	18,933	31,763	37,266
	사회보험 ²⁾	3,896	10,068	19,808	36,955	53,806	64,513
	소 계	5,398	13,268	28,943	55,888	85,569	101,780
민 간 부 문	법정퇴직금	359	984	3,474	3,182	3,959	5,082
	퇴직연금	-	-	-	-	779	1,910
	산전후휴가급여	-	-	212	307	506	526
	유급질병휴가급여	143	235	506	751	697	694
	민간복지서비스 ³⁾	-	55	272	715	439	557
소 계	502	1,274	4,464	4,954	6,379	8,769	
사회복지지출		5,900	14,542	33,407	60,842	91,949	110,548

주: 1)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출금액이며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포함. 2008-2009년의 공기업의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요금감면은 정부로 구분됨.

2) 4대 사회보험의 급여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액임.

3) 취약계층을 위한 민간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액임.

사회복지지출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스웨덴 27.7%, 덴마크 26.3%, 독일 26.2%로 북유럽과 유럽대륙국가들의 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이들 국가의 1/3에 불과하며, 근접한 국가인 일본(19.3%)의 1/2수준이며, 잔여적 복지시혜국인 미국(16.5%)보다도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28〉 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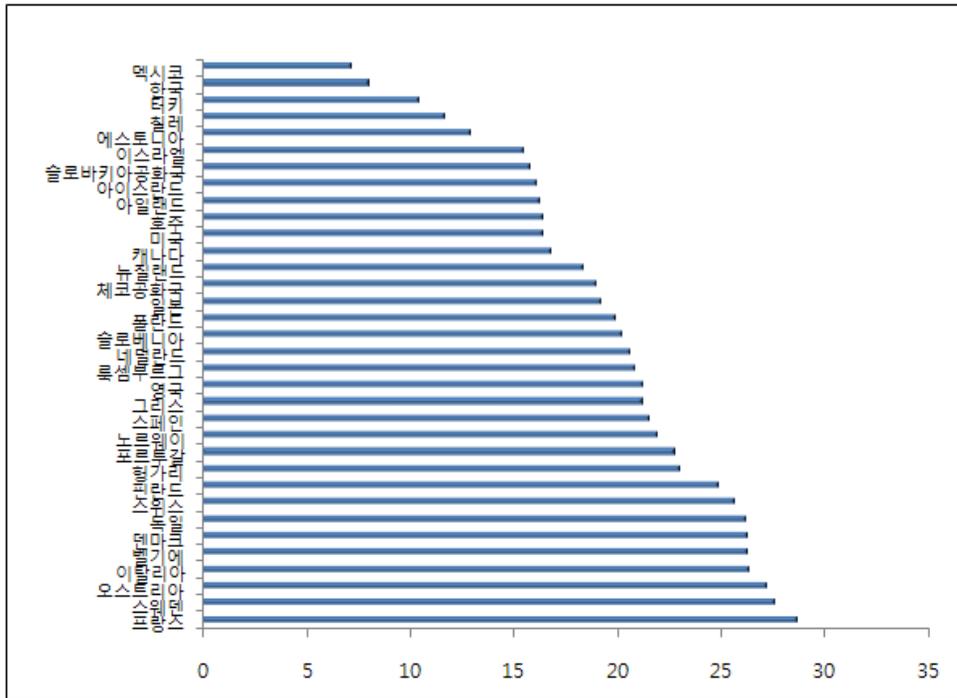
	한국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영국	일본	미국
사회복지지출 (경상GDP 대비 %)	8.2	27.7	26.3	26.2	21.3	19.3	16.5

자료: OECD 홈페이지.

[그림 4-4]는 OECD 회원국들의 2007년 사회복지지출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사회복지지출이 가장 낮은 멕시코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1인당 GDP(PPP기준)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도의 발달수준을 보이는 국가들⁵¹⁾에 비해서도 한국 사회복지지출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4] 사회복지지출의 국제 비교

(단위: 경상GDP 대비 %)



3. 민간사회복지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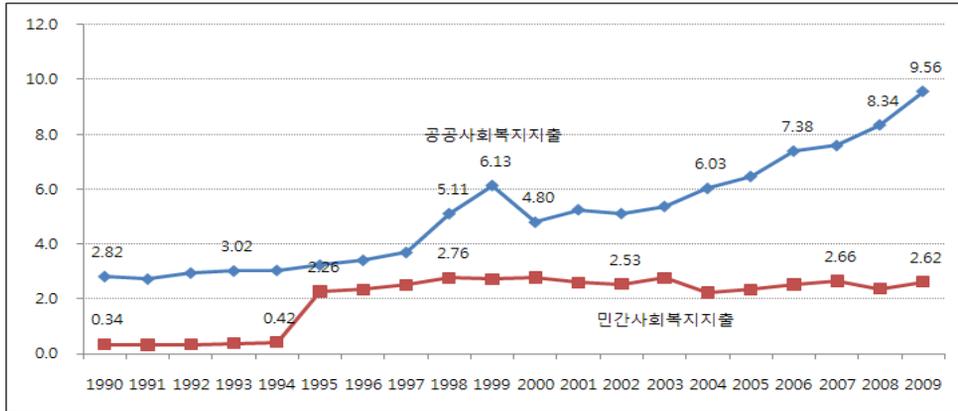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과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을 아우르는 민간사회복지지출(Private Expenditure)은 지난 20년간 급격한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담보상태에 있다. 1990년 민간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0.34%에 불과했으나 경제위기 이후 퇴직금의 지출과 유급질병휴가급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2.62%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2000년 이후 급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추이와

51) 2009년 한국의 1인당 GDP(\$ 27,168)는 세계 26위이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들로는 뉴질랜드 24위(28,723), 이스라엘 25위(27,674), 슬로베니아 27위(27,004), 체코공화국 29위(25,232), 포르투갈 30위(24,021) 등이 있음(World Bank 홈페이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년간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민간사회복지지출이 16.2%, 공공사회복지지출이 16.7%로 분석되었다.

[그림 4-5] 민간사회복지지출 추이

(단위: 경상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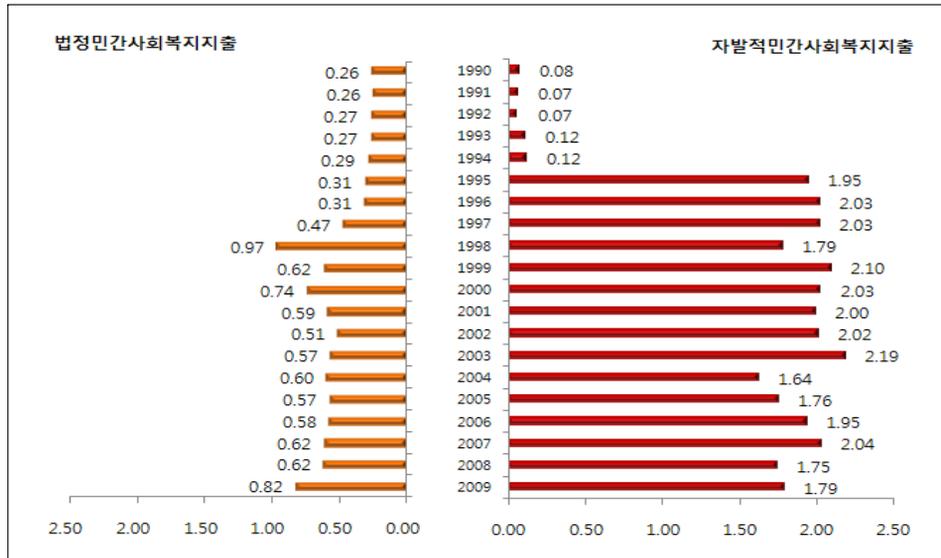


1995년 이전에는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1995년 이후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특히 1997년 IMF의 영향으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이 0.97%까지 전년 대비 2배가량의 증가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퇴직자 발생으로 퇴직금 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본다.

반면에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 1995년 이전에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제정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경제위기가 야기되었던 1997년 직후와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추가적인 쇼크가 발생한 2003년에 자발적민간지출이 증가한 반면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다.

[그림 4-6] 민간사회복지지출 비교(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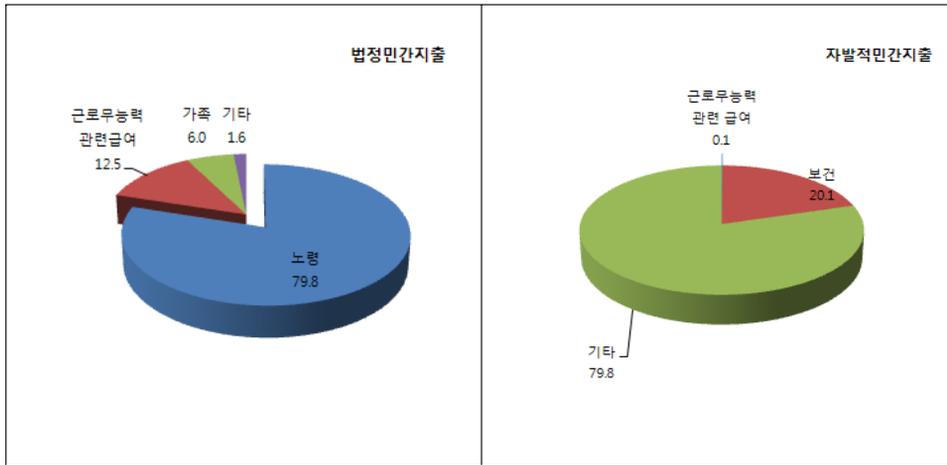
(단위: 경상GDP 대비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노령영역(79.8%)과 근로무능력관련급여(12.5%), 가족영역(6.0%)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자발적민간지출은 기타 정책영역(79.8%)과 보건(20.1%)영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을 구성하는 제도들이 법정퇴직금과 유급질병휴가급여, 산전후 및 육아휴직급여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반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통·통신비를 감면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기타 사회정책 영역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 주로 공공부조 대상자와 사각지대에 속한 취약계층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 기타 사회정책 영역이 79.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기업의 법정 외 복지제도들이 주로 보건영역인 관계로 이 영역의 비중이 20.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그림 4-7] 법정민간지출과 자발적민간지출 비교: 정책영역(200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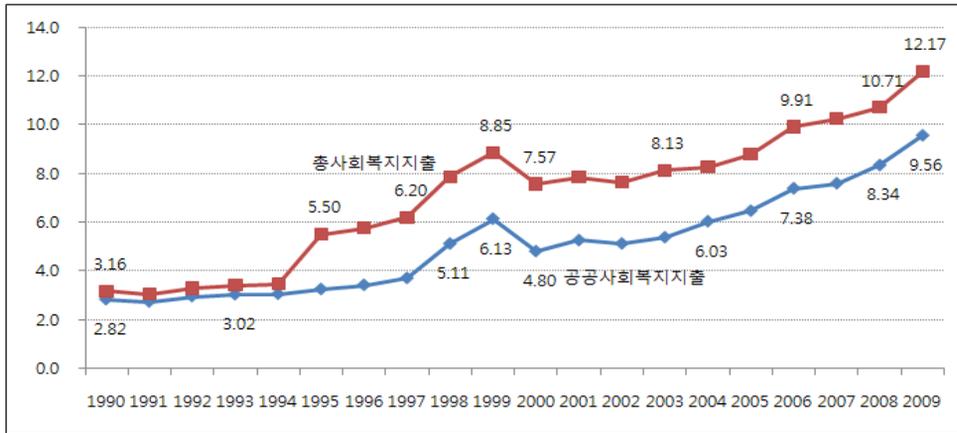


4. 총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 역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추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지난 1990년 GDP 대비 3.16%에 불과하던 총사회복지지출은 IMF 직후 8.85%까지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0년에 예년수준을 회복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12.17%에 달하고 있다. 또한 총사회복지지출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차이가 민간사회복지지출인데, 1995년 이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림 4-8] 총사회복지지출 추이

(단위: 경상GDP 대비 %)



총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민간사회복지지출을 아우른다. 2000년 이후 한국의 총사회복지지출의 지표별 추이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29> 총사회복지지출 추이

(단위: 십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 공공사회복지지출 ¹⁾	28,943	34,209	36,823	41,192	49,833	55,888	67,092	73,959	85,569	101,780
2. 법정민간지출 ²⁾	4,464	3,827	3,700	4,341	4,946	4,954	5,256	6,008	6,379	8,769
3. 자발적민간지출 ³⁾	12,266	13,060	14,552	16,817	13,520	15,226	17,704	19,884	17,957	19,117
총사회복지지출(1+2+3)	45,673	51,095	55,075	62,351	68,299	76,067	90,052	99,851	109,906	129,666

주: 1)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의 급여,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등의 감면
 2)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감면
 3) 민간모금단체, 종교단체, 기업의 법정 외 복리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 2003년 이후 감소하는 이유는 기업의 법정 외 복리비가 감소하기 때문임. 즉, 1인당 법정 외 복리비가 2002년 19만7천원 에서 2003년 22만7천원을 최고로 2004년부터 16만2천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상용근로자 수는 일정함.

선진국과 한국 총사회복지지출을 비교한 결과는 사회복지지출의 그것과 유사하다. 즉 스웨덴(30.2%), 덴마크(28.7%), 독일(28.0%)의 총사회복지지출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한국은 이들 국가의 1/3 수준이며, 인접한 일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반면에 영국과 미국은 사회복지지출보다 총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잔여적 복지제도를 가진 이들 국가에서 자발적사회복지지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0〉 총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200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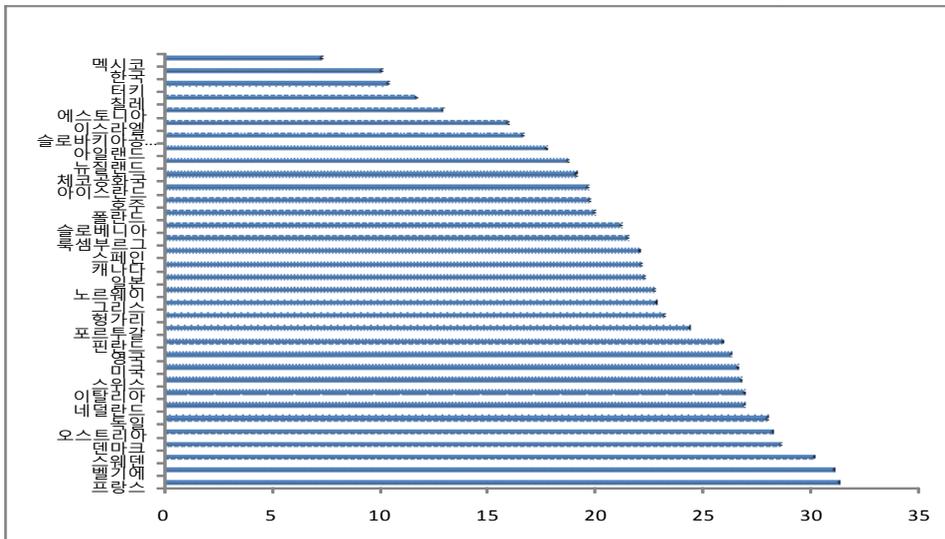
	한국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영국	일본	미국
총사회복지지출 (경상GDP 대비 %)	10.2	30.2	28.7	28.0	26.3	22.3	26.7

자료: OECD 홈페이지.

OECD 회원국들의 총사회복지지출을 비교한 결과 역시 사회복지지출의 비교결과와 유사하다. 즉 총사회복지지출이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멕시코 바로 위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총사회복지지출을 통한 국가간 비교는 사회복지자원의 총량과 공급주체별 영향을 살펴볼 때 용이하나 총사회복지지출만으로 복지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회복지지출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발전수준과 유사한 국가들을 비교할 때 한국의 총사회복지지출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9〕 총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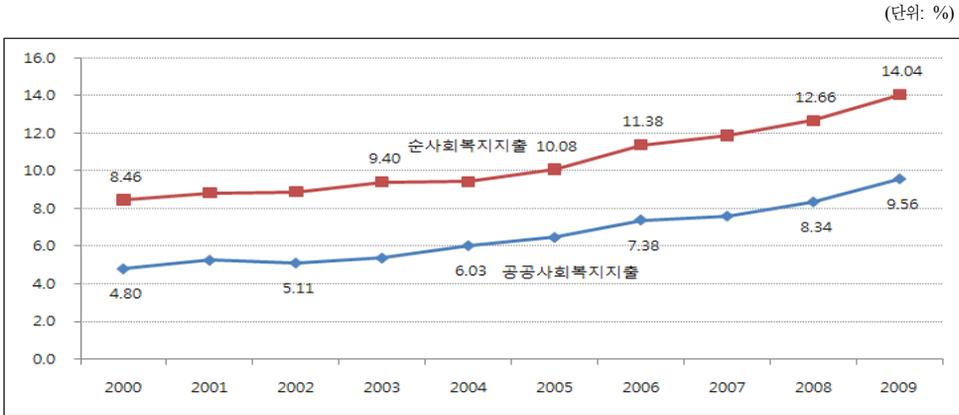
(단위: 경상GDP 대비 %)



5. 순사회복지지출

최근 조세제도를 통한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면서 순사회복지지출의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10년동안 순사회복지지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8.46%에 불과하던 순사회복지지출은 2009년 14.04%로 증가하였다.

[그림 4-10] 순사회복지지출 추이



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경상GDP대비 비율로, 순사회복지지출은 요소GDP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임.

순사회복지지출은 지난 2000년 45조원에서 2009년 133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기간 요소GDP 대비 순사회복지지출의 비율 역시 2000년 8.46%에서 2009년 14.04%로 1.6배 가량 증가하였다.

<표 4-31> 순사회복지지출 추이

(단위: 십억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순사회복지지출	45,089	50,585	56,172	63,551	69,196	77,423	91,569	102,375	114,724	132,875
요소GDP 대비 비율	8.46	8.82	8.88	9.40	9.42	10.08	11.38	11.87	12.66	14.04

한편 일부 선진국에서는 총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간의 변화가 나타난다. 스웨덴과 덴마크, 독일에서 총사회복지지출은 각각 30.2%, 28.7%, 28.0%로 나타난 반면 순사회복지지출은 27.8%, 25.3%, 28.4%로 나타난다. 즉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총사회복지지출이 순사회복지지출보다 높아 조세부담으로 인한 조정이 두드러지는 반면, 독일에서는 총사회복지지출보다 순사회복지지출이 0.4% 높아 조세부담보다 조세혜택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총사회복지지출이 경상GDP로 측정되는 반면 순사회복지지출이 요소GDP로 측정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표 4-32〉 순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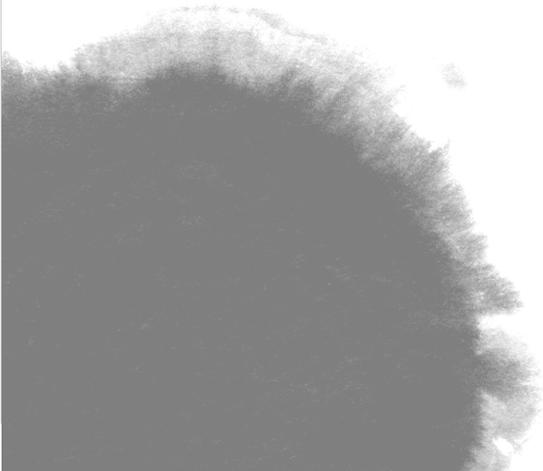
(단위: %)

	한국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영국	일본	미국
순사회복지지출 (요소GDP 대비 비율)	11.9 (14.04)	27.8	25.3	28.4	26.9	23.4	27.5

주: ()안은 2009년
 자료: OECD홈페이지(www.oecd.org).

05

향후연구를 위한 추계범위 고찰과
특정영역 국제비교



제5장 향후연구를 위한 추계범위 고찰과 특정영역 국제비교

제1 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범위 분석

1. 민간 사회복지자원에 관한 이론적 배경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회복지 공급 주체는 항상 혼합적이었다. 공공부문이 주된 복지공급 주체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전후(post-war)의 전통적 복지국가의 발전기 이후의 일로서 상대적으로 짧은 연원을 갖고 있으며, 또 설령 가장 발전된 복지국가에서도 가족, 비영리부문, 기업, 시장 등 다양한 민간 주체의 중요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공사역할분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러한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또는 복지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시작하였다.

복지다원주의는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탈중앙화(de-centralisation)와 참여(participation)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비영리부문과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의 확대를 중심으로 복지공급체계가 개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초창기의 복지다원주의자들은 사회서비스 부문의 민간영역 확대가 사회복지 영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국가의 역할을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고, 또한 영리성의 원칙이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았다. 무엇보다도, 국가는 여전히 서비스의 질을 규제하고 소요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Johnson, 1987: chapter 3).

유럽국가들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방향이 국가가 재정 및 규제의 측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되, 과도한 공공의 비용부담 없이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진적 개혁 방안으로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공사혼합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공사혼합 방향은 첫째, 국가의 직접 서

비스와 급여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 및 비영리 부문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둘째는 민간 또는 비영리 영역의 확장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는 바로 제3섹터가 사회서비스의 주 제공자가 됨을 의미하며, 이는 제3섹터에 대한 공공의 재정 지원 증가(public funding of outside providers) 및 사회서비스의 책임성의 상당 부분이 국가에서 제3섹터로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⁵²⁾. 그렇지만, 셋째로, 서비스의 수혜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규제하기 위한 시장기제의 부분적 도입이 이루어졌다.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급여와 재원이 주목받는 이유의 하나는 공공과 민간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제공이 가능하다는 공사역할분담의 필요성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사회복지 부문에서 공사역할분담이 논의되는 배경에는 국가, 시장, 제3섹터 등 사회복지 공급을 담당한 각 영역들이 나름대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주체에 의한 독점적 공급체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공급의 주요 주체인 시장, 정부, 비영리부문 모두 고유한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영역에만 의존하는 독점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개별영역의 독점적 공급구조에 내재된 한계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민관파트너십과 이에 근거한 적정수준의 복지혼합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의 복지공급 역할이 제한적이고 가족시장기업 등이 이를 대체보완해 왔던 한국 복지혼합의 제도적 유산을 고려할 때 (김진욱, 2009), 다양한 민간영역을 고려하지 않고는 한국의 복지혼합구조와 사회복지 공급의 규모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즉, 공공부문의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이 낮은 한국의 경우, 다양한 자발적 민간급여에 의해 상당한 수준의 복지 욕구가 충족되고 있음은 분명하므로, 이러한 자발적 영역의 민간급여자원 및 지출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OECD의 기준에 따라 총사회복지 지출을 추계하는 일련의 연구들은 고용주의 법정급여,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의 법정 민간 부문 외에, 민간모금, 종교단체복지사업, 기업의 사회복지활동, 특정집단의 공제회, 민간의료비 등을 자발적 민간부문으로 규정하여 매년 그 지출규모를 추계하고 있다(고경환 외, 2003; 2009a).

52) 영국을 제외한 유럽에서, 제3섹터 및 영리영역의 확대가 공공부문의 사회적 급여를 축소하거나 복지재정의 감소를 야기하지는 않음. 오히려, 수혜대상의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의 범위가 확장되었고, 공공부문의 개입(commitment)도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장기요양에 대한 보편적 원칙의 도입이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적 책임성이 확대되어 더 많은 계층을 포괄하게 되었고, 나아가 보편주의적 사회보험 프로그램으로까지 발전됨 (Ascoli and Ranci, 2002).

〈표 5-1〉 고경환 외(2009b)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발적민간복지지출 범위

	구분	재원	프로그램
기업	고용연계급여	고용주부담금	가족수당, 학비지원, 주택자금지원 등
	사회공헌활동	기업기부금	사회복지목적성 기부금
제3 섹터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생활시설, 이용시설등
	종교기관	민간기부금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참여
	모금기관	민간기부금	법정모금기관의 모금, 민간모금기관의 모금
	사회적 기업	후원금	사회적기업의 후원금
시장	사보험보험금	개인기여금	자동차책임보험금 중 대인치료비

자료: 고경환 외, 2009b: 40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관련 지출에 관심을 가지고 그 규모를 추계하는 또 하나의 실증 연구 흐름은 복지혼합(welfare mix)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앞의 OECD 사회복지지출 연구들이 비교적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자발적 민간부문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면, 복지혼합론에 근거한 연구들은 사회복지공급의 총량을 좀 더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각 영역간의 혼합 구성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복지혼합론에 근거하여 가장 포괄적으로 지출규모를 추계하고 각 영역간의 혼합구성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 김진욱(2005)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2000년도를 기준으로 복지혼합의 각 영역인 국가, 기업, 시장, 비영리, 가족의 복지공급 규모를 다음과 같이 추계하였다. 첫째,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직접지출과 각종 소득공제, 세액감면, 비과세 조치들을 통한 간접적 재정지원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기업복지는 법정퇴직금, 유급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등의 법정기업복지비와 기타 자발적 기업복지비로 구분하였다. 셋째, 시장부문의 사회복지지출은 가계 및 민영보험에서 지출하는 민간보건의료비, 사망 및 상해발생시 지급하는 생명보험급여, 가계의 보육비 지출로 구분하였다. 넷째, 비영리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법정취약계층 요금감면, 종교 및 비영리단체의 복지지출, 비영리조직의 보건의료비 지출 등으로 파악하였다. 다섯째, 가족의 복지공급은 가구간 사적 소득이전과 보살핌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직접 추정함으로써 파악하였다. 이상 복지혼합의 다섯 하위 영역의 총 사회복지 지출을 합산한 2000년도 한국의 총 복지공급량은 128조 7940억원인 것으로 추정되었고, 가족·비영리부문·자발적 기업복지·시장 등의 순수민간부문을 포함시킬 경우 한국의 총 사회복지비 지출규모는 당해연도 국내총생산의 1/4 수준에 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민간부문의 자발적 급여를 포함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실증연구는 사회복지자원총량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김교성 외, 2006). 이 연구는 기존의 사회복지총량 파악을 위한 방법을 사회복지자원의 공급자에 주목하는 것(공급자중심 접근법)과 공급자와 수혜자 간의 연결매체를 통해 측정하는 것(연결매체중심 접근법)으로 구분하고, 양자를 절충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자원 총량을 추계하였다. 즉, 자원총량을 추계하기 위한 제도 영역을 정부, 기업, 시장, 제3섹터, 공동체 5개 영역으로 구분한 후, 정부와 기업은 공급자중심 접근법으로, 시장과 제3섹터는 연결매체 접근법으로, 공동체는 양자를 혼합한 모형으로 추계한 것이다. 특히, 재원을 통하여 복지자원을 추정하기 힘든 시장과 제3섹터, 그리고 공동체의 일부 영역에 대하여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중재되어 이동되는 자원에 주목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자원총량조사에 포함된 각 영역별 추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조세지출, 그리고 지방정부의 자체 편성 예산에 의한 지출이 포함된다. 기업 부문은 법정, 비법정 기업복지와 기업의 사회공헌, 그리고 각종 교통통신 등 요금에 대한 감면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시장영역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장성 보험금과 휴면 예금 및 보험을 포함하였다. 제3섹터의 경우에는 종교기관, 복지시설, 시민단체의 복지목적 지출과 함께, 각종 모금기관 및 사회복지협의체의 모금액을 함께 추계하였다. 끝으로 공동체 부문은 공제회의 공제급여, 사적이전, 그리고 자원봉사의 현금가치 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다섯 영역의 사회복지자원총량에 대한 조사 결과, 국가, 시장, 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김진욱(2005)의 결과와는 상이하게 공동체 부문의 복지지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논의한 사회복지지출 추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공공부문과 기업 부문에 대한 추계 방법은 OECD 기준에 의한 총사회복지지출추계(고경환 외, 2009)와 김진욱(2005)의 복지혼합지출구조, 그리고 김교성 외(2006)의 사회복지자원 총량조사의 추계방법이 거의 동일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영역들에 있어서는 김진욱(2005)과 김교성 외(2006)의 추계방법이 OECD의 추계방법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 제3섹터, 가족(공동체)의 어떤 항목들을 사회복지지출 추계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OECD 기준은 사회적 목적과 재분배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사회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보험 보험금은 개별적인 시장가격에 기초한 계약이라고 보고 제외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와 사적이전 등도 사회복지지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추계방법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김진욱(2005)

과 김교성 외(2006)는 공통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장성 보험금 지출을 시장영역의 복지지출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적이전의 지출 역시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공동체)의 복지공급 기능으로 간주하여 사회복지지출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김진욱(2005)이 포함시키고 있는 가계의 의료비 지출, 보육비 지출, 보살핌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 김교성 외(2006)가 포함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 등의 항목을 민간의 사회복지지출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표 5-2〉 사회복지지출 총량 추계에 관한 선행연구 비교

대상연도	고경환 외 (2003)			김진욱 (2005)			김교성 외 (2006)		
	영역	십억	GDP비율	영역	십억	GDP비율	영역	십억	GDP비율
세부 영역별	공공부문	33,774	7.1	국가	31,863	6.1	국가	52,956	6.8
	법정민간	14,221	3.0	기업	28,855	5.5	기업	44,386	5.7
	자발민간	10,232	2.2	시장	18,034	3.5	시장	54,969	7.1
				제3섹터	1,815	0.3	제3섹터	3,036	0.4
				가족	48,227	9.2	공동체	8,033	1.0
공사부문	공공부문	33,774	7.1	공공부문	31,863	6.1	공공부문	52,956	6.8
	민간부문	24,453	5.2	민간부문	96,931	18.6	민간부문	95,249	12.2
합계	총량	58,227	12.3	총량	128,794	24.7	총량	148,205	19.0

주: 고경환 외(2003)의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에는 시장과 제3섹터, 공동체의 지출 중 일부가 포함됨
 자료: 김진욱, 2007: 188에서 재인용

2. 자발적 민간급여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

OECD는 (총)사회복지지출의 추계에 포함하고 있는 자발적 민간급여의 범위는 너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한국의 시장 및 가족(공동체)의 많은 복지제공 기능이 누락되어 있다. 이는 OECD가 민간의 자발적 급여 중 사회적 급여만을 추계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회적 급여라는 것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로 공식화된 조직이 지출하는 재분배적, 무상거래적 성격을 가진 급여를 말한다(고경환 외, 2009a). 즉 OECD의 순사회복지지출에서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한 사회적 급여의 범위(Adema, 1999)는 급여의 주체나 법정급여 여부를 제외하고, ‘사회적 목적의 급여인가?’라는 점과 ‘시장가격에 기초한 개별적 위험에 대한 개별적 계약인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목적’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OECD 사회복지지출의 9가지 기능적 분류(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ALMP, 실업, 주거, 기타)에 해당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로 이해될 수 있으며, ‘시장가격에 의한 개별적 계약’이라 함은 재분배나 무상거래의 원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OECD는 사회적 목적으로 갖더라도 개별적 계약이라면 자발적 민간급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고경환 외, 2009a).

그렇다면, 자발적 민간급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민간 사보험의 보험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가구간 사적이전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민간의 사보험 보험금은 분명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장성 보험금은 사망, 상해, 질병, 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OECD 사회복지지출의 기능적 분류에서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한다. Adema(2001) 역시 생명보험은 불의의 사망·상해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위험보장을 가진 생명보험 보험금과 저축의 수단으로서의 보험금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의 제약이 있는 국가가 많아 추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세부적인 보험금 지급 사항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 항목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아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가입과 보험료는 개별적인 위험을 기초로 고려되지만, 보장성 보험은 기본적으로 위험 미발생 개인으로부터 위험이 발생한 개인으로의 재분배를 전제로 한다. 특히, 보장성 보험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세법상의 기준으로 보면 재원의 구성 역시 민간과 공공이 혼합된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개인연금은 지금까지의 민간급여의 범위 논의에서 제외되었지만, 그 성격으로 볼 때 자발적 민간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연금은 노령급여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영역의 급여이다. 특히,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부족한 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성격을 지니며,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개인연금 납입금을 일정 한도까지 전액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 재원구조에 정부의 조세지출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물론, 개인연금은 개별적인 계약에 근거함으로써 개인 간 재분배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은 가입자간 재분배 효과가 전혀 없는 특수직역연금도 마찬가지이다. 특수직역연금이 공공에 의한 운영과 국가 및 고용주의 기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연금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지만 국가의 감독과 규제 하에 있으며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보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성격을 가진다. 무엇보다, OECD가 최근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Adema and Ladaique, 2009), 미국에서 국가의 세제혜택이 지원되는 개인연금도 자발적 민간지출에 포함되는 사례에 비추어 보면, 한국에서 개인연금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셋째, 공동체 영역, 특히 가구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이전을 민간의 자발적 복지급여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사적이전은 한 가구에서 다른 가구로 소득이 이전되므로 비공식적이지만 분명한 개인(가구)간의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노인가구의 사적이전 소득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한국의 경우 공적이전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많은 실증연구들은 노후소득원에서 차지하는 사적이전의 비중이 공적이전 보다 더 크고, 빈곤감소 효과 역시 공적이전에 비하여 사적이전이 더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왔다(홍경준, 2002; 석재은·임정기, 2007; 손병돈, 2009; 김진욱, 2010). 즉 사적이전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는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구조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구간 사적이전을 사회적 목적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는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OECD의 기준에 의한 사회적 급여란 ‘공식적인 조직’을 통하여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가구간의 사적이전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유형의 하나가 바로 자녀양육비의 형태로 제공되는 사적이전이다. 즉,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어느 한 쪽이 자녀양육권을 갖게 되면 다른 한쪽은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 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원이 자녀양육비 지급을 명령함으로써 강제화하면 이것은 법정급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나아가, 자녀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자녀양육비를 징수, 지급하는 경우 사회적 목적과 재분배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민간급여의 형태로 사회복지지출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며, 나아가 자발적 성격이 아닌 법정민간급여로 간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표 5-3>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복지지출 추계에서 민간부문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고경환 외(2009a)가 제시한 사회복지자원 분석모형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민간 사회복지자원의 영역과 그 구성항목들을 보여주고 있으며(음영부분), 민간 급여의 어떠한 항목들이 선행연구의 추계에 포함되었는지를 함께 제시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OECD 자발적 민간지출로 포함되지 않았던 시장영역의 민간급여(사보험 보험금, 개인연금)와 이혼양육비를 중심으로 한 사적이전을 다루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복지지출 추계에 포함되었던 제3섹터의 기부금과 공동체의 공제회 영역도 추계의 개선을 위해 수정 및 추가할 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다만, 김진욱(2005)과 김교성 외(2006)가 민간의 사회복지자원으로 포함시킬 것을 각각 주장한 보살핌 노동 및 자원봉사 경제적 가치는 직접적인 지출이 아닌 노동에 대한 가치추계 부문으로, 본 연구의 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발적 민간급여의 범위와 그 성격을 요약하면 <표 5-4>와 같다.

〈표 5-3〉 민간 사회복지지출의 영역과 구성 항목

영역	구분		세부항목	OECD 분류 ¹	김진욱 (2005) ²	김교성 (2006) ²
기업	기업 복지	법정	법정퇴직금, 사회보험 고용주 기여,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	○	○
		자발적	기업의 고용연계급여, 사내복지비	○	○	○
	사회공헌		사회복지목적성 기부금	○	×	○
	민간복지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통신 요금 감면	◎	○	○
시장	사보험 보험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만기환급 및 해약을 제외한 보장성 보험금	△	○	○
	개인연금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연금급여	×	×	×
제3 섹터	지출	종교기관	종교기관의 사회복지목적성 지출	○	○	○
		복지시설	생활, 이용, 미신고시설의 총지출	○	○	○
		시민단체	시민단체의 사회복지목적성 지출	○	○	○
	모금 배분	모금기관	법정 및 민간모금기관의 모금배분	○	×	○
		협회·협의체	사회복지관련 협회·협의체 자체 모금배분	○	×	○
자원봉사		자원봉사의 현금가치	×	×	○	
공동 체	공제급여		공제회의 공제급여	○	×	○
	사적 이전	법정	이혼시 자녀양육비	×	×	×
		비법정	노인가구의 현금이전	×	○	○
	보살핌 노동		가족에 대한 보살핌 노동의 경제적 가치	×	○	×

주: 1. ◎ 법정민간지출, ○ 자발적 민간지출, × 순수민간급여로 간주하여 미포함, △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포함.

2. ○ 추계에 포함, × 미포함.

단, 음영부분은 본 연구에서 자발적 민간부분으로의 포함 여부를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영역임.

〈표 5-4〉 자발적 민간급여의 성격

		제공(운영) 주체	사회적 목적	재분배적 성격	개별적 시장계약	공식/ 비공식	세제혜택
사보험 보험금		시장	○	○	○	공식	○
개인연금		시장	○	×	○	공식	○
민간모금		제3섹터	○	○	×	공식	○
공제회		공동체	○	△	△	공식	○
사적 이전	자녀양육비	공동체(가족)	○	○	×	공식	△
	현금이전(노인)	공동체(가족)	○	○	×	비공식	△

3. 자발적 민간급여 자원의 파악을 위한 논의

앞에서 논의했듯이, OECD 기준 사회복지지출 추계에 자발적 민간급여의 영역과 항목은 지속적으로 확대·보완되어 왔다. 그러나, 추계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통계생산에 포함된 영역이더라도 실제 추계에서는 빠져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추계를 끊임없이 보완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추계에 제외되어 있는 자발적 민간급여 자원을 현재 통계생산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통계생산을 보완하는 부분과, 현재 OECD 추계에 아예 포함되지 않은 영역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가. 현재의 OECD 추계에 포함된 자발적 민간급여 영역의 보완

기존의 OECD 사회복지지출 추계에서 자발적 민간부문에 속한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 비영리부문(제3섹터)의 민간모금이다. 자발적 민간부문의 지출추계에 포함된 모금 기관과 사업은 법정모금기관, 민간모금기관, 협회·협의체 등 사회복지 성격을 가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민간모금의 규모를 추계한 고경환 외(2009b)의 연구에 포함된 모금기관들은 22곳⁵³⁾이다.

이들 민간모금기관과 협회·협의체는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중앙정부에 등록된 대표적인 비영리민간단체로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정, 조사되었고, 북한 및 해외에 지원금을 보내는 기관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경환 외, 2009b). 본 연구는 기존의 추계에 포함되었던 민간 모금기관과 협회·협의체 외에 기획재정부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 중, 학술, 사회운동, 사회교육, 특수목적 단체 및 협회 등 제외한 사회복지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추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 중에서 기업의 공익재단과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법인간 추계과정에서 중복부분은 제외하고⁵⁴⁾, 북한과 해외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기관 역시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할 필

53) 법정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간모금기관인 한국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아름다운재단, 굿네이버스, 제대한 구세군유지재단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아이들과 미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심장재단, 한국여성재단, 한국라이온스클럽, 위스타트운동본부 등 14곳, 협회 및 협의체인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대한결핵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시설협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 7곳임.

54) 고경환 외(2009b)는 기업 및 기업재단의 사회공헌활동과 사회복지시설의 자발적 민간지원금의 이중계산

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향후 자발적 민간부문의 민간모금 추계에 추가 포함 되어야 할 곳은 일반 사단법인 12곳, 사단법인 형태의 협회 및 협의체 10곳, 재단법인 13곳 등 총 35기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5-5>와 같다.

<표 5-5> 자발적 민간급여 중 민간모금 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모금기관 및 사업내용

기관유형	모금기관명	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내용
사단 법인	1) 장아람재단	저소득 장애아동 지원 외
	2) 지구촌공생회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 외
	3) 사랑의친구들	결식아동 지원사업 외
	4) 아드라코리아	무료급식 등 구호프로그램 외
	5) 정해복지	장애인복지 및 청소년복지사업 외
	6) 푸른마을	지적장애인 지원사업 외
	7) 해냄복지회	장애인 자립생활서비스 지원 및 직업재활사업
	8)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국내 저소득 아동지원, 긴급구호 외
	9) 이웃을돕는사람들	방과후교실, 노인급식 외
	10) 한국기톨릭레드리본	HIV감염/에이즈 환자 대상 보건복지사업
	11) 참길복지	한센인 지원사업
	12) 돕는사람들IDF	소년소녀가장지원 외
협회 · 협의체 (사단 법인)	13) 한빛복지협회	제가 한센병 환자 및 2세를 위한 복지사업 외
	14) 한국지역복지봉사회	결연후원사업 외
	15)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결연후원사업
	16)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직업재활, 의료비 지원 외
	17) 온누리약사복지회	결식아동, 복지시설 지원 외
	18) 루프스를이기는사람들협회	저소득 루프스환자에 대한 생활비 등 지원
	19) 부스리기사랑나눔회	아동결연후원사업 외
	20) 한국혈액암협회	저소득 가정에 대한 치료비 지원, 결연후원사업
	21)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저소득 소아당뇨인 지원사업
	22)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의료비 지원 및 재활사업 외
재단 법인	23) 동작복지재단	동작구민 대상, 저소득층 지원 사업 외
	24) 서울복지재단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 외
	25) 권정순재단-동해금속	저소득층 지원사업 외
	26) 행복한재단	희귀, 난치병 환자에 대한 복지사업 외
	27) 한국소아암재단	생계비 지원, 치료비 지원사업 외
	28) 한국부인암재단	저소득 여성에 대한 부인암 수술비 지원 외
	29) 한국유방건강재단	저소득 여성 수술 및 치료비 지원
	30) 우천복지재단	노인복지 및 후원사업
	31) 사랑과행복나눔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 외
	32) 사회투자지원재단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지원 외
	33) 평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저소득가정 지원사업 외
	34) 정인옥복지재단	장애인 및 청소년지원사업 외
	35) 스마일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을 고려함. 이에 대한 자세한 추계방법은 고경환 외(2009b)를 참조

이들 추가기관의 조사는 우리사회의 복지총량을 분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존 추계영역들과의 이중계산의 공제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별 접근이 모색된 후 조사확대가 가능하리라 본다.

공제회는 특정한 직역집단이 상호부조의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공제회는 기본적으로 직역집단이므로 직업복지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지만,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업복지와 구별되고, 또 개별적 시장계약의 형태로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시장과 유사하나 가입자의 범위가 특정집단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상이하다. 따라서, 공제회는 그 성격상 기업부문이나 시장영역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과 일정부문 이윤을 추구하여 가입자에게 배당한다는 면에서 제3섹터나 비영리부분의 특성과도 상이하다. 결국, 공제회의 급여는 공동체 영역을 제공주체로 보아야 한다.

앞의 <표 5-4>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공제회의 급여는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며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급여가 제공된다. 그러나 공제회 급여가 재분배적 성격을 가졌는지 아니면 개별적인 시장계약에 근거하는 것인지는 다양한 직역집단 공제회마다, 또 하나의 공제회 내에서의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원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하여 상호부조의 성격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재분배적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저축의 형태로 적립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퇴직급여일지라도 사회적 성격을 가지며, 또 많은 경우 공제회 불입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거나 급여수령시 이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므로, 자발적 민간급여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의 추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제회는 모두 14곳 이다.

〈표 5-6〉 향후 자발적 민간급여 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공제회 목록

명칭	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급여 내용
1) 군인공제회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 노령퇴직급여
2)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원 및 직원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 노령퇴직급여
3) 대한소방공제회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 노령퇴직급여
4) 경찰공제회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 노령퇴직급여
5) 교정공제회	교정공무원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 노령퇴직급여
6)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사망(유족), 상해/재해, 노령퇴직급여
7) 전국교수공제회	대학교수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 노령퇴직급여
8)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직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급여
9) POBA행정공제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 노령퇴직급여
10)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에 대한 상호부조, 복지증진, 후생생활안정 급여
11)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경기도 사회복지직 종사자에 대한 상호부조, 후생복지관련 급여
12) 대한의사복지공제회	개원의와 전공의의 생활안정 관련 급여
13) 대한민국헌정회	헌정회 회원(국회의원 역임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관련 급여
14)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및 예방

나. 새롭게 포함해야 할 자발적 민간급여 영역

1) 사보험의 보장성 보험금

기존의 OECD 기준 자발적 민간급여의 범위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첫 번째 급여의 형태는 바로 민간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장성 보험금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저축이나 해약을 통한 지급규모를 따로 구분할 수 있다면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불의의 사망, 상해, 재해,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적 성격을 지닌 급여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이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발적 민간급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한국의 세법은 보장성 보험료의 납입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서 재원의 구성으로 볼 때에도 순수 민간 영역으로 보는 곤란한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은 개별적 위험에 따른 개별적 계약이라는 시장가격에 기초한 상품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은 위험미발생 개인으로부터 위험이 발생한 개인으로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민간보험의 보험금 지급액 가운데, 자발적 민간부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사망, 상해, 질병에 해당하는 보험금, 손해보험의 화재, 자동차, 보중,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등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금 중 대인치료비는 이미 OECD 기준 총사회복지지출의 자발적 민간부문(민간의료비)에 포함되어 있다.

〈표 5-7〉 세계의 생명보험 시장 (2009년)

순위	국명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GDP (%)	국민1인당 수입보험료(USD)
		백만(USD)	점유율		
1	미국	492,345	21.12%	3.5	1602.6
2	일본	399,100	17.12%	7.8	3138.7
3	영국	217,681	9.34%	10	3527.6
4	프랑스	194,077	8.32%	7.2	2979.8
5	이탈리아	115,290	4.94%	5.3	1878.3
6	독일	111,775	4.79%	3.3	71.7
7	중국	109,175	4.68%	2.3	81.1
8	한국	57,436	2.46%	6.5	1180.6
9	인도	57,144	2.45%	4.6	47.7
10	대만	52,204	2.24%	13.8	2257.3

자료: 생명보험협회, FACT BOOK 2010, (<http://www.klia.or.kr>)

〈표 5-8〉 한국의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규모

(단위: 백만원)

년도	사망	상해
1997	774,903	51,023
2000	916,057	119,718
2005	1,317,386	128,702
2007	1,508,125	107,194
2009	1,790,206	102,631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사보험의 보험금이 자발적 민간급여에 포함될 경우 자발적 민간급여의 지출규모는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나 사회보장제도는 저발달되었던 1980년대 한국의 생명보험시장은 크게 성장하여, 이미 1990년에는 국내총생산 대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세계 9위를 차지하였다(Kim, 2004). <표 5-7>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생명보험시장은 2009년 연간 수입보험료가 57억불을 상회하여, 세계 8위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망과 상해로 인한 생명보험 지급규모는 점점 증가하여, 2009년에는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규모가 1조 7900억원에 달하였고, 상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도 1,026억원에 이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장성 보험금 지급규모는 자발적 민간부문의 추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2) 개인연금

주요 복지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논의함에 있어서도 공사역할분담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공적연금재정의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공적연금의 비중을 줄이는 한편 다양한 직역연계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하여 다층보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이며 주요 국제기구의 권고안이기도 하다. OECD의 경우 기초연금 - 소득비례공적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진 다층구조를 권고하고 있으며, 세계은행도 공적연금 - 강제적 퇴직(개인)연금 - 임의 퇴직(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진 다층체계를, ILO 역시 최저소득 - 기초부문 - 추가소득비례 부문(강제) - 추가소득비례 부문(임의)으로 이루어진 다층노후소득보장안을 제시하고 있다(류건식 외, 2009). 이러한 다층노후소득보장구조를 가진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금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임의가입 형태의 개인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 독일, 미국, 영국 등의 국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임의적인 사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다(류건식 외, 2009).

결국, 개인연금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임의적 가입이라 할지라도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바로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각국이 임의가입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급속한 자금 이탈을 방지하고 제도금융권의 금융시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1994년 최초로 세제적격 개인연금이 도입되었고, 2000년부터는 신개인연금으로 대체되었다. 1994년에서 2000년까지 판매된 구개인연금은 연간 72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이 소득공제되었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되었다. 2000년부터 판매된 신개인연금은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신, 소득공제한도를 연간 3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한도가 상향조정된다. 이러한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적립금의 운용에 대한 국가의 규제,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인해 순수한 형태의 민간급여로 간주될 수는 없다.

실제로, 이러한 세제혜택에 힘입어 개인연금의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표 5-9>에서 보듯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자산운용사 등 세제적격 개인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권의 개인연금 적립규모는 1994년 2조 5천억원에서 2000년 19조 6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33조 8천억원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었다. 2008년 말 현재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43조 8천억원에 달하며, 세계 비적격 연금과

지 합치면 약 98조원의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적립금 규모는 국민연금 적립금의 각각 18.6%, 41.6%에 해당하는 것이다. 개인연금의 지급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으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성숙과 개인연금 적립금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개인연금 지급액을 자발적 민간부문으로 간주하여 그 지출규모를 추계하되, 일단 세제적 개인연금의 지급규모를 파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표 5-9〉 개인연금 적립금 현황 (1994 - 2008)

(단위: 억원)

연도	세제적연금					세제비적격 연금	개인연금 전체	국민연금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자산운용	소계			
1994	6,336	2,503	10,967	5,675	25,481	-	25,481	114,952
2000	92,660	27,785	65,282	10,198	195,925	-	195,925	615,876
2003	140,501	42,387	92,382	10,706	285,977	343,767	629,744	1,166,945
2005	169,428	50,907	106,044	11,817	338,196	443,473	781,669	1,639,234
2007	212,525	62,966	109,770	18,433	403,695	531,389	935,084	2,196,234
2008	233,103	70,050	110,240	24,799	438,191	542,414	980,605	2,359,518

자료: 이순재·김현수, 2009: 259에서 재구성.

3) 가구간 사적이전

공동체 영역에서 자발적 민간급여로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하여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형태가 바로 가구 간에 이루어지는 정기적 사적이전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적이전은 비공식적이지만 분명한 개인(가구)간의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노인가구의 경우 공적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사회적 급여의 형태로 볼 여지도 존재한다. 실제 2006년과 2007년의 가계조사 원자료로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사적이전의 비중은 거의 40%에 달하여 공적이전 보다 그 의존도가 높았고, 특히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그 비중은 50%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5-10 참조). 따라서,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이 자발적 민간급여로 간주되어 추계에 포함된다면, 자발적 민간급여의 총량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인가구에 대한 사적이전을 자발적 민간급여로 파악하는 것에 문제의 소지 역시 존재한다. OECD의 기준에 의한 사회적 급여란 ‘공식적인 조직’을 통하여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구 간의 사적이전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표 5-10〉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구성 (1, 2인가구)

(단위: 원, %)

	2006		2007	
	노인부부 및 단독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 및 단독	노인단독가구
근로소득	78,701 (10.6)	61,821 (11.0)	82,141 (11.0)	56,950 (10.0)
사업소득	48,181 (6.5)	33,965 (6.0)	57,646 (7.7)	37,747 (6.6)
자산소득	93,694 (12.6)	49,058 (8.7)	95,858 (12.8)	49,060 (8.6)
사적이전소득	291,811 (39.4)	260,893 (46.2)	287,493 (38.5)	275,122 (48.2)
공적이전소득	228,657 (30.9)	158,662 (28.1)	222,917 (29.2)	151,055 (26.6)
경상소득합계	741,047 (100)	564,397 (100)	746,055 (100)	570,934 (100)
전체가구대비	9.4	5.9	10.5	6.6

자료: 통계청, 2006~2007년 가계조사 원자료.
김진욱, 2008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이 자발적 민간급여에 포함될 수 있는지 논쟁의 대상이 된다면, 자녀양육비의 형태로 제공되는 사적이전의 경우에는 분명한 민간급여의 범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협의이혼시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강제되었고, 또 합의된 바에 따라 양육비를 집행할 수 있는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이 의무화되었다. 또한 가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양육비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직접지급명령을 하거나 양육비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여성가족부, 2011). 이렇듯,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에 양육비 관련 사항을 합의하고, 사적이전의 형태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민간급여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합의된 대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공식적인 기관 등을 통하여 양육비 집행을 강제하는 경우, 자발적 민간급여가 아닌 법정 민간급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발생된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혼시 합의된 대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양육비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⁵⁵⁾. 그러

55) 2007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민법 836조의2가 신설되어, 협의이혼시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2009년의 개정에 의하여 부모에 의하여 합의된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양육비 이행강제를 위한 집행권원을 마련하였으며, 민법 제837조를 개정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가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종전에 있었던 보전처분 등의 이행강제방법에 추가하여 양육비채무자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로 하여금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근로자가 아닌 경우를 고려하여 담보제공명령제도를 신설하였음. 나아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

나, 양육비의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강제집행절차의 복잡함 등으로 인하여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아동양육비 이행확보 현황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하여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서비스를 받은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양육비채무자로부터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56%에 불과하였고, 35%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경우(41.5%)와 1회 총액으로 받은 경우(5.6%)를 제외한 59.2%의 한부모가족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제때에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속에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양육비 강제이행제도의 필요성과 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적기관의 설립이나 지정이 검토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1).

반면, OECD 국가의 경우 자녀양육을 위한 양육비의 이행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여성가족부, 2011). 그 내용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양육비 이행강제를 보조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선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영국의 경우, 1993년 아동지원국(CSA)에 의하여 아동양육이 지원되어 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2006년 아동양육확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양육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2008년부터 양육비 산정과 집행에 있어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자녀의 양육비를 산정하여 이를 강제하고 있으며, 양육비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징수하거나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양육비를 선급한 후 구상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들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양육비의 이행과 관련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양육비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영국 부모 중 약 52%가 양육이행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85%가 양육비 지급액의 전체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이행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기 시작하였으나, 자녀양육비의 산정에 관한 법적 조치가 확고하지 않아 연방차원에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각 주로 하여금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급여추징에 의한 양육비 이행강제가 다른 경우에 비하여 매우 높아, 법원의 명령이 양육비의 이행강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녀양육이행국(OCSE)은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결국, 자녀양육비의 형태로 제공되는 사적이전에 대해서는 민간급여의 형태로 간주되

하도록 하는 제도 등도 신설함(여성가족부, 2011).

어 사회복지지출 추계에 반영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아직 자녀양육비 이행을 집행하는 공적 기관이 설립되거나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추후 정책의 집행 상황을 살펴보면서 자녀양육비 추계방법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녀양육비 지급의 형태와 유형에 따라 자발적 민간부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적기관을 통한 강제 이행에 해당되는 경우 법정민간급여로 볼 것인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표 5-1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자발적 민간지출 각 영역별로 추계 내용을 요약하고, 추계의 필요성과 추계 가능성, 그리고 추계 방법에 대한 제언을 첨부하고 있다. 이미 자발적 민간지출의 영역에 포함된 민간모금과 공제회의 지출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직접 조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추계가 가능할 것이다. 사보험 보험금과 개인연금은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와 함께 해당 지출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추계될 수 있을 곳이다. 사적이전의 경우, 자녀양육비는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추계되어야 하지만, 모집단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추계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노인가구에 대한 사적이전은 가계동향자료 등 미사자료를 활용한 간접추계에 큰 무리는 없으나, 자발적 민간지출에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5-11> 향후 보완되어야 할 자발적 민간복지지출 추계의 범위와 가능성

구분	추계 영역	추계 내용	추계 필요성	추계 가능성	추계방법 및 자료원	
기추계 영역	민간모금	기획재정부 공익성 기부금 모금단체 35곳	필수적	양호	해당 기관에 대한 직접 (설문)조사	
	공제회	주요 특수지역 및 직능집단 별 공제회의 사회복지관련 지출	필수적	양호	해당 기관에 대한 직접 (설문)조사	
추계 추가 영역	사보험 보험금	민간보험의 보장성 보험 지출	필수적	양호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개인연금	세제적격 개인연금 지출	필수적	양호	해당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	
	사적이전	자녀양육비	이혼 등에 따른 자녀양육비 지급액	필수적	어려움	직접 설문조사
		현금이전(노인)	노인가구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검토 요망	양호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간접추계

4. 소결: 자발적 민간급여 자원의 파악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자발적 민간부문의 이론적 배경, 개념과 범위, 그리고 지출추계에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민간자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OECD가 자발적 민간급여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노력은 복지혼합론 및 공시역할분담론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한 사회의 복지노력은 공공부문 뿐 아니라 이를 대체·보완하는 다양한 민간영역의 활동이 포함될 때 사회복지지출의 전체적인 규모 뿐 아니라 공사의 혼합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더 적절히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자발적 민간부문의 복지지출을 추계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OECD 기준의 자발적 민간급여의 범위는 너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한국의 시장 및 공동체 부문의 많은 복지제공 기능이 누락되어 있다. OECD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로 공식화된 조직이 지출하는 재분배적, 무상거래적 성격을 가진 급여만을 이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자발적 민간부문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민간의 사보험, 개인연금, 사적이전 등은 한국의 복지혼합 구조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또 그 성격 역시 자발적 민간부문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향후의 추계에서는 반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체적으로 시장영역에서 사보험의 보장성 보험금과 개인연금 지급액은 자발적 민간부문의 지출 추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민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장성 보험금은 사망, 상해, 질병, 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기본적으로 위험 미발생 개인으로부터 위험이 발생한 개인으로의 재분배를 전제로 한다. 개인연금의 경우에도 노령급여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영역의 급여이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부족한 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회적 목적을 지닌 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보장성 보험과 개인연금 납입액의 일정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어, 재원의 구성 역시 민간과 공공이 혼합된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민간보험의 보장성 보험금과 급격히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개인연금을 지출추계에 포함하면 자발적 민간급여의 규모는 매우 커지게 될 것이며 한국의 복지혼합 구조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은 더 작아지게 될 것이다.

셋째, 가구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이전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이전과 이혼시 합의한 아동양육비를 사적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노인 가구에 대한 사적이전은 분명한 개인(가구)간의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고, 공적연

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한국의 경우 공적이전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공식적인 조직’을 통하여 급여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발적 민간급여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자녀양육비의 형태로 제공되는 사적이전의 경우, 합의를 이행하여 사적이전을 제공하면 자발적 민간급여로, 자녀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자녀양육비를 징수 및 지급하는 경우 법정민간급여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최근 자녀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여 공적인 자녀양육비 이행기관 설립을 검토하는 상황이므로,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이러한 사적이전의 형태는 민간급여로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발적 민간급여의 범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공제회 및 민간모금기관의 경우,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직역집단별로 결성되어 있는 공제회,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수많은 비영리법인들을 모두 파악하여 사회복지목적에 해당하는 지출을 가려내는 일은 매우 어렵고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민간복지자원을 계속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발적 민간지출 추계에 포함된 범위 외에, 14곳의 공제회와 35곳의 민간모금기관을 발굴하여 추계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민간모금기관의 재정이 사회복지시설로 배분되는 경우 재정의 이중계산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자원흐름을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두 기관의 자원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수집될 때 민간모금기관을 추가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모든 민간사회복지자원을 아우르는 한국형 복지계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 사회복지지출 추계 기준은 기본적으로 국제비교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독특한 복지혼합 상황을 반영하기는 힘들다. 예컨대, 한국의 복지혼합구조에서 차지하는 시장과 가족의 비중이 매우 크지만, 지금까지의 OECD 사회복지비 지출에서는 이러한 영역의 지출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양한 민간자원을 파악하여 공공과 민간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인 복지자원모형이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이 체계에서 OECD가 요구하는 통계는 얼마든 그 기준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형 통합복지계정체계의 구축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민간자원 외에도 자원봉사활동과 보살핌노동 대한 현금가치, 노인가구에 대한 사적이전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밖에도 다양한 민간급여와 활동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제2절 근로무능력관련 급여의 국제비교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 가능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주요한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삼고 있다. 특히 근로가능인구의 상병 및 장애급여 의존을 줄이기 위해 OECD는 각국의 상병 및 장애급여 정책과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출간하고 있다⁵⁶⁾. 장애 자체가 다차원적이고 다내미한 현상이기 때문에 장애에 관한 정의 및 측정방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 어느 정의가 옳다고 할 수도 없다. 예를 들면 어떤 국가에서는 조기퇴직연금체계에 서 퇴직 후 노령연금수당을 받기 전까지 근로무능력을 이유로 장애 수당을 받기도 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공공부조에서 장애인에게 특별히 제공하는 수당을 구분하여 장애수당으로 포함하기도 한다. 따라서 근로무능력관련 급여는 각국의 제도 설계와 추계방법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비교를 통해 지난 20년간 매우 낮은 지출 성장을 보여준⁵⁷⁾ 우리나라의 근로무능력관련 급여의 실태와 선진국의 지출 수준과 제도 설계를 고려한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애관련 소득보장체계

2008년말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24만여명으로 인구의 4.5%에 해당한다. 이들 중 일부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23.2%), 장애연금 수급자는 72천명으로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3.3%, 장애수당 수급자는 433천명으로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19.9%이다. 이들 장애인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취약계층지원부문에 포함된다. 2009년 장애인분야의 예산은 2008년 대비 0.03% 증가한 약 7,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장애인차량LPG지원)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별로는 생활안정 지원사업(89.9%)과 재활 지원사업(5.8%), 그리고 국립 재활원(4.3%)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은 장애수당 및 저소득장애인지원사업의 예산감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장애인 선택적 복지, 장애

56) Sickness and Disability and Work 시리즈는 2006년 노르웨이와 폴란드, 스위스를, 2007년 호주, 룩셈부르크, 스페인과 영국을, 2008년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를, 2009년 스웨덴, 2010년 캐나다에 관한 보고서를 출간하였고 High level Forum on Sickness and Disability and Work를 4차례(2006년 오슬로, 2007년 룩셈부르크, 2008년 더블린, 2009년 스톡홀름) 개최함.

57)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기능구조별로 살펴본 결과 2009년 근로무능력관련 급여는 1990년 지출액의 9.1배로 기능구조별 지출 추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음.

인 일자리지원사업 등의 확대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의료재활 등 전 분야에서 예산이 증가하였다.

2008년과 2009년 장애인 예산의 특징은 소득보장적 측면보다 투자적 관점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이다. 즉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등 현금지원 예산은 삭감된 반면 욕구별 맞춤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구축 등 투자적 관점의 예산은 신규 배정되었다. 예산이 삭감된 현금지원으로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자녀학비지원과 등록진단비, 복지일자리지원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이 증가한 투자사업은 장애인보조기구 인프라 구축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장애인생산품인증지원 등이다.

근로무능력급여에 대한 지출은 대부분의 OECD 국가의 공공재원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효과적인 노동 공급을 감소시킴에 따라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근로무능력급여에 대한 공적 지출은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2% 수준이며,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4-5%까지 증가하였다. 장애급여에 의존하는 근로연령 인구는 평균 약 6%이며, 북유럽과 동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10~12%까지 증가하였다.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는 6조3천8백억원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6.5%에 해당하며⁵⁸⁾, 경상GDP 대비 0.6%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장애인 소득보장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전 급여와 추가비용 급여를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소득보장 전략을 조합하여 운용함으로써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보장체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기회의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 다층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1층은 기여에 기반을 둔 장애연금제도, 2층은 근로활동 연령대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기여식 장애연금제도의 수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장애연금(장애부조), 3층은 장애연금 또는 기초장애연금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장애인 중 자산조사 요건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차 안전망인 장애연금과 3차 안전망인 공공부조로 구축되어 있었으나 2010년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되어 다층적인 장애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가 2008년부터 2009년을 추계하고 있으며,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2007년 자료를 이용하는 바 이후의 자료는 2007년의 제도와 지출수준에 근거하

58)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근로무능력 급여는 유족영역(2,927십억원)과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4,281십억원), 실업영역(4,116십억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고 있음을 밝혀둔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소득보전 급여와 별도로 다양한 형태의 추가비용 급여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 선진 외국은 각국의 사회정책 전통에 따라 자산조사 급여 또는 비자산조사 급여 형태의 다양한 추가비용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영역 중 돌봄(care)과 활동성(mobility)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추가급여를 통해 보전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노르웨이,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기여식 장애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비용 급여는 조세가 아닌 연금 재원을 통해 장애연금의 부가급여로서 지급하고 있다.

〈표 5-12〉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소득보장체계

종류	유형	독일	영국	미국	호주	한국
소득보전급여	장애연금	○	○	○	×	○
	장애부조	○	○	○	○	× ¹⁾
	공공부조	○	○	○	○	○
추가비용급여	비자산조사급여	○	○	×	○	×
	자산조사급여	○	○	×	○	○

주: 1) 장애부조에 포함되는 기초장애연금은 2010년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2. SOCX를 통한 국제비교

일반적으로 복지지출에 대한 국제비교는 한국이 지출을 중심으로 한 복지선진국(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과 복지후진국(멕시코, 터키 등) 중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또는 에스핑안텔센의 복지레짐에 따른 북유럽복지국가와 잔여적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근로무능력관련 급여의 국제비교는 다층적인 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 영향과 자산조사급여형태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독일과 영국, 미국, 호주와 한국을 선택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복지지출에 관계없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 특징을 고려한 것이다. 호주는 공공부문에서만 근로무능력급여가 지출되고 있으며, 독일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현금까지만 제공되고 있다. 미국은 세가지 지출지표에서 현금급여만 지출되고, 영국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함께 민간사회복지지출의 현금급여 형태만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현금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생산된다.

〈표 5-13〉 OECD SOCX의 근로무능력관련 제도 비교

국가	지출지표	급여종류	제도 예시
호주	공공 사회복지지출	현금	장애지원연금, 배우자연금, 보호자지급금, 보호자수당, 상이군인장애연금, 장애이동보조지급금, 근로자상병급여, 상병수당,
		현물	장애인을 위한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HACC), 치료센터, 재활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법정민간 사회복지지출	현금	-
		현물	-
	자발적민간 사회복지지출	현금	-
		현물	-
미국	공공 사회복지지출	현금	장애연금, 산업재해연금의 근로자 보상, 유급상병휴가급여, 철도근로자 일시장애급여, 공공부문종사자 상병급여, 일시적인 장애급여
		현물	-
	법정민간 사회복지지출	현금	산업재해연금의 유급상병휴가급여, 기업주 상병휴가급여, 주(州) 일시장애급여
		현물	-
	자발적민간 사회복지지출	현금	장애연금, 유급상병휴가급여
		현물	-
영국	공공 사회복지지출	현금	피고용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장애급여, 전쟁연금급여, 중증장애인 연금급여, 돌봄과 장애수당, 장애연금의 소득보장, 중증장애인 돌봄수당, 범죄희생자 보상, 유급상병급여, 건강보험의 소득보장
		현물	일상생활보조(고용인정서비스, 지방정부의 개인사회서비스), 중증장애인 재활서비스, 푸드뱅크
	법정민간 사회복지지출	현금	고용주 법정 급여(장애, 상병)
		현물	-
	자발적민간 사회복지지출	현금	직업재해보상보험의 유급상병휴가급여, 고용보험의 피고용인계속고용지원금,
		현물	-
독일	공공 사회복지지출	현금	법정연금보험, 연금보험, 농부에 대한 노령보조, 공무원을 위한 보충연금, 직업재해연금의 장애연금, 유급상병급여, 건강보험의 상병급여, 공공부조의 보호자수당, 자산조사형 사회보상급여,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조기퇴직급여
		현물	노령에 대한 일상생활수행보조, 직업재해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부조의 장애인보조, 가사돌봄서비스, 재활서비스, 장례비용
	법정민간 사회복지지출	현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급상병급여
		현물	-
	자발적민간 사회복지지출	현금	-
		현물	-
한국	공공 사회복지지출	현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의 장애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장애수당, 기타 현금급여
		현물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공공조직지원, 재활센터운영, 재활훈련 및 치료, 장애인 신체보조, 특수학교지원
	법정민간 사회복지지출	현금	기업주 유급상병휴가급여
		현물	장애인에 대한 교통통신 감면
	자발적민간 사회복지지출	현금	-
		현물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급여

위에서 살펴본 제도들을 단순화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는 지출의 구조만을 고려한 것이다. 각국가들의 근로무능력관련급여의 구조는 매우 뚜렷한 특징을 보여준다.

〈표 5-14〉 근로무능력관련급여의 구조 비교

	호주		미국		영국		독일		한국	
	현금	현물								
공공복지지출	○	○	○	×	○	○	○	○	○	○
법정민간지출	×	×	○	×	○	×	○	×	○	○
자발적민간지출	×	×	○	×	○	×	×	×	×	○

마지막으로 근로무능력관련급여의 지출은 위에서 살펴본 급여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부문과 법정부문의 현금급여로 지출하고 있는 독일(2.92%)과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국(2.86%)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공공부문에서만 지출하고 있는 호주(2.25%)와 현금급여를 통해서만 지출하는 미국(1.79%)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다양한 재원부담구조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수준은 0.67%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표 5-15〉 근로무능력관련급여의 지출 비교(2007)

지출지표	급여	호주	미국	영국	독일	한국
공공	현금	1.73	1.31	2.06	1.35	0.43
	현물	0.52	-	0.38	0.54	0.12
법정민간	현금	-	0.16	0.03	1.03	0.07
	현물	-	-	-	-	0.05
자발적민간	현금	-	0.32	0.39	-	-
	현물	-	-	-	-	0.0
근로무능력관련급여 비율		2.25	1.79	2.86	2.92	0.67

근로무능력관련급여에 있어 공공지출은 모든 국가에서 법정민간 또는 자발적민간 지출 보다 비중이 높다. 또한 제도 구조와 지출의 수준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다양한 부담주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보다 공공부문의 책무가 강한 것이 근로무능력관련급여의 특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근로무능력관련급여는 지난 20년간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물가상승률이나 GDP 증가율에 비하면 지난 20년간 근로무능력급여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무능력관련 어떠한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와 연계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참고 문헌

- 건설교통부(2004). 비영리단체에 의한 공공주택 공급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 고경환, 장영식, 이내연(2003).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1990-200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경환, 장영식, 이정우(2005b). 한국의 순사회복지지출 추계(2002)와 독일의 사회복지계정 고찰.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경환, 장영식, 이태진, 박신영(2006).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1990~2003)와 공공임대주택의 현물급여 추계방안.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경환, 장영식, 김재진, 정무성, 강지원(2009a). 2007년도 사회복지지출 추계와 OECD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경환, 조영복, 박을중, 강지원, 최성용(2009b).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자발적 민간지출 수준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경환(2007). 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7. 9.
- _____(2005a).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교통요금감면제도의 경제적 귀착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32집), 서울: 한국사회보장학회.
- 고용노동부(2010). **사회적기업 3주년 성과분석**.
- 김교성 외(2006). **한국사회복지지원총량조사연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김진욱(2004). 복지혼합의 모형에 관한 이론적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제11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진욱(2005). 한국 복지혼합의 구조 2000년도 지출추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1권 3호
- _____(2009). 한국의 복지혼합과 복지체제, 정무권 편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II**. 인간과 복지.
- _____(2011). 노후소득의 혼합구성과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년학**31(1).

- 류건식 외(2009).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보험연구원.
- 석재은, 임정기(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소득수준 격차 및 소득원 차이와 결정요인. **한국노년학**27(1).
- 손병돈(2009). 노인 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불평등 요인분해. **한국노년학**, 29(4).
- 신동면(2001). 한국의 복지혼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5.
- 여성가족부(2011).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연구**. 여성가족부.
- 이순재, 김현수(2009). 개인연금의 현황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선방향. **사회보장연구**. 25권 3호
- 정형선 외(2010). **2008년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 최성은, 강지원, 임완섭(2009). **2009 사회예산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성은, 강지원(2010). 2010 **사회예산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경준(2002).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 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50권.
- Adema, W(1999). Net Social Expenditure.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 Np. 39*. Paris:OECD.
- _____ (2001). Net Social Expenditure 2nd edition.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 Np. 52*. Paris:OECD.
- _____ & Ladaique, Maxim (2005). Net social expenditure, 2005 edition-More comprehensive measures of social support.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9.
- _____ & _____ (2009). How expensive is the welfare state? - Gross and net indicators in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92.
- Ascoli U. and C. Ranci (eds.)(2002). *Dilemmas of the Welfare Mix*. Kluwer Academy Plenum Publishers.
- Beresford P. and S. Croft(1984). *Welfare Pluralism: the new face of Fabianism*. *Critical Social Policy*. 9:19-39.

- Blair T.(1998). *The Third Way: New Politics for the New Century*. Fabian Society.
- Esping-Andersen G.(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ty.
- _____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 Gilbert N. and B. Gilbert(1989). *The Enabling State*. OUP.
- Glennerster H. and J. Le Grand. 1995. The Developments of Quasi-markets in Welfare Provisions in the United Kingdom.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Vol. 25 (2): 203-18.
- Gough I. and J. W. Kim(2000). Tracking the Welfare Mix in Korea. *IFIPA unpublished working paper*. University of Bath.
- Hadley R. and S. Hatch(1981). *Social Welfare and the Failure of the State*. Allen and Unwin.
- Hansmann H.(1987). *Economic Theories of Nonprofit Organization*. in W. W. Powell (ed.) *The Nonprofit Sector A Research Handbook*.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 Johnson N.(1987). *The Welfare State in Transi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Welfare Pluralism*. Harvester Wheatsheaf.
- Mayo M.(1994). *Communities and Caring-The Mixed Economy of Welfare*. St. Martin's Press.
- Kim J. W.(2004). *The Welfare Mix in Korea - Dynamics of Environments, Institutions and Welfare Politics*. Unpublished PhD Thesis. The University of Bath.
- Kim J. W.(2005). The Dynamics of the Welfare Mix in Korea: An Expenditure Study between 1990 and 2001.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58(4).
- Kramer R.(1981). *Voluntary Agencies in the Welfare Stat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 Grand J. and W. Bartlett (eds.)(1993). *Quasi-Markets and Social Policy*.

London: Macmillan.

OECD(2007). *The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 Interpretative Guide SOCX 1980-2003*.

OECD(2010). *Revenue Statistics 1965-2009*.

Ranci C.(2002). The Mixed Economy of Social Care in Europe. in Ascoli and Ranci (eds.). *Dilemmas of the Welfare Mix*. New York: Kluwer Academy Plenum Publishers.

Salamon L. M.(1987). Partners in Public Service: The Scope and Theory of Government-Nonprofit Relations. in W. W. Powell (ed.) *The Nonprofit Sector A Research Handbook*.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_____ (2002). The Resilient Sector: The State of Nonprofit America. in Salamon. L. M. ed.. *The State of Nonprofit America*. Brookings Institution Press.

Social Justice Ireland(2010). *Future of the Welfare State*.

Walker A.(1993). A Cultural Revolution? Shifting the UK's Welfare Mix in the Care of Older People. in A. Evers and I. Svetlik (eds.). *Balancing Pluralism: New Welfare Mixes in Care for Elderly*. European Centre Vienna. Avebury.

Wolfenden Committee(1978). *The Future of Voluntary Organisations*. Croom.

자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 각 연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각 연도

관세청. 내부자료. 각 연도

광주도시철도공사. 내부자료. 각 연도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각 연도

국가보훈처. **보훈연감**. 각 연도

_____. 내부자료 각 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의료급여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내부자료 각 연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연도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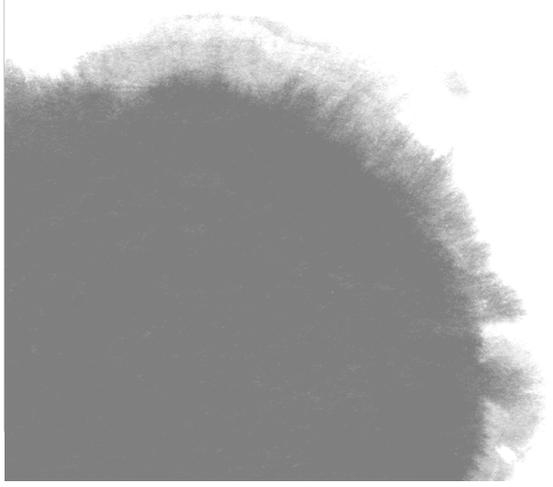
생명보험협회(2010). **FACT BOOK** 2010.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

월드뱅크 홈페이지(<http://www.worldbank.org>)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부록





부록

부록 1. 부표

부록 2. 부도

부록 3. 사회복지시설실태조사표

부록 4. OECD 사회지출데이터 통계생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부록 1. 부표

〈부표 1〉 OECD 사회복지지출 항목의 분류

부 문	관 심 영 역	세 부 관 심 영 역
1. 노 령	1.1. 현금급여 1.2. 현물급여	1.1.1 연금 1.1.2 조기퇴직연금 1.1.3 기타 현금급여 1.2.1 돌봄서비스/가사보조서비스 1.2.2 기타 현물급여
2. 유 족	2.1 현금급여 2.2 현물급여	2.1.1 연금 2.1.2 기타 현금급여 2.2.1 장례비 2.2.2 기타 현물급여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장애, 산업재해, 질병)	3.1 현금급여 3.2 현물급여	3.1.1 장애연금 3.1.2 연금(산업재해) 3.1.3 유급질병휴가(산업재해) 3.1.4 유급질병휴가(기타 질병수당) 3.1.5 기타 현금급여 3.2.1 돌봄서비스/가사보조서비스 3.2.2 재활서비스 3.2.3 기타 현물급여
4. 보 건	4.1 현금급여 4.2 현물급여	
5. 가 족	5.1 현금급여 5.2 현물급여	5.1.1 가족수당 5.1.2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5.1.3 기타 현금급여 5.2.1 아동주간보호/가사서비스 5.2.2 기타 현물급여

〈부표 1〉 계속

부 문	관 심 영 역	세 부 관 심 영 역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6.0.1 PES와 행정 6.0.2 직업훈련 6.0.3 일자리 순환 및 일자리나누기 6.0.4 고용인센티브 6.0.5 지원고용 및 재활 6.0.6 직접적인 일자리창출 6.0.7 취업인센티브
7. 실업	7.1 현금급여 7.2 현물급여	7.1.1 실업보상/해고수당 7.1.2 노동시장의 환경으로 인한 조기퇴직
8. 주거	8.1 현금급여 8.2 현물급여	8.2.1 주거보조 8.2.2 기타 현물급여
9. 기타 사회정책 영역	9.1 현금급여 9.2 현물급여	9.1.1 소득지원 9.1.2 기타 현금급여 9.2.1 사회부조 9.2.2 기타 현물급여

자료: OECD, The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 Interpretive Guide, 2007, p. 12.

〈부표 2〉 교통·통신 등 요금의 감면대상자와 감면기준

제 도		노 인	장 애 인	보 훈 대 상 자
통 신 요 금	시내·외 전화요금	-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시내통화료(50%) · 시외통화료(월 3만원 사용한도에서 50%) · 114안내요금(100%) · 전화회선으로 PC통신 이용시 동일 할인을 적용	· 시내·외 통화료 50%
	이동통신 요금	-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이동전화(신규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및 전파사용료 면제) · 무선호출기(기본요금의 20%)	· 이동전화(기본요금의 30%)
	TV 수신료	-	면 제	면 제
교 통 요 금	철도요금	· KTX · 무궁화호(30%) · 통일호(50%), · 전철(무료)	· KTX · 무궁화호, 통일호, 비둘기호 (50%) · 전철(무료)	1년 6매 무료제공 (무궁화호 이하 이용)
	도시철도 (지하철· 전철)	무 료	무 료	무 료
	국내선 항공료	10%	- 등록 장애인, 동행보호자 1인 50%(1~3급)	일반유공자 30% 상이군경, 동행보호자 1인 50%(1~4급)
	고속도로 통행료	-	50%	1~5급: 면제, 6급: 50% 승합, 화물차: 50%
공 공 시 설	국·공립 박물관, 공원	무 료 (단, 국·공립국악 원은 50% 이상)	무 료 (단, 국·공립 공연장 및 공공 체육시설은 50%)	무 료(공원)
	고 궁	무 료	무 료	무 료

주: '-'표는 제도 없음

〈부표 3〉 한국공공 및 법정민간지출의 데이터베이스(SOCX) 기능 구조

<p>1. 노령(OLD A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 조기퇴직연금 기타 현금급여들 현물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서비스/가사보조서비스 기타 현물급여들 	<p>5. 가족(FAMIL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수당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타 현금급여들 현물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가사보조서비스 기타 현물급여들
<p>2. 유족(SURVIVO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 기타 현금급여들 현물급여 	<p>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S와 행정 직업훈련 일자리순환 및 일자리나누기 고용인센티브 지원고용 및 재할 직접적인 일자리창출 취업인센티브
<p>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연금 연금(산업재해) 유급상병휴가(산업재해) 유급상병휴가(기타 상병수당) 기타 현금급여들 현물급여 	<p>7. 실업(UNEMPLOY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보상/해고수당 노동시장 환경으로 인한 조기퇴직 현물급여
<p>4. 보건(HEAL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급여 현물급여 	<p>8. 주거(HOUS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급여 현물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보조 기타 현물급여들
<p>9. 기타(OTHER SOCIAL POLICY AREA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보조 기타 현금급여들 현물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조 기타 현물급여들 	

자료: OECD, 2007, p.12.

〈부표 4〉 OECD 지침서에 의한 간접세 개념과 해당 세목

OECD 기준(OECD Classification)			
5000 재화와 용역에 대한 조세 (Taxes on Goods and Services)	5100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이전에 대한 조세 (Taxes on Production, Sale, Transfer, etc)	5110 일반소비세 (General Taxes)	5111 부가가치세 (Value-added Taxes)
			5112 판매세(Sales Taxes)
			5113 기타 일반소비세 (Other)
		5120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한 조세(Taxes on Specific Goods and Services)	5121 특정소비세 (Excises)
			5122 전매수익 (Profits of Fiscal Monopolies)
			5123 관세 (Customs and Import Duties)
			5124 수출세(Taxes on Exports)
			5125 투자재화에 대한 조세 (Taxes on Investment Goods)
			5126 특정용역에 대한 조세 (Taxes on Specific Services)
			5127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 (Other Taxes on International Trade and Transactions)
5128 기타(Other Taxes)			
5130 5110과 5120에 속하지 않은 것 (Unallocable as between 5110 and 5120)			
5200 재화의 사용에 대한 조세 (Taxes on Use of Goods and perform activities)	5210 정기적인 조세 (Recurrent Taxes)	5211 자동차면허세 가계부담 (Paid by households: motor vehicles)	
		5212 자동차면허세 기타부담 (Paid by others: motor vehicles)	
	5213 기타 정기적 조세 (Paid in respect of other goods)		
5220 비정기적인 조세 (Non-recurrent Taxes)			
5300 5100과 5200에 속하지 않은 것 (Unallocable as between 5100 and 5200)			

자료: OECD(2010), Revenue Statistics 1965-2009

〈부표 5〉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

(단위: 십억원, %)

구 분	총사회복지지출(C+D)					경상GDP (조원)	연평균 증가율 (공공부문,A)
	사회복지지출(C=A+B)			자발적 민간부문(D)	공공부문(A)		
	법정민간부문(B)	공공부문(A)	사회복지지출(C=A+B)				
1990	6,051	5,900	5,398	502	151	191.4	16.71
1991	7,071	6,903	6,312	591	168	231.4	
1992	8,675	8,494	7,783	711	181	264.0	
1993	10,177	9,832	9,029	802	346	298.8	
1994	12,102	11,666	10,649	1,017	436	350.0	
1995	22,542	14,542	13,268	1,274	8,000	409.7	
1996	26,523	17,171	15,723	1,448	9,352	461.0	
1997	31,378	21,104	18,708	2,395	10,275	506.3	
1998	39,425	30,446	25,595	4,851	8,979	501.0	
1999	48,590	37,050	33,668	3,382	11,540	549.0	
2000	45,673	33,407	28,943	4,464	12,266	603.2	
2001	51,095	38,036	34,209	3,827	13,060	651.4	
2002	55,075	40,523	36,823	3,700	14,552	720.5	
2003	62,351	45,533	41,192	4,341	16,817	767.1	
2004	68,299	54,779	49,833	4,946	13,520	826.9	
2005	76,067	60,842	55,888	4,954	15,226	865.2	
2006	90,052	72,347	67,092	5,256	17,704	908.7	
2007	99,851	79,967	73,959	6,008	19,884	975.0	
2008	109,906	91,949	85,569	6,379	17,957	1,026.5	
2009	129,666	110,548	101,780	8,769	19,117	1,065.0	

〈부표 6〉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구성비)

(단위: %)

구 분	총사회복지지출(C+D)				
		사회복지지출(C=A+B)			자발적민간부문(D)
		공공부문(A)	법정민간부문(B)		
1990	100.0	97.5	89.2	8.3	2.5
1991	100.0	97.6	89.3	8.4	2.4
1992	100.0	97.9	89.7	8.2	2.1
1993	100.0	96.6	88.7	7.9	3.4
1994	100.0	96.4	88.0	8.4	3.6
1995	100.0	64.5	58.9	5.7	35.5
1996	100.0	64.7	59.3	5.5	35.3
1997	100.0	67.3	59.6	7.6	32.7
1998	100.0	77.2	64.9	12.3	22.8
1999	100.0	76.2	69.3	7.0	23.8
2000	100.0	73.1	63.4	9.8	26.9
2001	100.0	74.4	67.0	7.5	25.6
2002	100.0	73.6	66.9	6.7	26.4
2003	100.0	73.0	66.1	7.0	27.0
2004	100.0	80.2	73.0	7.2	19.8
2005	100.0	80.0	73.5	6.5	20.0
2006	100.0	80.3	74.5	5.8	19.7
2007	100.0	80.1	74.1	6.0	19.9
2008	100.0	83.7	77.9	5.8	16.3
2009	100.0	85.3	78.5	6.8	14.7

〈부표 7〉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총사회복지지출(C+D)				
		사회복지지출(C=A+B)			자발적민간부문(D)
		공공부문(A)	법정민간부문(B)		
1991	16.8	17.0	16.9	17.6	11.4
1992	22.7	23.0	23.3	20.4	7.7
1993	17.3	15.8	16.0	12.8	90.9
1994	18.9	18.7	17.9	26.7	26.1
1995	86.3	24.7	24.6	25.3	1,735.3 ^{※)}
1996	17.7	18.1	18.5	13.6	16.9
1997	18.3	22.9	19.0	65.4	9.9
1998	25.6	44.3	36.8	102.5	-12.6
1999	23.2	21.7	31.5	-30.3	28.5
2000	-6.0	-9.8	-14.0	32.0	6.3
2001	11.9	13.9	18.2	-14.3	6.5
2002	7.8	6.5	7.6	-3.3	11.4
2003	13.2	12.4	11.9	17.3	15.6
2004	9.5	20.3	21.0	13.9	-19.6
2005	11.4	11.1	12.1	0.2	12.6
2006	18.4	18.9	20.0	6.1	16.3
2007	10.9	10.5	10.2	14.3	12.3
2008	10.1	15.0	15.7	6.2	-9.7
2009	18.0	20.2	18.9	37.5	6.5

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가 1995년부터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부표 8〉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경상GDP 대비)

(단위: %)

구분	총사회복지지출(C+D)				
		사회복지지출(C=A+B)			자발적민간부문(D)
		공공부문(A)	법정민간부문(B)		
1990	3.16	3.08	2.82	0.26	0.08
1991	3.06	2.98	2.73	0.26	0.07
1992	3.29	3.22	2.95	0.27	0.07
1993	3.41	3.29	3.02	0.27	0.12
1994	3.46	3.33	3.04	0.29	0.12
1995	5.50	3.55	3.24	0.31	1.95
1996	5.75	3.73	3.41	0.31	2.03
1997	6.20	4.17	3.70	0.47	2.03
1998	7.87	6.08	5.11	0.97	1.79
1999	8.85	6.75	6.13	0.62	2.10
2000	7.57	5.54	4.80	0.74	2.03
2001	7.84	5.84	5.25	0.59	2.00
2002	7.64	5.62	5.11	0.51	2.02
2003	8.13	5.94	5.37	0.57	2.19
2004	8.26	6.62	6.03	0.60	1.64
2005	8.79	7.03	6.46	0.57	1.76
2006	9.91	7.96	7.38	0.58	1.95
2007	10.24	8.20	7.59	0.62	2.04
2008	10.71	8.96	8.34	0.62	1.75
2009	12.17	10.38	9.56	0.82	1.79

〈부표 9〉 기능별 사회복지지출

(단위: 십억원)

	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 그램	7.실업	실업 보상		8.주거	9.기타	
		퇴직연금												
1990	5,900	1,525	359	-	298	705	2,926	60	51	-	-	-	-	335
1991	6,903	1,895	424	-	409	944	3,186	89	44	-	-	-	-	336
1992	8,494	2,549	521	-	452	1,178	3,772	111	103	-	-	-	-	328
1993	9,832	3,258	597	-	494	1,182	4,241	154	144	-	-	-	-	359
1994	11,666	4,114	797	-	569	1,495	4,827	185	114	-	-	-	-	363
1995	14,542	5,357	984	-	637	1,744	5,914	263	168	-	-	-	-	459
1996	17,171	5,742	1,091	-	720	2,049	7,542	339	184	10	10	-	-	586
1997	21,104	7,330	1,872	-	819	2,443	8,813	515	360	79	79	-	-	745
1998	30,446	13,159	4,226	-	874	2,504	9,951	644	1,627	799	799	-	-	888
1999	37,050	15,614	2,606	-	900	2,432	11,747	685	3,266	936	936	-	-	1,469
2000	33,407	11,048	3,474	-	1,040	2,892	13,147	879	2,313	471	471	-	-	1,619
2001	38,036	9,318	2,599	-	1,172	3,376	18,093	1,252	1,429	845	845	-	-	2,551
2002	40,523	9,668	2,330	-	1,364	4,029	19,022	1,278	1,342	835	835	-	-	2,985
2003	45,533	11,663	2,863	-	1,597	4,671	20,838	1,589	932	1,030	1,030	-	-	3,213
2004	54,779	14,513	3,266	-	1,825	5,381	22,833	2,330	941	1,448	1,448	-	-	5,509
2005	60,842	15,836	3,182	-	2,013	5,713	25,935	2,518	1,035	1,752	1,752	-	-	6,040
2006	72,347	17,512	3,330	-	2,235	6,248	30,397	5,273	1,089	2,074	2,074	-	-	7,519
2007	79,967	20,000	3,663	276	2,471	6,587	34,297	5,321	1,267	2,434	2,434	-	-	7,591
2008	91,949	25,154	3,959	779	2,667	7,029	37,084	8,069	1,958	2,865	2,865	-	-	7,123
2009	110,548	30,965	5,082	1,910	2,927	7,487	42,886	9,110	4,281	4,116	4,116	-	-	8,776

〈부표 10〉 기능별 사회복지지출(구성비)

(단위: %)

	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 그램	7.실업	실업 보상		8.주거	9.기타
		퇴직연금											
1990	100.0	25.8	6.1	-	5.1	12.0	49.6	1.0	0.9	-	-	-	5.7
1991	100.0	27.4	6.1	-	5.9	13.7	46.2	1.3	0.6	-	-	-	4.9
1992	100.0	30.0	6.1	-	5.3	13.9	44.4	1.3	1.2	-	-	-	3.9
1993	100.0	33.1	6.1	-	5.0	12.0	43.1	1.6	1.5	-	-	-	3.6
1994	100.0	35.3	6.8	-	4.9	12.8	41.4	1.6	1.0	-	-	-	3.1
1995	100.0	36.8	6.8	-	4.4	12.0	40.7	1.8	1.2	-	-	-	3.2
1996	100.0	33.4	6.4	-	4.2	11.9	43.9	2.0	1.1	0.1	0.1	-	3.4
1997	100.0	34.7	8.9	-	3.9	11.6	41.8	2.4	1.7	0.4	0.4	-	3.5
1998	100.0	43.2	13.9	-	2.9	8.2	32.7	2.1	5.3	2.6	2.6	-	2.9
1999	100.0	42.1	7.0	-	2.4	6.6	31.7	1.8	8.8	2.5	2.5	-	4.0
2000	100.0	33.1	10.4	-	3.1	8.7	39.4	2.6	6.9	1.4	1.4	-	4.8
2001	100.0	24.5	6.8	-	3.1	8.9	47.6	3.3	3.8	2.2	2.2	-	6.7
2002	100.0	23.9	5.8	-	3.4	9.9	46.9	3.2	3.3	2.1	2.1	-	7.4
2003	100.0	25.6	6.3	-	3.5	10.3	45.8	3.5	2.0	2.3	2.3	-	7.1
2004	100.0	26.5	6.0	-	3.3	9.8	41.7	4.3	1.7	2.6	2.6	-	10.1
2005	100.0	26.0	5.2	-	3.3	9.4	42.6	4.1	1.7	2.9	2.9	-	9.9
2006	100.0	24.2	4.6	-	3.1	8.6	42.0	7.3	1.5	2.9	2.9	-	10.4
2007	100.0	25.0	4.6	0.3	3.1	8.2	42.9	6.7	1.6	3.0	3.0	-	9.5
2008	100.0	27.4	4.3	0.8	2.9	7.6	40.3	8.8	2.1	3.1	3.1	-	7.7
2009	100.0	28.0	4.6	1.7	2.6	6.8	38.8	8.2	3.9	3.7	3.7	-	7.9

〈부표 11〉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 그램	7.실업	실업 보상		8.주거	9.기타
		퇴직연금											
1990	-	-	-	-	-	-	-	-	-	-	-	-	-
1991	17.0	24.2	18.0	-	37.2	33.9	8.9	48.2	-14.0	-	-	-	0.2
1992	23.0	34.6	22.9	-	10.3	24.8	18.4	24.9	136.5	-	-	-	-2.3
1993	15.8	27.8	14.6	-	9.3	0.3	12.4	38.7	39.6	-	-	-	9.3
1994	18.7	26.3	33.4	-	15.2	26.5	13.8	20.2	-20.6	-	-	-	1.1
1995	24.7	30.2	23.5	-	12.1	16.6	22.5	42.4	46.9	-	-	-	26.6
1996	18.1	7.2	10.8	-	13.0	17.5	27.5	28.8	9.2	-	-	-	27.6
1997	22.9	27.7	71.6	-	13.8	19.2	16.9	52.0	95.8	652.8	652.8	-	27.1
1998	44.3	79.5	125.8	-	6.7	2.5	12.9	25.1	352.6	915.3	915.3	-	19.2
1999	21.7	18.7	-38.3	-	3.0	-2.9	18.1	6.3	100.7	17.1	17.1	-	65.5
2000	-9.8	-29.2	33.3	-	15.5	18.9	11.9	28.3	-29.2	-49.7	-49.7	-	10.2
2001	13.9	-15.7	-25.2	-	12.7	16.8	37.6	42.5	-38.2	79.5	79.5	-	57.6
2002	6.5	3.8	-10.3	-	16.4	19.3	5.1	2.1	-6.0	-1.2	-1.2	-	17.0
2003	12.4	20.6	22.8	-	17.1	15.9	9.6	24.3	-30.6	23.4	23.4	-	7.6
2004	20.3	24.4	14.1	-	14.3	15.2	9.6	46.6	0.9	40.6	40.6	-	71.5
2005	11.1	9.1	-2.6	-	10.3	6.2	13.6	8.0	10.0	21.0	21.0	-	9.6
2006	18.9	10.6	4.6	-	11.0	9.4	17.2	109.4	5.3	18.4	18.4	-	24.5
2007	10.5	14.2	10.0	-	10.6	5.4	12.8	0.9	16.3	17.4	17.4	-	1.0
2008	15.0	25.8	8.1	182.2	7.9	6.7	8.1	51.7	54.5	17.7	17.7	-	-6.2
2009	20.2	23.1	28.4	145.3	9.7	6.5	15.6	12.9	118.7	43.7	43.7	-	23.2

〈부표 12〉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수준(경상GDP 대비)

(단위: %)

	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 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퇴직연금	실업 보상										
1990	3.08	0.80	0.19	-	0.16	0.37	1.53	0.03	0.03	-	-	-	0.18
1991	2.98	0.82	0.18	-	0.18	0.41	1.38	0.04	0.02	-	-	-	0.15
1992	3.22	0.97	0.20	-	0.17	0.45	1.43	0.04	0.04	-	-	-	0.12
1993	3.29	1.09	0.20	-	0.17	0.40	1.42	0.05	0.05	-	-	-	0.12
1994	3.33	1.18	0.23	-	0.16	0.43	1.38	0.05	0.03	-	-	-	0.10
1995	3.55	1.31	0.24	-	0.16	0.43	1.44	0.06	0.04	-	-	-	0.11
1996	3.73	1.25	0.24	-	0.16	0.44	1.64	0.07	0.04	0.00	0.00	-	0.13
1997	4.17	1.45	0.37	-	0.16	0.48	1.74	0.10	0.07	0.02	0.02	-	0.15
1998	6.08	2.63	0.84	-	0.17	0.50	1.99	0.13	0.32	0.16	0.16	-	0.18
1999	6.75	2.84	0.47	-	0.16	0.44	2.14	0.12	0.59	0.17	0.17	-	0.27
2000	5.54	1.83	0.58	-	0.17	0.48	2.18	0.15	0.38	0.08	0.08	-	0.27
2001	5.84	1.43	0.40	-	0.18	0.52	2.78	0.19	0.22	0.13	0.13	-	0.39
2002	5.62	1.34	0.32	-	0.19	0.56	2.64	0.18	0.19	0.12	0.12	-	0.41
2003	5.94	1.52	0.37	-	0.21	0.61	2.72	0.21	0.12	0.13	0.13	-	0.42
2004	6.62	1.76	0.40	-	0.22	0.65	2.76	0.28	0.11	0.18	0.18	-	0.67
2005	7.03	1.83	0.37	-	0.23	0.66	3.00	0.29	0.12	0.20	0.20	-	0.70
2006	7.96	1.93	0.37	-	0.25	0.69	3.34	0.58	0.12	0.23	0.23	-	0.83
2007	8.20	2.05	0.38	0.03	0.25	0.68	3.52	0.55	0.13	0.25	0.25	-	0.78
2008	8.96	2.45	0.39	0.08	0.26	0.68	3.61	0.79	0.19	0.28	0.28	-	0.69
2009	10.38	2.91	0.48	0.18	0.27	0.70	4.03	0.86	0.40	0.39	0.39	-	0.82

〈부표 13〉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단위: 십억원)

재원	세부재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합계		5,900	6,903	8,494	9,832	11,666	14,542
공공 부문	소계	5,398	6,312	7,783	9,029	10,649	13,268
	정부 ^{주)}	1,501	1,775	2,029	2,287	2,665	3,200
	사회보험	3,896	4,539	5,752	6,744	7,985	10,068
	연금	1,235	1,571	2,141	2,785	3,453	4,482
	의료보장	2,122	2,266	2,679	3,106	3,553	4,450
	산업재해 보상보험	539	702	932	853	979	1,134
	고용보험	-	-	-	-	-	2
	장기요양보험	-	-	-	-	-	-
	민간 부문	소계	502	591	711	802	1,017
법정퇴직금	359	424	521	597	797	984	
퇴직연금	-	-	-	-	-	-	
산전후 휴가급여	-	-	-	-	-	-	
유급질병 휴가급여	143	166	190	205	220	235	
민간복지서비스	-	-	-	-	-	55	

주: 취약계층의 교통·통신 요금 감면 포함.

〈부표 13〉 계속

(단위: 십억원)

재원	세부재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17,171	21,104	30,446	37,050	33,407	38,036	40,523
공공 부문	소계	15,723	18,708	25,595	33,668	28,943	34,209	36,823
	정부	3,926	4,916	6,602	9,256	9,134	10,515	11,776
	사회보험	11,798	13,793	18,992	24,412	19,808	23,695	25,046
	연금	4,728	5,511	8,945	13,052	7,656	6,712	7,330
	의료보장	5,691	6,608	7,486	8,648	9,774	13,877	14,353
	산업재해 보상보험	1,355	1,556	1,451	1,274	1,456	1,745	2,016
	고용보험	24	118	1,110	1,438	922	1,361	1,347
	장기요양보험	-	-	-	-	-	-	-
	민간 부문	소계	1,448	2,395	4,851	3,382	4,464	3,827
법정퇴직금	1,091	1,872	4,226	2,606	3,474	2,599	2,330	
퇴직연금	-	-	-	-	-	-	-	
산전후 휴가급여	-	85	94	153	212	309	260	
유급질병 휴가급여	289	343	397	451	506	571	679	
민간복지서비스	68	96	134	172	272	348	430	

〈부표 13〉 계속

(단위: 십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세부재원	재원
45,533	54,779	60,842	72,347	79,967	91,949	110,548	합계	
41,192	49,833	55,888	67,092	73,959	85,569	101,780	소계	공공 부문
12,401	17,316	18,933	25,202	26,513	31,763	37,266	정부	
28,792	32,517	36,955	41,891	47,445	53,806	64,513	사회보험	
8,912	10,294	12,095	13,332	15,100	17,399	18,668	연금	
15,757	17,231	19,242	22,354	25,461	27,615	32,140	의료보장	
2,482	2,860	3,026	3,164	3,242	3,422	3,463	산업재해 보상보험	
1,641	2,132	2,592	3,041	3,642	4,945	8,512	고용보험	
-	-	-	-	-	425	1,731	장기요양보험	
4,341	4,946	4,954	5,256	6,008	6,379	8,769	소계	민간 부문
2,863	3,266	3,182	3,330	3,663	3,959	5,082	법정퇴직금	
-	-	-	-	276	779	1,910	퇴직연금	
321	362	307	366	459	506	526	산전후 휴가급여	
633	701	751	757	695	697	694	유급질병 휴가급여	
525	617	715	803	915	439	557	민간복지서비스	

〈부표 14〉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재원	세부재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합계	-	17.0	23.0	15.8	18.7	24.7	18.1	22.9	44.3	21.7
공공 부문	소계	-	16.9	23.3	16.0	17.9	24.6	18.5	19.0	36.8	31.5
	정부 ^{주)}	-	18.3	14.3	12.7	16.5	20.1	22.7	25.2	34.3	40.2
	사회보험	-	16.5	26.7	17.2	18.4	26.1	17.2	16.9	37.7	28.5
	연금	-	27.2	36.3	30.1	24.0	29.8	5.5	16.6	62.3	45.9
	의료보장	-	6.8	18.3	15.9	14.4	25.3	27.9	16.1	13.3	15.5
	산업재해 보상보험	-	30.2	32.8	-8.5	14.8	15.8	19.5	14.8	-6.7	-12.2
	고용보험	-	-	-	-	-	-	1,100.0	391.7	840.7	29.5
	장기요양보험	-	-	-	-	-	-	-	-	-	-
민간 부문	소계	-	17.6	20.4	12.8	26.7	25.3	13.6	65.4	102.5	-30.3
	법정퇴직금	-	18.0	22.9	14.6	33.4	23.5	10.8	71.6	125.8	-38.3
	퇴직연금	-	-	-	-	-	-	-	-	-	-
	산전후 휴가급여	-	-	-	-	-	-	-	-	10.6	63.2
	유급질병 휴가급여	-	16.7	14.3	7.9	7.3	6.8	23.0	18.7	15.7	13.6
	민간복지서비스	-	-	-	-	-	-	24.1	40.7	40.1	28.0

주: 취약계층의 교통·통신 요금 감면 포함.

〈부표 14〉 계속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세부재원	재원
-9.8	13.9	6.5	12.4	20.3	11.1	18.9	10.5	15.0	20.2	합계	
-14.0	18.2	7.6	11.9	21.0	12.1	20.0	10.2	15.7	18.9	소계	공공 부문
-1.3	15.1	12.0	5.3	39.6	9.3	33.1	5.2	19.8	17.3	정부	
-18.9	19.6	5.7	15.0	12.9	13.6	13.4	13.3	13.4	19.9	사회보험	
-41.3	-12.3	9.2	21.6	15.5	17.5	10.2	13.3	15.2	7.3	연금	
13.0	42.0	3.4	9.8	9.4	11.7	16.2	13.9	8.5	16.4	의료보장	
14.3	19.8	15.5	23.1	15.2	5.8	4.6	2.5	5.5	1.2	산업재해 보상보험	
-35.9	47.6	-1.0	21.8	29.9	21.6	17.3	19.8	35.8	72.1	고용보험	
-	-	-	-	-	-	-	-	-	306.9	장기요양보험	
32.0	-14.3	-3.3	17.3	13.9	0.2	6.1	14.3	6.2	37.5	소계	
33.3	-25.2	-10.3	22.8	14.1	-2.6	4.6	10.0	8.1	28.4	법정퇴직금	
-	-	-	-	-	-	-	-	182.2	145.3	퇴직연금	
38.7	45.7	-15.8	23.2	12.7	-15.1	19.4	25.3	10.3	3.9	산전후 휴가급여	
12.2	12.9	18.8	-6.8	10.8	7.1	0.9	-8.2	0.3	-0.5	유급질병 휴가급여	
58.2	27.9	23.9	21.9	17.5	15.8	12.3	14.0	-52.0	26.9	민간복지서비스	

〈부표 15〉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단위: %)

재원	세부재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공 부문	소계	91.5	91.4	91.6	91.8	91.3	91.2	91.6	88.7	84.1	90.9
	정부 ^{주)}	25.4	25.7	23.9	23.3	22.8	22.0	22.9	23.3	21.7	25.0
	사회보험	66.0	65.7	67.7	68.6	68.4	69.2	68.7	65.4	62.4	65.9
	연금	20.9	22.8	25.2	28.3	29.6	30.8	27.5	26.1	29.4	35.2
	의료보장	36.0	32.8	31.5	31.6	30.5	30.6	33.1	31.3	24.6	23.3
	산업재해 보상보험	9.1	10.2	11.0	8.7	8.4	7.8	7.9	7.4	4.8	3.4
	고용보험	-	-	-	-	-	0.0	0.1	0.6	3.6	3.9
	장기요양보험	-	-	-	-	-	-	-	-	-	-
	민간 부문	소계	8.5	8.6	8.4	8.2	8.7	8.8	8.4	11.3	15.9
법정퇴직금	6.1	6.1	6.1	6.1	6.8	6.8	6.4	8.9	13.9	7.0	
퇴직연금	-	-	-	-	-	-	-	-	-	-	
산전후 휴가급여	-	-	-	-	-	-	-	0.4	0.3	0.4	
유급질병 휴가급여	2.4	2.4	2.2	2.1	1.9	1.6	1.7	1.6	1.3	1.2	
민간복지서비스	-	-	-	-	-	-	0.4	0.4	0.5	0.4	0.5

주: 취약계층의 교통·통신 요금 감면 포함.

〈부표 15〉 계속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세부재원	재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계	
86.6	89.9	90.9	90.5	91.0	91.9	92.7	92.5	93.1	92.1	소계	공공 부문
27.3	27.6	29.1	27.2	31.6	31.1	34.8	33.2	34.5	33.7	정부	
59.3	62.3	61.8	63.2	59.4	60.7	57.9	59.3	58.5	58.4	사회보험	
22.9	17.6	18.1	19.6	18.8	19.9	18.4	18.9	18.9	16.9	연금	
29.3	36.5	35.4	34.6	31.5	31.6	30.9	31.8	30.0	29.1	의료보장	
4.4	4.6	5.0	5.5	5.2	5.0	4.4	4.1	3.7	3.1	산업재해 보상보험	
2.8	3.6	3.3	3.6	3.9	4.3	4.2	4.6	5.4	7.7	고용보험	
-	-	-	-	-	-	-	-	0.5	1.6	장기요양보험	
13.4	10.1	9.1	9.5	9.0	8.1	7.3	7.5	6.9	7.9	소계	
10.4	6.8	5.8	6.3	6.0	5.2	4.6	4.6	4.3	4.6	법정퇴직금	
-	-	-	-	-	-	-	0.3	0.8	1.7	퇴직연금	
0.6	0.8	0.6	0.7	0.7	0.5	0.5	0.6	0.6	0.5	산전후 휴가급여	
1.5	1.5	1.7	1.4	1.3	1.2	1.0	0.9	0.8	0.6	유급질병 휴가급여	
0.8	0.9	1.1	1.2	1.1	1.2	1.1	1.1	0.5	0.5	민간복지서비스	

〈부표 16〉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단위: 십억원)

제도	세부제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합계	5,900	6,903	8,494	9,832	11,666	14,542	17,171	21,104	30,446	37,050
공공 ^주 부조	소계	599	662	738	863	885	1,042	1,266	1,548	1,960	2,856
	기초생활보장	599	662	738	863	885	1,042	1,266	1,548	1,960	2,856
	기초노령연금	-	-	-	-	-	-	-	-	-	-
사회보상	소계	355	485	524	555	621	711	790	859	968	980
	국가보훈	315	464	523	543	617	677	760	851	905	914
	재해구호	40	21	1	12	4	33	29	7	62	65
	북한이탈주민지원	-	-	-	-	-	1	1	1	1	1
	사할린동포	-	-	-	-	-	-	-	-	-	-
	고엽제, 위안부보호	-	-	-	-	-	-	-	-	-	-
	의사상자예우	-	-	-	-	-	-	-	-	-	-
사회복지서비스	소계	547	629	767	869	1,158	1,446	1,870	2,509	3,674	5,420
	시설보호	39	50	61	48	246	291	348	497	415	448
	재가복지	104	128	174	239	297	424	580	797	840	915
	근로복지	51	44	103	144	114	166	170	320	1,317	2,764
	보건의료	353	407	429	438	501	565	772	895	917	1,124
	주택보급	-	-	-	-	-	-	-	-	-	-
	교육복지	-	-	-	-	-	-	-	-	185	169
	교통통신 등 감면	-	-	-	-	-	-	-	-	-	-
사회보험	소계	3,896	4,539	5,752	6,744	7,985	10,068	11,798	13,793	18,992	24,412
	연금	1,235	1,571	2,141	2,785	3,453	4,482	4,728	5,511	8,945	13,052
	의료보장	2,122	2,266	2,679	3,106	3,553	4,450	5,691	6,608	7,486	8,648
	산업재해 보상보험	539	702	932	853	979	1,134	1,355	1,556	1,451	1,274
	고용보험	-	-	-	-	-	2	24	118	1,110	1,438
	장기요양보험	-	-	-	-	-	-	-	-	-	-
민간복지서비스	교통통신 감면	-	-	-	-	-	55	68	96	134	172
기업복지	소계	502	591	711	802	1,017	1,220	1,380	2,299	4,717	3,210
	법정퇴직금	359	424	521	597	797	984	1,091	1,872	4,226	2,606
	퇴직연금	-	-	-	-	-	-	-	-	-	-
	산전후 휴가급여	-	-	-	-	-	-	-	85	94	153
	유급질병 휴가급여	143	166	190	205	220	235	289	343	397	451

주: 의료급여, 긴급구호 등 포함.

〈부표 16〉 계속

(단위: 십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세부제도	제도
33,407	38,036	40,523	45,533	54,779	60,842	72,347	79,967	91,949	110,548	합계	
3,199	4,582	4,821	5,399	6,709	8,462	10,151	10,990	14,215	16,233	소계	공공 부조
3,199	4,582	4,821	5,399	6,709	8,462	10,151	10,990	11,972	12,822	기초생활보장	
-	-	-	-	-	-	-	-	2,243	3,412	기초노령연금	
1,051	1,169	1,613	1,682	1,630	1,756	2,045	2,128	2,280	2,502	소계	사회 보상
1,025	1,140	1,286	1,442	1,550	1,672	1,826	1,988	2,133	2,265	국가보훈	
19	10	299	200	35	28	168	79	61	156	재해구호	
7	16	25	36	42	50	43	52	66	65	북한이탈 주민지원	
-	-	-	-	-	-	-	-	9	8	사할린동포	
-	-	-	-	-	1	2	2	2	1	고엽제, 위안부보호	
	3	3	4	3	5	6	7	8	7	의사상자예우	
4,884	4,764	5,342	5,321	8,977	8,716	13,006	13,395	15,269	18,531	소계	사회 복지 서비스
545	715	446	458	752	161	1,004	758	3,727	4,338	시설보호	
1,152	1,357	2,138	2,548	2,755	3,129	4,874	5,536	4,830	5,130	재가복지	
1,862	913	856	366	320	269	248	252	143	204	근로복지	
1,119	1,402	1,545	1,548	1,519	1,808	2,266	2,659	2,742	3,510	보건의료	
-	-	-	-	3,161	2,776	3,763	3,159	2,168	3,621	주택보급	
206	377	357	401	470	573	851	1,031	1,083	1,137	교육복지	
-	-	-	-	-	-	-	-	567	581	교통통신 등 감면	
-	-	-	-	-	-	-	-	10	10	아동발달계좌	
19,808	23,695	25,046	28,792	32,517	36,955	41,891	47,445	53,806	64,513	소계	사회 보험
7,656	6,712	7,330	8,912	10,294	12,095	13,332	15,100	17,399	18,668	연금	
9,774	13,877	14,353	15,757	17,231	19,242	22,354	25,461	27,615	32,140	의료보장	
1,456	1,745	2,016	2,482	2,860	3,026	3,164	3,242	3,422	3,463	산업재해 보상보험	
922	1,361	1,347	1,641	2,132	2,592	3,041	3,642	4,945	8,512	고용보험	
-	-	-	-	-	-	-	-	425	1,731	장기요양보험	
272	348	430	525	617	715	803	915	439	557	교통통신 감면	민간 복지 서비스
4,193	3,479	3,269	3,816	4,329	4,240	4,453	5,093	5,940	8,211	소계	기업 복지
3,474	2,599	2,330	2,863	3,266	3,182	3,330	3,663	3,959	5,082	법정퇴직금	
-	-	-	-	-	-	-	276	779	1,910	퇴직연금	
212	309	260	321	362	307	366	459	506	526	산전후 휴가급여	
506	571	679	633	701	751	757	695	697	694	유급질병 휴가급여	

〈부표 17〉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제도	세부제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공공 ^주 부조	합계	-	17.0	23.0	15.8	18.7	24.7	18.1	22.9	44.3	21.7
	소계	-	10.4	11.6	16.9	2.6	17.7	21.5	22.3	26.6	45.7
	기초생활보장	-	10.4	11.6	16.9	2.6	17.7	21.5	22.3	26.6	45.7
	기초노령연금	-							-	-	-
사회보상	소계	-	36.6	8.0	5.9	11.9	14.5	11.1	8.7	12.7	1.2
	국가보훈	-	47.3	12.7	3.8	13.6	9.7	12.3	12.0	6.3	1.0
	재해구호	-	-47.5	-95.2	1,100.0	-66.7	725.0	-12.1	-75.9	785.7	4.8
	북한이탈 주민지원	-	-	-	-	-	-	-	-	-	-
	사할린동포	-							-	-	-
	고엽제, 위안부보호	-	-	-	-	-	-	-	-	-	-
	의사상자예우	-	-	-	-	-	-	-	-	-	-
사회복지서비스	소계	-	14.9	22.0	13.3	33.3	24.9	29.3	34.2	46.4	47.5
	시설보호	-	28.2	22.0	-21.3	412.5	18.3	19.6	42.8	-16.5	8.0
	재가복지	-	23.1	35.9	37.4	24.3	42.8	36.8	37.4	5.4	8.9
	근로복지	-	-13.7	134.1	39.8	-20.8	45.6	2.4	88.2	311.6	109.9
	보건의료	-	15.2	5.5	2.1	14.4	12.8	36.5	15.9	2.4	22.6
	주택보급	-	-	-	-	-	-	-	-	-	-
	교육복지	-	-	-	-	-	-	-	-	-	-8.6
	교통통신 등 감면	-							-	-	-
	아동발달계좌	-							-	-	-
사회보험	소계	-	16.5	26.7	17.2	18.4	26.1	17.2	16.9	37.7	28.5
	연금	-	27.2	36.3	30.1	24.0	29.8	5.5	16.6	62.3	45.9
	의료보장	-	6.8	18.3	15.9	14.4	25.3	27.9	16.1	13.3	15.5
	산업재해 보상보험	-	30.2	32.8	-8.5	14.8	15.8	19.5	14.8	-6.7	-12.2
	고용보험	-	-	-	-	-	-	1,100.0	391.7	840.7	29.5
	장기요양보험	-	-	-	-	-	-	-	-	-	-
민간 복지서비스	교통통신 감면	-	-	-	-	-	-	24.1	40.7	40.1	28.0
기업 복지	소계	-	17.6	20.4	12.8	26.7	19.9	13.1	66.7	105.1	-31.9
	법정퇴직금	-	18.0	22.9	14.6	33.4	23.5	10.8	71.6	125.8	-38.3
	퇴직연금	-	-	-	-	-	-	-	-	-	-
	산전후 휴가급여	-	-	-	-	-	-	-	-	10.6	63.2
	유급질병 휴가급여	-	16.7	14.3	7.9	7.3	6.8	23.0	18.7	15.7	13.6

주: 의료급여, 긴급구호 등 포함

〈부표 17〉 계속

(단위: 십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세부제도	제도
-9.8	13.9	6.5	12.4	20.3	11.1	18.9	10.5	15.0	20.2	합계	
12.0	43.2	5.2	12.0	24.3	26.1	20.0	8.3	29.3	14.2	소계	공공 부조
12.0	43.2	5.2	12.0	24.3	26.1	20.0	8.3	8.9	7.1	기초생활보장	
-	-	-	-	-	-	-	-	-	52.1	기초노령연금	
7.2	11.2	38.0	4.2	-3.1	7.7	16.5	4.1	7.1	9.8	소계	사회 보상
12.1	11.2	12.8	12.1	7.5	7.9	9.2	8.9	7.3	6.2	국가보훈	
-70.8	-47.4	2,890.0	-33.1	-82.5	-20.0	500.0	-53.0	-22.4	153.9	재해구호	
600.0	128.6	56.3	44.0	16.7	19.0	-14.0	20.9	26.6	-1.2	북한이탈 주민지원	
-	-	-	-	-	-	-	-	-	-9.3	사할린동포	
-	-	-	-	-	-	100.0	-	8.1	-31.4	고엽제, 위안부보호	
-	-	14.2	6.2	-10.3	47.1	25.5	25.4	4.1	-16.5	의사상자예우	
-9.9	-2.5	12.1	-0.4	68.7	-2.9	49.2	3.0	14.0	21.4	소계	사회 복지 서비스
21.7	31.2	-37.6	2.7	64.2	-78.6	523.6	-24.5	391.6	16.4	시설보호	
25.9	17.8	57.6	19.2	8.1	13.6	55.8	13.6	-12.8	6.2	재가복지	
-32.6	-51.0	-6.2	-57.2	-12.6	-15.9	-7.8	1.6	-43.3	42.6	근로복지	
-0.5	25.3	10.2	0.2	-1.9	19.1	25.4	17.3	3.2	28.0	보건의료	
-	-	-	-	-	-12.2	35.6	-16.1	-31.4	67.0	주택보급	
21.9	83.0	-5.3	12.3	17.2	21.9	48.5	21.2	5.0	5.0	교육복지	
-	-	-	-	-	-	-	-	-	2.5	교통통신 등 감면	
-	-	-	-	-	-	-	-	-	-0.3	아동발달계좌	
-18.9	19.6	5.7	15.0	12.9	13.6	13.4	13.3	13.4	19.9	소계	사회 보험
-41.3	-12.3	9.2	21.6	15.5	17.5	10.2	13.3	15.2	7.3	연금	
13.0	42.0	3.4	9.8	9.4	11.7	16.2	13.9	8.5	16.4	의료보장	
14.3	19.8	15.5	23.1	15.2	5.8	4.6	2.5	5.5	1.2	산업재해 보상보험	
-35.9	47.6	-1.0	21.8	29.9	21.6	17.3	19.8	35.8	72.1	고용보험	
-	-	-	-	-	-	-	-	-	306.9	장기요양보험	
58.2	27.9	23.9	21.9	17.5	15.8	12.3	14.0	-52.0	26.9	교통통신 감면	민간 복지 서비스
30.6	-17.0	-6.0	16.7	13.4	-2.1	5.0	14.4	16.6	38.2	소계	기업 복지
33.3	-25.2	-10.3	22.8	14.1	-2.6	4.6	10.0	8.1	28.4	법정퇴직금	
-	-	-	-	-	-	-	-	182.2	145.3	퇴직연금	
38.7	45.7	-15.8	23.2	12.7	-15.1	19.4	25.3	10.3	3.9	산전후 휴가급여	
12.2	12.9	18.8	-6.8	10.8	7.1	0.9	-8.2	0.3	-0.5	유급질병 휴가급여	

〈부표 18〉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단위: %)

제도	세부제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공공 ^주 부조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계	10.2	9.6	8.7	8.8	7.6	7.2	7.4	7.3	6.4	7.7
	기초생활보장	10.2	9.6	8.7	8.8	7.6	7.2	7.4	7.3	6.4	7.7
	기초노령연금								-	-	-
사회보상	소계	6.0	7.0	6.2	5.6	5.3	4.9	4.6	4.1	3.2	2.6
	국가보훈	5.3	6.7	6.2	5.5	5.3	4.7	4.4	4.0	3.0	2.5
	재해구호	0.7	0.3	0.0	0.1	0.0	0.2	0.2	0.0	0.2	0.2
	북한이탈 주민지원	-	-	-	-	-	0.0	0.0	0.0	0.0	0.0
	사할린동포								-	-	-
	고엽제, 위안부보호	-	-	-	-	-	-	-	-	-	-
	의사상자예우	-	-	-	-	-	-	-	-	-	-
사회복지서비스	소계	9.3	9.1	9.0	8.8	9.9	9.9	10.9	11.9	12.1	14.6
	시설보호	0.7	0.7	0.7	0.5	2.1	2.0	2.0	2.4	1.4	1.2
	재가복지	1.8	1.9	2.0	2.4	2.5	2.9	3.4	3.8	2.8	2.5
	근로복지	0.9	0.6	1.2	1.5	1.0	1.1	1.0	1.5	4.3	7.5
	보건의료	6.0	5.9	5.1	4.5	4.3	3.9	4.5	4.2	3.0	3.0
	주택보급	-	-	-	-	-	-	-	-	-	-
	교육복지	-	-	-	-	-	-	-	-	0.6	0.5
	교통통신 등 감면								-	-	-
	아동발달계좌								-	-	-
사회보험	소계	66.0	65.7	67.7	68.6	68.4	69.2	68.7	65.4	62.4	65.9
	연금	20.9	22.8	25.2	28.3	29.6	30.8	27.5	26.1	29.4	35.2
	의료보장	36.0	32.8	31.5	31.6	30.5	30.6	33.1	31.3	24.6	23.3
	산업재해 보상보험	9.1	10.2	11.0	8.7	8.4	7.8	7.9	7.4	4.8	3.4
	고용보험	-	-	-	-	-	0.0	0.1	0.6	3.6	3.9
	장기요양보험	-	-	-	-	-	-	-	-	-	-
민간복지서비스	교통통신 감면	-	-	-	-	-	0.4	0.4	0.5	0.4	0.5
기업복지	소계	8.5	8.6	8.4	8.2	8.7	8.4	8.0	10.9	15.5	8.7
	법정퇴직금	6.1	6.1	6.1	6.1	6.8	6.8	6.4	8.9	13.9	7.0
	퇴직연금	-	-	-	-	-	-	-	-	-	-
	산전후 휴가급여	-	-	-	-	-	-	-	0.4	0.3	0.4
	유급질병 휴가급여	2.4	2.4	2.2	2.1	1.9	1.6	1.7	1.6	1.3	1.2

주: 의료급여, 긴급구호 등 포함

〈부표 18〉 계속

(단위: 십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세부제도	제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계	
9.6	12.0	11.9	11.9	12.2	13.9	14.0	13.7	15.5	14.7	소계	공공 부조
9.6	12.0	11.9	11.9	12.2	13.9	14.0	13.7	13.0	11.6	기초생활보장	
-	-	-	-	-	-	-	-	2.4	3.1	기초노령연금	
3.1	3.1	4.0	3.7	3.0	2.9	2.8	2.7	2.5	2.3	소계	사회 보상
3.1	3.0	3.2	3.2	2.8	2.7	2.5	2.5	2.3	2.0	국가보훈	
0.1	0.0	0.7	0.4	0.1	0.0	0.2	0.1	0.1	0.1	재해구호	
0.0	0.0	0.1	0.1	0.1	0.1	0.1	0.1	0.1	0.1	북한이탈 주민지원	
-	-	-	-	-	-	-	-	0.0	0.0	사할린동포	
-	-	-	-	-	0.0	0.0	0.0	0.0	0.0	고엽제, 위안부보호	
-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의사상자예우	
14.6	12.5	13.2	11.7	16.4	14.3	18.0	16.8	16.6	16.8	소계	사회 복지 서비스
1.6	1.9	1.1	1.0	1.4	0.3	1.4	0.9	4.1	3.9	시설보호	
3.4	3.6	5.3	5.6	5.0	5.1	6.7	6.9	5.3	4.6	재가복지	
5.6	2.4	2.1	0.8	0.6	0.4	0.3	0.3	0.2	0.2	근로복지	
3.3	3.7	3.8	3.4	2.8	3.0	3.1	3.3	3.0	3.2	보건의료	
-	-	-	-	5.8	4.6	5.2	4.0	2.4	3.3	주택보급	
0.6	1.0	0.9	0.9	0.9	0.9	1.2	1.3	1.2	1.0	교육복지	
-	-	-	-	-	-	-	-	0.6	0.5	교통통신 등 감면	
-	-	-	-	-	-	-	-	0.0	0.0	아동발달계좌	
59.3	62.3	61.8	63.2	59.4	60.7	57.9	59.3	58.5	58.4	소계	사회 보험
22.9	17.6	18.1	19.6	18.8	19.9	18.4	18.9	18.9	16.9	연금	
29.3	36.5	35.4	34.6	31.5	31.6	30.9	31.8	30.0	29.1	의료보장	
4.4	4.6	5.0	5.5	5.2	5.0	4.4	4.1	3.7	3.1	산업재해 보상보험	
2.8	3.6	3.3	3.6	3.9	4.3	4.2	4.6	5.4	7.7	고용보험	
-	-	-	-	-	-	-	-	0.5	1.6	장기요양보험	
0.8	0.9	1.1	1.2	1.1	1.2	1.1	1.1	0.5	0.5	교통통신 감면	민간 복지 서비스
12.6	9.1	8.1	8.4	7.9	7.0	6.2	6.4	6.5	7.4	소계	기업 복지
10.4	6.8	5.8	6.3	6.0	5.2	4.6	4.6	4.3	4.6	법정퇴직금	
-	-	-	-	-	-	-	0.3	0.8	1.7	퇴직연금	
0.6	0.8	0.6	0.7	0.7	0.5	0.5	0.6	0.6	0.5	산전후 휴가급여	
1.5	1.5	1.7	1.4	1.3	1.2	1.0	0.9	0.8	0.6	유급질병 휴가급여	

〈부표 19〉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

(단위: 십억원)

구성항목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총사회복지지출	6,051	7,071	8,675	10,177	12,102	22,542
요소 GDP 대비%	3.54	3.40	3.67	3.79	3.87	6.17
총공공지출	5,398	6,312	7,783	9,029	10,649	13,268
총법정민간지출	502	591	711	802	1,017	1,274
총자발적민간지출	151	168	181	346	436	8,000
조세부담(-)	-	-	-	-	-	860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	-	-	-	44
간접세	-	-	-	-	-	816
조세혜택(+)	-	-	-	-	-	230
T1 ¹⁾	-	-	-	-	-	230
T2 ²⁾	-	-	-	-	-	-
순사회복지지출	6,051	7,071	8,675	10,177	12,102	21,911
요소 GDP 대비%	3.54	3.40	3.67	3.79	3.87	5.99
요소GDP(1~3)	170,787.7	207,680.6	236,603.7	268,273.3	312,687.8	365,536.2
1.피용자보수	85,280.6	106,260.2	120,836.1	137,107.7	160,659.8	190,905.0
2.영업잉여	64,975.6	77,688.2	88,706.4	99,735.4	116,060.7	127,157.8
3.고정자본소모	20,531.5	23,732.2	27,061.2	31,430.2	35,967.3	47,473.4

주: 1) 조세혜택제도(TBSPs)의 한 유형으로 근로가구 중 아동·노인·장애인인 있는 가구와 여성가구주 등에 대한 조세감면임.

2) 조세혜택제도(TBSPs)의 한 유형으로 민간급여와 같은 효과가 있는 지원금 또는 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임.

〈부표 19〉 계속

(단위: 십억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구성항목
26,523	31,378	39,425	48,590	45,673	51,095	55,075	총사회복지지출
6.48	7.01	8.76	9.98	8.57	8.91	8.71	요소 GDP 대비%
15,723	18,708	25,595	33,668	28,943	34,209	36,823	총공공지출
1,448	2,395	4,851	3,382	4,464	3,827	3,700	총법정민간지출
9,352	10,275	8,979	11,540	12,266	13,060	14,552	총자발적민간지출
1,019	1,333	2,028	2,575	2,244	2,534	2,894	조세부담(-)
43	66	109	119	131	244	239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976	1,267	1,919	2,456	2,113	2,290	2,655	간접세
568	627	576	712	1,660	2,024	3,990	조세혜택(+)
568	627	576	712	1,660	2,024	3,990	T1
-	-	-	-	-	-	-	T2
26,071	30,672	37,973	46,727	45,089	50,585	56,172	순사회복지지출
6.37	6.85	8.44	9.60	8.46	8.82	8.88	요소 GDP 대비%
409,158.1	447,849.6	449,924.7	486,722.2	532,815.4	573,531.7	632,506.4	요소GDP(1~3)
219,362.8	232,602.9	222,179.7	235,922.0	258,943.6	284,226.4	312,680.2	1.피용자보수
133,933.6	149,794.5	153,377.0	171,486.3	190,695.2	201,102.6	226,755.0	2.영업잉여
55,861.7	65,452.2	74,368.0	79,313.9	83,176.6	88,202.7	93,071.2	3.고정자본소모

〈부표 19〉 계속

(단위: 십억원)

구성항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사회복지지출	62,351	68,299	76,067	90,052	99,851	109,906	129,666
요소 GDP 대비%	9.22	9.30	9.90	11.19	11.58	12.13	13.70
총공공지출	41,192	49,833	55,888	67,092	73,959	85,569	101,780
총법정민간지출	4,341	4,946	4,954	5,256	6,008	6,379	8,769
총자발적민간지출	16,817	13,520	15,226	17,704	19,884	17,957	19,117
조세부담(-)	3,508	3,942	4,303	4,589	4,596	6,029	6,583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267	374	392	449	548	622	667
간접세	3,241	3,568	3,911	4,140	4,049	5,408	5,916
조세혜택(+)	4,709	4,840	5,659	6,107	7,121	10,848	9,792
T1	4,709	4,840	5,659	6,107	7,121	10,848	9,792
T2	-	-	-	-	-	-	-
순사회복지지출	63,551	69,196	77,423	91,569	102,375	114,724	132,875
요소 GDP 대비%	9.40	9.42	10.08	11.38	11.87	12.66	14.04
요소GDP(1~3)	675,946.8	734,544.8	768,312.9	804,771.3	862,453.9	906,198.2	946,383.8
1.피용자보수	340,921.5	369,205.3	396,337.9	419,926.8	448,993.8	474,953.8	493,685.7
2.영업임여	235,294.5	258,345.4	258,129.3	264,450.7	284,555.9	295,368.0	310,604.0
3.고정자본소모	99,730.8	106,994.1	113,845.7	120,393.8	128,904.2	135,876.4	142,094.1

〈부표 20〉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구성항목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총사회복지지출	-	16.85	22.68	17.32	18.91	86.26	17.66	18.31	25.64	23.25
요소 GDP 대비%	-	-3.91	7.68	3.47	2.02	59.33	5.12	8.09	25.07	13.93
총공공지출	-	16.93	23.29	16.02	17.94	24.59	18.51	18.98	36.81	31.54
총법정민간지출	-	17.61	20.44	12.82	26.74	25.31	13.60	65.45	102.54	-30.28
총자발적민간지출	-	11.36	7.74	90.89	26.07	1,735.31	16.90	9.87	-12.61	28.53
조세부담(-)	-	-	-	-	-	-	18.48	30.78	52.15	26.97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	-	-	-	-	-3.24	54.84	64.28	8.85
간접세	-	-	-	-	-	-	19.66	29.72	51.51	28.00
조세혜택(+)	-	-	-	-	-	-	147.25	10.43	-8.10	23.56
T1	-	-	-	-	-	-	147.25	10.43	-8.10	23.56
T2	-	-	-	-	-	-	-	-	-	-
순사회복지지출	-	16.85	22.68	17.32	18.91	81.05	18.99	17.65	23.80	23.05
요소 GDP 대비 %	-	-3.91	7.68	3.47	2.02	54.88	6.30	7.48	23.23	13.75

〈부표 20〉 계속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구성항목
-6.00	11.87	7.79	13.21	9.54	11.37	18.38	10.88	10.07	17.98	총사회복지지출
-14.13	3.93	-2.26	5.93	0.80	6.48	13.02	3.47	4.76	12.97	요소 GDP 대비%
-14.03	18.19	7.64	11.86	20.98	12.15	20.05	10.24	15.70	18.94	총공공지출
32.00	-14.28	-3.32	17.33	13.93	0.17	6.09	14.31	6.18	37.45	총법정민간지출
6.29	6.47	11.43	15.57	-19.61	12.62	16.28	12.31	-9.69	6.46	총자발적민간지출
-12.87	12.95	14.19	21.24	12.37	9.15	6.64	0.16	31.18	9.18	조세부담(-)
10.15	86.36	-1.94	11.81	39.95	4.92	14.40	21.95	13.53	7.33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13.98	8.40	15.91	22.08	10.10	9.60	5.86	-2.20	33.56	9.39	간접세
133.16	21.97	97.10	18.02	2.77	16.93	7.91	16.61	52.35	-9.73	조세혜택(+)
133.16	21.97	97.10	18.02	2.77	16.93	7.91	16.61	52.35	-9.73	T1
-	-	-	-	-	-	-	-	-	-	T2
-3.50	12.19	11.04	13.14	8.88	11.89	18.27	11.80	12.06	15.82	순사회복지지출
-11.85	4.22	0.69	5.87	0.20	6.97	12.91	4.32	6.65	10.90	요소 GDP 대비 %

〈부표 21〉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단위: %)

구성항목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총사회복지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공공지출	89.2	89.3	89.7	88.7	88.0	58.9	59.3	59.6	64.9	69.3
총법정민간지출	8.3	8.4	8.2	7.9	8.4	5.7	5.5	7.6	12.3	7.0
총자발적민간지출	2.5	2.4	2.1	3.4	3.6	35.5	35.3	32.7	22.8	23.8
조세부담(-)	-	-	-	-	-	3.8	3.8	4.2	5.1	5.3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	-	-	-	0.2	0.2	0.2	0.3	0.2
간접세	-	-	-	-	-	3.6	3.7	4.0	4.9	5.1
조세혜택(+)	-	-	-	-	-	1.0	2.1	2.0	1.5	1.5
T1	-	-	-	-	-	1.0	2.1	2.0	1.5	1.5
T2	-	-	-	-	-	-	-	-	-	-
순사회복지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97.2	98.3	97.7	96.3	96.2

〈부표 21〉 계속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구성항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사회복지지출
63.4	67.0	66.9	66.1	73.0	73.5	74.5	74.1	77.9	78.5	총공공지출
9.8	7.5	6.7	7.0	7.2	6.5	5.8	6.0	5.8	6.8	총법정민간지출
26.9	25.6	26.4	27.0	19.8	20.0	19.7	19.9	16.3	14.7	총자발적민간지출
4.9	5.0	5.3	5.6	5.8	5.7	5.1	4.6	5.5	5.1	조세부담(-)
0.3	0.5	0.4	0.4	0.5	0.5	0.5	0.5	0.6	0.5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4.6	4.5	4.8	5.2	5.2	5.1	4.6	4.1	4.9	4.6	간접세
3.6	4.0	7.2	7.6	7.1	7.4	6.8	7.1	9.9	7.6	조세혜택(+)
3.6	4.0	7.2	7.6	7.1	7.4	6.8	7.1	9.9	7.6	T1
-	-	-	-	-	-	-	-	-	-	T2
98.7	99.0	102.0	101.9	101.3	101.8	101.7	102.5	104.4	102.5	순사회복지지출

〈부표 22〉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단위: 십억원, 경상GDP 대비%)

연도	GDP	사회지출	공공	민간	사회지출	공공	민간
1990	191,383	5,900	5,398	502	3.08	2.82	0.26
1991	231,428	6,903	6,312	591	2.98	2.73	0.26
1992	263,993	8,494	7,783	711	3.22	2.95	0.27
1993	298,762	9,832	9,029	802	3.29	3.02	0.27
1994	349,973	11,666	10,649	1,017	3.33	3.04	0.29
1995	409,654	14,542	13,268	1,274	3.55	3.24	0.31
1996	460,953	17,171	15,723	1,448	3.73	3.41	0.31
1997	506,314	21,104	18,708	2,395	4.17	3.70	0.47
1998	501,027	30,446	25,595	4,851	6.08	5.11	0.97
1999	549,005	37,050	33,668	3,382	6.75	6.13	0.62
2000	603,236	33,407	28,943	4,464	5.54	4.80	0.74
2001	651,415	38,036	34,209	3,827	5.84	5.25	0.59
2002	720,539	40,523	36,823	3,700	5.62	5.11	0.51
2003	767,114	45,533	41,192	4,341	5.94	5.37	0.57
2004	826,893	54,779	49,833	4,946	6.62	6.03	0.60
2005	865,241	60,842	55,888	4,954	7.03	6.46	0.57
2006	908,744	72,347	67,092	5,256	7.96	7.38	0.58
2007	975,013	79,967	73,959	6,008	8.20	7.59	0.62
2008	1,026,452	91,949	85,569	6,379	8.96	8.34	0.62
2009	1,065,037	110,548	101,780	8,769	10.38	9.56	0.82
1990~2009년 평균증가율	9.5	16.7	16.7	16.2			
2000~2009년 평균증가율	6.5	14.2	15.0	7.8			

〈부표 23〉 공공사회복지지출(2007)

(단위: 경상GDP 대비%)

국가명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ALMP ¹⁾	실업	주거	기타	계
한국	2007	1.61	0.25	0.55	3.52	0.50	0.13	0.25		0.77	7.59
	2009	2.25	0.27	0.60	4.03	0.81	0.40	0.39		0.81	9.56
호주		4.31	0.18	2.25	5.74	2.45	0.30	0.41	0.29	0.09	16.02
오스트리아		10.74	1.95	2.33	6.80	2.60	0.68	0.92	0.10	0.29	26.42
벨기에		7.08	1.91	2.34	7.32	2.56	1.22	3.12	0.15	0.65	26.35
캐나다		3.80	0.39	0.90	7.01	0.96	0.29	0.56	0.39	2.56	16.86
칠레		4.49	0.67	0.66	3.66	0.81	0.26	0.01	0.00	0.00	10.56
체코공화국		6.91	0.75	2.35	5.76	1.99	0.25	0.59	0.06	0.15	18.79
덴마크		7.28	0.01	4.35	6.51	3.29	1.31	1.92	0.69	0.74	26.10
에스토니아		5.22	0.10	1.82	3.96	1.67	0.05	0.09	0.02	0.07	13.00
핀란드		8.40	0.83	3.57	6.11	2.83	0.87	1.55	0.24	0.55	24.93
프랑스		11.06	1.75	1.75	7.49	3.00	0.90	1.36	0.76	0.35	28.40
독일		8.65	2.06	1.89	7.85	1.83	0.72	1.38	0.61	0.17	25.16
그리스		10.02	2.00	0.89	5.86	1.09	0.17	0.46	0.46	0.39	21.33
헝가리		8.31	1.34	2.66	5.25	3.50	0.31	0.67	0.91	0.15	23.09
아이스란드		2.30	0.02	2.23	5.75	2.86	0.05	0.19	0.61	0.58	14.59
아일랜드		3.11	0.81	1.75	5.80	2.59	0.64	0.98	0.28	0.36	16.31
이스라엘		4.33	0.73	2.89	4.32	1.99	0.14	0.29	0.01	0.83	15.52
이탈리아		11.74	2.41	1.73	6.65	1.40	0.45	0.44	0.02	0.03	24.86
일본		8.79	1.30	0.79	6.30	0.79	0.16	0.31		0.26	18.70
룩셈부르크		4.85	1.71	2.74	6.36	3.13	0.47	0.85	0.15	0.40	20.65
멕시코		1.15	0.25	0.06	2.65	1.00	0.02		1.25	0.84	7.21
네덜란드		5.26	0.25	2.94	5.95	1.99	1.08	1.14	0.38	1.10	20.08
뉴질랜드		4.18	0.14	2.47	7.08	3.05	0.35	0.23	0.76	0.14	18.39
노르웨이		6.22	0.26	4.29	5.71	2.81	0.56	0.22	0.14	0.60	20.80
폴란드		8.72	1.98	2.38	4.56	1.30	0.50	0.31	0.09	0.17	20.01
포르투갈		9.23	1.60	2.13	6.64	1.15	0.51	1.00	0.00	0.25	22.52
슬로바키아공화국		5.37	0.83	1.47	5.18	1.79	0.22	0.37	0.00	0.47	15.69
슬로베니아		8.17	1.54	2.06	5.61	1.80	0.20	0.39	0.02	0.48	20.26
스페인		6.54	1.92	2.53	6.06	1.23	0.73	2.12	0.18	0.27	21.58
스웨덴		8.98	0.54	5.02	6.58	3.35	1.10	0.67	0.47	0.59	27.30
스위스		6.30	0.36	3.00	5.60	1.26	0.59	0.62	0.12	0.68	18.52
터키		5.02	1.21	0.13	4.10	0.01	0.00	0.00			10.48
영국		5.77	0.14	2.44	6.84	3.24	0.32	0.20	1.43	0.17	20.54
미국		5.30	0.70	1.31	7.24	0.66	0.11	0.33		0.55	16.20
OECD평균		6.45	0.97	2.14	5.82	1.95	0.46			0.70	19.26

주: 1) ALMP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뜻함.

〈부표 24〉 법정사회복지지출(2007)

(단위: 경상GDP 대비%)

국가명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ALMP ¹⁾	실업	주거	기타	계
한국	2007	0.44		0.12		0.05				0.00	0.62
	2009	0.66		0.10		0.05				0.01	0.82
호주		0.48									0.48
오스트리아				0.84							0.84
벨기에		0.00	0.00	0.00		0.00				0.00	0.00
캐나다											
칠레		0.93	0.18	0.10	0.00	0.00	0.00	0.00	0.00	0.00	1.20
체코공화국		0.20	0.01	0.01						0.02	0.24
덴마크				0.25							0.25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0.10	0.10	0.14		0.00					0.35
독일				1.03		0.05					1.08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0.01	1.55							1.55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1.14	0.03	0.33		0.06					1.55
일본		0.38		0.17							0.55
룩셈부르크				0.28							0.28
멕시코											
네덜란드		0.00	0.00	0.62							0.63
뉴질랜드											
노르웨이				1.23							1.23
폴란드											
포르투갈				0.36							0.36
슬로바키아공화국		0.07		0.04		0.04					0.15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0.39							0.39
스위스		5.25	0.70	1.13		0.11					7.19
터키											
영국		0.57		0.03				0.18			0.78
미국				0.16	0.15						0.31

주: 1) ALMP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뜻함.

〈부표 25〉 사회복지지출(2007)

(단위: 경상GDP 대비%)

국가명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ALMP ¹⁾	실업	주거	기타	계	
한국	2007	2.05	0.25	0.68	3.52	0.55	0.13	0.25		0.78	8.20
	2009	2.91	0.27	0.70	4.03	0.86	0.40	0.39		0.82	10.38
호주	4.79	0.18	2.25	5.74	2.45	0.30	0.41	0.29	0.09	16.50	
오스트리아	10.74	1.95	3.17	6.80	2.60	0.68	0.92	0.10	0.29	27.26	
벨기에	7.08	1.91	2.34	7.32	2.56	1.22	3.12	0.15	0.65	26.35	
캐나다	3.80	0.39	0.90	7.01	0.96	0.29	0.56	0.39	2.56	16.86	
칠레	5.42	0.85	0.76	3.66	0.81	0.26	0.01	0.00	0.00	11.76	
체코공화국	7.10	0.76	2.35	5.76	1.99	0.25	0.59	0.06	0.17	19.03	
덴마크	7.28	0.01	4.60	6.51	3.29	1.31	1.92	0.69	0.74	26.35	
에스토니아	5.22	0.10	1.82	3.96	1.67	0.05	0.09	0.02	0.07	13.00	
핀란드	8.40	0.83	3.57	6.11	2.83	0.87	1.55	0.24	0.55	24.93	
프랑스	11.16	1.85	1.90	7.49	3.00	0.90	1.36	0.76	0.35	28.75	
독일	8.65	2.06	2.92	7.85	1.88	0.72	1.38	0.61	0.17	26.24	
그리스	10.02	2.00	0.89	5.86	1.09	0.17	0.46	0.46	0.39	21.33	
헝가리	8.31	1.34	2.66	5.25	3.50	0.31	0.67	0.91	0.15	23.09	
아이스란드	2.30	0.03	3.78	5.75	2.86	0.05	0.19	0.61	0.58	16.14	
아일랜드	3.11	0.81	1.75	5.80	2.59	0.64	0.98	0.28	0.36	16.31	
이스라엘	4.33	0.73	2.89	4.32	1.99	0.14	0.29	0.01	0.83	15.52	
이탈리아	12.88	2.43	2.06	6.65	1.45	0.45	0.44	0.02	0.03	26.41	
일본	9.17	1.30	0.96	6.30	0.79	0.16	0.31		0.26	19.26	
룩셈부르크	4.85	1.71	3.01	6.36	3.13	0.47	0.85	0.15	0.40	20.92	
멕시코	1.15	0.25	0.06	2.65	1.00	0.02		1.25	0.84	7.21	
네덜란드	5.26	0.25	3.56	5.95	1.99	1.08	1.14	0.38	1.10	20.71	
뉴질랜드	4.18	0.14	2.47	7.08	3.05	0.35	0.23	0.76	0.14	18.39	
노르웨이	6.22	0.26	5.51	5.71	2.81	0.56	0.22	0.14	0.60	22.02	
폴란드	8.72	1.98	2.38	4.56	1.30	0.50	0.31	0.09	0.17	20.01	
포르투갈	9.23	1.60	2.50	6.64	1.15	0.51	1.00	0.00	0.25	22.89	
슬로바키아공화국	5.44	0.83	1.51	5.18	1.82	0.22	0.37	0.00	0.47	15.84	
슬로베니아	8.17	1.54	2.06	5.61	1.80	0.20	0.39	0.02	0.48	20.26	
스페인	6.54	1.92	2.53	6.06	1.23	0.73	2.12	0.18	0.27	21.58	
스웨덴	8.98	0.54	5.41	6.58	3.35	1.10	0.67	0.47	0.59	27.70	
스위스	11.56	1.06	4.12	5.60	1.37	0.59	0.62	0.12	0.68	25.71	
터키	5.02	1.21	0.13	4.10	0.01	0.00	0.00			10.48	
영국	6.34	0.14	2.47	6.84	3.24	0.32	0.39	1.43	0.17	21.32	
미국	5.30	0.70	1.47	7.38	0.66	0.11	0.33		0.55	16.50	
OECD평균	6.73	1.00	2.39	5.82	1.96	0.46			0.70	19.84	

주: 1) ALMP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뜻함.

〈부표 26〉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2007)

(단위: 경상GDP 대비%)

국가명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ALMP ¹⁾	실업	주거	기타	계
한국	2007	0.00		0.00	0.25					1.78	2.04
	2009	0.00		0.00	0.36					1.43	1.79
호주		2.62			0.67					0.01	3.29
오스트리아		0.52			0.46						0.99
벨기에		2.80		0.55	0.49					0.91	4.74
캐나다		4.05			1.25						5.31
칠레											
체코공화국				0.06	0.02					0.08	0.15
덴마크		2.17			0.16						2.33
에스토니아					0.02						0.02
핀란드		0.19		0.62	0.17					0.08	1.06
프랑스		0.07		0.51	1.44					0.55	2.57
독일		0.75			0.96					0.08	1.79
그리스		0.36		0.51						0.66	1.52
헝가리				0.03	0.15					0.01	0.19
아이스란드		2.49		0.61	0.00					0.49	3.59
아일랜드		0.90			0.62						1.51
이스라엘					0.47						0.47
이탈리아		0.17		0.01	0.09					0.30	0.57
일본		2.89			0.20						3.09
룩셈부르크		0.34		0.05	0.09					0.18	0.66
멕시코					0.22						0.22
네덜란드		3.53		0.49	0.55					1.70	6.28
뉴질랜드					0.44						0.44
노르웨이		0.58		0.21							0.79
폴란드					0.04						0.04
포르투갈		0.17		0.12	0.40					0.82	1.51
슬로바키아공화국		0.44		0.13						0.28	0.85
슬로베니아		0.02		0.00	1.01					0.00	1.03
스페인		0.00			0.50						0.50
스웨덴		2.11		0.31	0.01					0.06	2.49
스위스		0.01		0.03	0.98					0.05	1.08
터키											
영국		3.92		0.39	0.08					0.62	5.01
미국		4.34		0.32	5.49					0.01	10.18

주: 1) ALMP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뜻함.

〈부표 27〉 총사회복지지출(2007)

(단위: 경상GDP 대비%)

국가명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ALMP ¹⁾	실업	주거	기타	계
한국	2007	2.05	0.25	0.68	3.77	0.55	0.13	0.25		2.56	10.24
	2009	2.91	0.27	0.71	4.39	0.86	0.40	0.39		2.25	12.17
호주		7.41	0.18	2.25	6.41	2.45	0.30	0.41	0.29	0.10	19.79
오스트리아		11.27	1.95	3.17	7.27	2.60	0.68	0.92	0.10	0.29	28.24
벨기에		9.88	1.91	2.89	7.81	2.56	1.22	3.12	0.15	1.56	31.09
캐나다		7.86	0.39	0.90	8.26	0.96	0.29	0.56	0.39	2.56	22.16
칠레		5.42	0.85	0.76	3.66	0.81	0.26	0.01	0.00	0.00	11.76
체코공화국		7.10	0.76	2.41	5.77	1.99	0.25	0.59	0.06	0.25	19.18
덴마크		9.45	0.01	4.60	6.67	3.29	1.31	1.92	0.69	0.74	28.68
에스토니아		5.22	0.10	1.82	3.97	1.67	0.05	0.09	0.02	0.07	13.02
핀란드		8.59	0.83	4.19	6.28	2.83	0.87	1.55	0.24	0.63	25.99
프랑스		11.22	1.85	2.41	8.93	3.00	0.90	1.36	0.76	0.90	31.32
독일		9.40	2.06	2.92	8.81	1.88	0.72	1.38	0.61	0.25	28.03
그리스		10.38	2.00	1.40	5.86	1.09	0.17	0.46	0.46	1.05	22.85
헝가리		8.31	1.34	2.68	5.40	3.50	0.31	0.67	0.91	0.16	23.28
아일랜드		4.79	0.03	4.39	5.75	2.86	0.05	0.19	0.61	1.07	19.73
아일랜드		4.01	0.81	1.75	6.42	2.59	0.64	0.98	0.28	0.36	17.82
이스라엘		4.33	0.73	2.89	4.78	1.99	0.14	0.29	0.01	0.83	15.99
이탈리아		13.05	2.43	2.07	6.73	1.45	0.45	0.44	0.02	0.33	26.98
일본		12.06	1.30	0.96	6.51	0.79	0.16	0.31	0.00	0.26	22.35
룩셈부르크		5.19	1.71	3.06	6.44	3.13	0.47	0.85	0.15	0.58	21.59
멕시코		1.15	0.25	0.06	2.87	1.00	0.02	0.00	1.25	0.84	7.43
네덜란드		8.80	0.25	4.05	6.50	1.99	1.08	1.14	0.38	2.80	26.98
뉴질랜드		4.18	0.14	2.47	7.52	3.05	0.35	0.23	0.76	0.14	18.83
노르웨이		6.80	0.26	5.72	5.71	2.81	0.56	0.22	0.14	0.60	22.81
폴란드		8.72	1.98	2.38	4.59	1.30	0.50	0.31	0.09	0.17	20.04
포르투갈		9.40	1.60	2.62	7.04	1.15	0.51	1.00	0.00	1.07	24.40
슬로바키아공화국		5.88	0.83	1.64	5.18	1.82	0.22	0.37	0.00	0.74	16.68
슬로베니아		8.18	1.54	2.06	6.62	1.80	0.20	0.39	0.02	0.49	21.29
스페인		6.54	1.92	2.53	6.56	1.23	0.73	2.12	0.18	0.27	22.07
스웨덴		11.09	0.54	5.72	6.59	3.35	1.10	0.67	0.47	0.65	30.18
스위스		11.57	1.06	4.16	6.57	1.37	0.59	0.62	0.12	0.73	26.78
터키		5.02	1.21	0.13	4.10	0.01	0.00	0.00	0.00	0.00	10.48
영국		10.26	0.14	2.85	6.92	3.24	0.32	0.39	1.43	0.79	26.33
미국		9.65	0.70	1.79	12.88	0.66	0.11	0.33	0.00	0.56	26.68

주: 1) ALMP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뜻함.

〈부표 28〉 순사회복지지출(GDP대비,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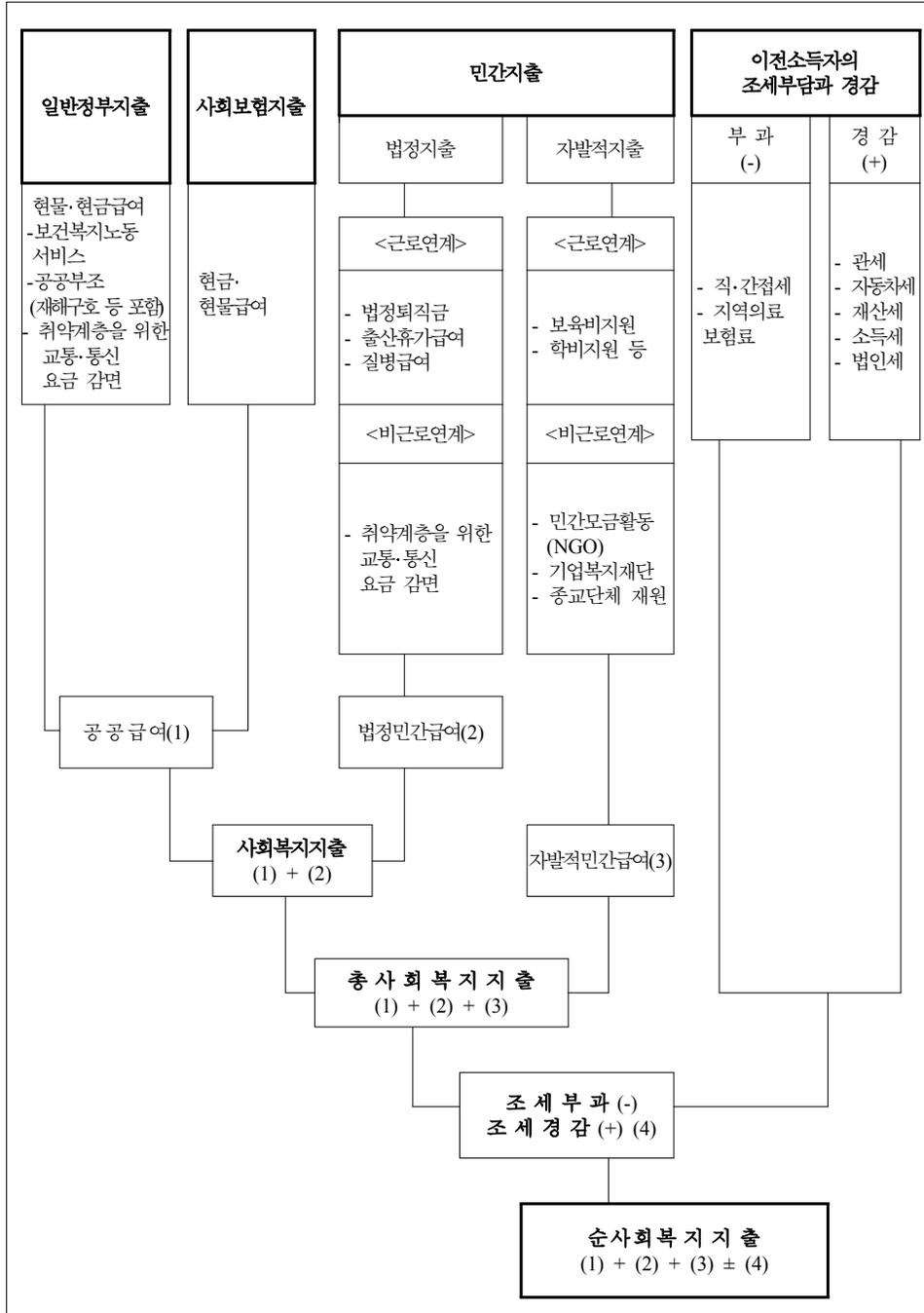
(단위: 요소 GDP 대비%)

국가명		총공공 지출	순공공 지출	총법정 민간지출	순법정 민간지출	총자발적 민간지출	순자발적 민간지출	순사회 복지지출
한국	2007	8.58	8.97	0.70	0.59	2.31	2.31	11.87
	2009	10.75	11.23	0.93	0.79	2.02	2.02	14.04
호주		17.9	17.9	0.5	0.3	3.7	2.9	20.9
오스트리아		29.6	24.2	0.9	0.6	1.1	0.9	25.8
벨기에		29.7	26.2	0.0	0.0	5.3	4.3	30.5
캐나다		18.9	19.4	0.0	0.0	5.9	4.8	24.0
체코공화국		20.7	19.0	0.3	0.2	0.2	0.2	19.3
덴마크		30.8	23.7	0.3	0.1	2.8	1.4	25.3
핀란드		28.2	22.6	0.0	0.0	1.2	0.8	23.4
프랑스		32.8	29.6	0.4	0.3	3.0	2.8	32.7
독일		28.4	26.5	1.2	0.7	2.0	1.7	28.4
아이슬란드		17.5	15.5	1.9	1.3	4.3	2.9	19.7
아일랜드		18.6	16.8	0.0	0.0	1.7	1.5	18.0
이탈리아		28.8	24.4	1.8	1.4	0.7	0.6	26.4
일본		20.3	19.7	0.6	0.5	3.4	3.2	23.4
룩셈부르크		23.2	18.9	0.3	0.2	0.7	0.5	19.6
멕시코		8.0	8.9	0.0	0.0	0.2	0.2	9.0
네덜란드		22.7	20.0	0.7	0.4	7.1	5.0	25.3
뉴질랜드		20.9	18.4	0.0	0.0	0.5	0.5	18.8
노르웨이		23.3	19.2	1.4	0.8	0.9	0.5	20.5
폴란드		23.1	18.8	0.0	0.0	0.0	0.0	18.8
포르투갈		25.6	23.2	0.5	0.4	1.5	1.5	25.0
슬로바키아공화국		17.4	15.8	0.2	0.2	0.9	0.8	16.7
스페인		24.1	21.6	0.0	0.0	0.6	0.6	21.8
스웨덴		32.1	25.7	0.5	0.3	2.9	1.8	27.8
터키		12.1	11.3	0.0	0.0	0.0	0.0	11.3
영국		23.3	22.0	0.9	0.7	5.7	4.4	26.9
미국		17.4	18.6	0.3	0.3	10.9	10.1	27.5
OECD평균		22.4	19.9	0.5	0.3	2.6	2.1	22.2

자료: OECD홈페이지(www.oecd.org).

부록 2. 부도

[부도 1] 순사회복지지출 구성도: 추계과정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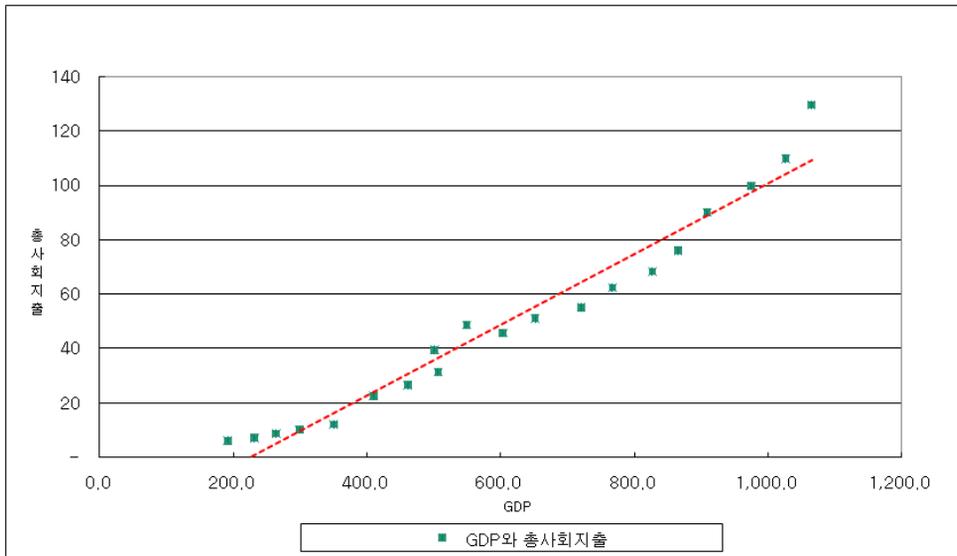


주: 1)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수령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임.

2) 간접세액은 총사회복지지출에서 현물급여를 제외하고 평균간접세율을 곱하여 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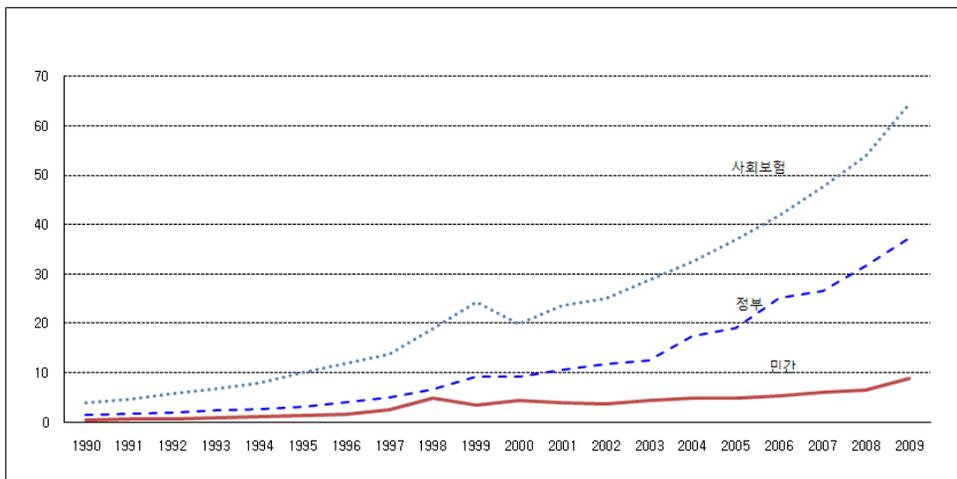
[부도 2] GDP와 총사회복지지출 추이

(단위: 조원)



[부도 3] 자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단위: 조원)



부록 3. 사회복지시설실태조사표



승인(협의)번호

제11777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조사표

(자발적민간부문 : 사회복지시설용)

조사표 일련번호				시·도		시·군·구	

인사말씀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따른 복지관련 통계들을 생산하여 국내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OECD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자발적 민간복지지출'을 파악하고자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한국의 사회복지통계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거 통계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 본 조사표는 도착 후 5일 이내에 작성하여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담당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윤선미, 임수진, 문혜정 연구원
(전화: 02-380-8379, 02-380-8380/ 팩스: 02-382-4581/ 이메일: socx@kihasa.re.kr)
(122-705)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68 본관 307호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2. 귀 시설이 **생활시설**인 경우, 다음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합니까?

구 분		시 설 유 형		
1	노인복지	① 양로시설 ^{주)} ④ 노인요양시설 ^{주)}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③ 노인복지주택 ⑥ 기타
2	아동복지	① 아동양육시설 ④ 아동직업훈련시설 ⑦ 공동생활가정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⑤ 자립지원시설 ⑧ 종합아동복지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⑥ 아동단기보호시설 ⑨ 기타
3	장애인복지	① 지체장애인시설 ④ 지적장애인시설 ⑦ 기타	② 시각장애인시설 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③ 청각언어장애인시설 ⑥ 장애영유아생활시설
4	청소년복지	① 청소년쉼터	② 기타	
5	여성가족 복지	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④ 모(부)자보호시설 ⑦ 공동생활가정	②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⑤ 모(부)자자립시설 ⑧ 일시보호시설	③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⑥ 미혼모(자)시설 ⑨ 기타
6	부랑인 및 노숙인복지	① 부랑인시설	② 기타	
7	정신보건	① 정신요양시설	②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③ 기타
8	결핵·한센	① 결핵시설	② 한센시설	

주: '08.4.4일 이전 설치 신고되어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양로시설과 노인요양 시설 중 무료 및 실비 시설 포함

9-2-1. 생활자 정원과 월평균 생활자 수는 몇 명입니까?

- 1) 생활자 정원 _____ 명
- 2) 월평균 생활자수 _____ 명
- 3) 생활자 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월평균 수 _____ 명

※ 월평균생활자 수 = 지난 1년간(1.1 - 12.31) 생활자 수/12

Ⅱ.수 입 조 사 표

(전년도 1.1~12.31)

재 원 유 형		예 시	2009년 (단위: 천원)
합 계		수입조사표(6쪽)와 지출조사표(7쪽)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정 부 지원금	계		
	국 비	중앙정부 지원금(시설운영비)	
	지방비	지방정부 지원금(시설운영비)	
	기 금	복권기금(시설운영비)	
법 인 유입금		계	
	법 인 지원금	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원금	
	예당의 지원금	교회, 성당, 영문, 사찰, 교당 등으로부터 지원금	
	교구의 지원금	노회, 교구, 지방본영, 교구 본사 등으로부터의 지원금	
	종 단 본부의 지원금	총회, 주교회의, 대한본영, 총무원, 중앙총부 등으로부터의 지원금	
후원금		계	
	개 인	개인의 후원금	
	종교기관	종교기관의 후원금	
	기업, 재단	기업이나 기업재단의 후원금	
	공공기관 (시·군·구, 학교 등)	공공기관의 자발적 후원금	
	민간모금 단 체	공동모금회, 한국복지재단, 이름다운 재단 등 민간모금 단체의 후원금	
	기 타		
개 인 부담금		이용자 부담금 (해당시설)	- 생활시설에 기거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부담금 - 행사(교육)비용 중 일부 이용자부담금
잡 수 익		- 불용품 매각대 - 기타 예금이자수입 등	
이 월 금		전년도이월금	

주) 정부지원금을 '국고'와 '지방비'로 구분 작성이 어려운 경우 '계'란에 일괄 기입하여 주십시오.

Ⅲ. 지 출 조 사 표
(전년도 1.1~12.31)

지 출 비 목		2009년 (단위: 천원)
합 계 수입조사표(6쪽)와 지출조사표(7쪽)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계	
시설운영비	계	
	직원의 인건비	
	운영비 (임대료, 전기·수도 및 시설운영비, 상급단체 회비, 제품생산지원비 등)	
	기 타()	
	반 환 금	
내년도 이월금		

205

부 록

※ 시설 주소 _____ 시(도) _____ 구(군) _____ 동(면) _____ 번지

※ 조사표 작성자 성명: _____ (전 화: _____ - _____ - _____)

※ 조사표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주십시오.

- 감사 합니다 -

부록 4. OECD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OECD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해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번역하였음.

- OECD(2007). *The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 Interpretative Guide SOCX 1980-2003*.
- Adema, W. & Ladaïque, Maxim (2005). Net social expenditure, 2005 edition-More comprehensive measures of social support.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9.
- Adema, W. & Ladaïque, Maxim (2009). How expensive is the welfare state? - Gross and net indicators in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92.

1. 무엇이 사회복지지출인가?(What is social expenditure?)

- OECD에서 정의하는 사회복지지출이란 다음과 같음. 급여는 공사 기관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하며, 재정적인 기여에 목적이 있고, 가구와 개인은 그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처해있는 동안에 지원을 받음. 이러한 급여나 재정 기여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접적인 지급이 되어서는 안되며, 개인적인 계약이나 이전에 의한 것도 안됨.
 - 따라서 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급여의 총합이며, 사회프로그램에 의해서 재원이 조달되는 가구의 기여금이나 다른 급여는 포함하지 않음. 그러한 급여는 ‘사회적 기여’로 기여자 입장에서 지출 항목으로 고려됨. 사회복지지출의 정의에 따라 급여는 기관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하므로 가구간 이전은 포함하지 않음. 사회복지지출은 또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지 않으며 교섭에 의한 임금도 포함하지 않음. 교통, 휴일수당, 고용주의 비용은 고용주 비용으로 계산됨.
- 사회적 급여는 현금 급여(예, 연금, 출산, 휴가금,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예, 보육, 노인과 장애인 돌봄서비스)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세 수단을 포함(예, 유자녀 가족에 대한 조세지출이나 사적의료플랜의 기여금에 대한 우호적인 조세혜택). 사회적인가, 사회적이지 않은가에 대한 구분은 두 가지 범주에 따름. 첫째, 급여의 사회적 목적이 있는

가와 급여가 개인간 재분배 혹은 의무적인 참여를 규정하는가임. OECD SOCX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를 9개의 정책 영역으로 구분함(노령, 유족, 근로무능력관련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 사회정책 영역).

- 저축의 경우 퇴직자의 소득 지원이라는 목적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만 일반적인 저축은 사회적이 아님.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조세 혜택이 있으나 주로 모기지정책에서 다루어지며, 국가간 비교를 위한 유용한 데이터가 없음. 따라서 생명보험저축은 사회적인 범주에 포함하지 않음. 임대료 보조는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만 모기지 조세 경감은 어느 정도 소득까지 지원되는지, 어느 정도 자산까지 지원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는 실제적으로 가구간 재분배를 항상 포함함. 그런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일반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통해 징수되고 이는 인구집단간 혹은 인구집단내 자원의 재분배를 이끌고 있음. 민간부문에서 개인간 재분배는 종종 정부의 규제나 조세 개입으로 소개됨. 정부는 개인이나 고용주가 그들의 위험 프로파일이나 우세한 시장 가격과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지급금 보호에 참여하도록 강제함.
- 공사부문의 구분은 누가 재정적인 흐름을 주로 통제하는가에 기반을 둬. 즉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임. 일반적으로 정부가 관련 재정 흐름을 통제할 때 공공적인 것으로 간주함.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법정 사회보험기금에 의해 재원 조달되는 상병 급여는 관습적으로 공공으로 간주되는 반면에 법정 상병 급여는 고용주에게서 피고용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므로 사적인 부분임. 여기서 정부에서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사회적 급여는 공공부문으로 간주됨. 그러나 정부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모든 사회적 급여는 민간부문임.
- 민간 사회적 급여 내에서는 급여의 성격에 따라서 추가적인 구분이 가능함. 때때로 정부는 의무적으로(예, 법령) 고용주들이 피고용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급여가 있거나 고용주가 사적인 기금에 기여해야 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될 수 있음. 이런 모든 급여가 ‘법정 민간부문 사회적 급여’임. 사회적 목적을 가진 민간 부문 급여가 고용주에 의해 비자발적인 근거로 제공될 때 NGO에 의해 급여가 제공될 때, 보험에 가입된 인구들 중에서 재분배 자원의 프로그램 기여금으로부터 급여가 제공될 때 ‘자발적민간부문 사회적급여’라고 함. 개인보험은 개인의 선호와 개인의 위험 프로파일에 근거하므로 민간부문에서 배제됨.

2. 사회복지지출의 정책영역

- 노령(Old-age): 노령연금에 대한 모든 현금 지출(일시금)
 - 노령현금급여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을 제공하거나 ‘법정’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거나 노령연금 기여의 필수요건을 완수한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함. 이러한 범주는 또한 조기은퇴연금을 포함. 조기은퇴연금이란, 연금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임.
 - 노동시장 환경 때문에 조기퇴직을 하는 사람들은 실업으로 분류되고 노령에서 는 배제됨.
 - 부양자가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지불되는 부양자에 대한 보조금도 포함됨.
 - 돌봄서비스, 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 다른 현물 급여 등 노인서비스에 관한 지출을 포함
 - 기관에서 시설보호에 이용되는 지출(예를 들면, 노인 그룹홈 운영 경비)을 포함
- 유족(Survivors): 배우자나 부양자가 사망한 사람들에게 공적 영역에서 급여(현금 혹은 현물)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 유족현금급여에는 유족급여 수급자의 수당과 부양자에 대한 보조금과 기타 현금 급여가 해당
 - 유족현물급여에는 장제비와 다른 현물급여가 있음.
-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 (노동시장에 참여하다) 장애로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근로무능력을 가질 때 지급하는 급여임. 이 때 장애는 선천적일 수도 있고 사고나 질병의 결과일 수도 있음.
 - 유급질병휴가, 특별 수당과 연금과 같은 장애 관련 지급금 등 산업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지출은 유급질병휴가(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항목에 포함.
 - 질환으로 인한 일시적인 근로무능력으로 야기된 소득의 상실과 관련한 현금급여는 유급질병휴가(other sickness daily allowances)에 포함.
 - 부양 아동의 질병이나 부상과 관련하여 지급된 급여는 가족 현금 급여에서 기록하므로 이 항목에서는 제외.
 - 의학적인 보호에 대한 공적인 지급금은 보건영역에 포함. 이 항목에는 또한 돌봄 서비스와 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 다른 현물 급여 등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 지출 포함.
- 보건(Health): 보건정책영역에서 사회복지출통계는 OECD Health Data의 자료를 이용함.

보건부문의 공공지출은 모두 포함되는데, 개인 서비스와 집단보건의료서비스, 투자 등
임.

- 보건 항목에는 입원환자요양서비스와 보조의료서비스와 제 약품에 관한 지출이 포함.
- 보건지출에서 공공기관의 용자 상환은 포함되지 않음.
- 질병과 관련된 현금급여는 상병급여에 포함.
- 자발적 민간 보건지출은 재분배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민간의료플랜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만 추정(이러한 민간의료보험플랜은 주로 고용에 기반을 두거나 조세 혜택이 있음).

□ 가족(Family): 가족을 지원하는 지출을 포함.

-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과 다른 부양자의 지원과 관련된 비용과 연관됨.
- 현금급여에는 가족수당과 산전후와 육아휴직 관련 지출, 기타 현금 급여들이 포함됨.
- 현물급여에는 돌봄서비스와 가사보조서비스, 기타 현물급여들이 포함

□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수급자의 고용상황 개선
이나 그들의 소득능력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지출임.

- 공적인 고용 서비스와 행정, 노동시장 훈련, 학업에서 직장으로 이동하는 청소년
들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실업자나 다른 사람들(아동과 장애인 제외)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고용을 촉진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관한 지출을 포함.
-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구분이 없음.

□ 실업(Unemployment):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 지출을 포함.

- 현금급여에는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상과 해고수당이 포함.
 - 해고수당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기업의 상황으로 인하여 고용이 중단되거나
임금이 삭감된 사람들에게 공공자원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만 해당.
- 퇴직이나 다른 노동시장정책의 사유로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연금
처럼 수급자에게 지급될 때는 노동시장적 이유로 인한 조기은퇴 항목에 포함.
- 이 외에 현물급여가 있음.

□ 주거(Housing): 임대료 보조와 개인에게 주거비용을 보조하는 다른 급여를 포함.

- 임대주택에 배정된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공 보조를 포함(노르웨이에서 주택
소유자가 그의 집에 살 때에만 제공).
 - 이 때 급여는 관습적으로 현물급여로 분류되는 ‘배정된’ 현금 급여와 관련되기
때문임.

-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즉시적으로 제공하는 직접적인 현물 주거 급여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포함(노령, 근로무능력관련, 기타 항목에서 각각).
- 모기지론, 공사비용 보조, 공공시설 비용에 대한 보조와 같은 다른 형태의 주거 지원은 사회적인 속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시설이 저소득 가구에 직접적으로 제공될 때에만 포함.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측정하는데 대한 국제적인 합의는 없음. 따라서 현재로는 포함하지 않음.
- 기타 사회정책(Other social policy areas): 다양한 이유로 관련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제공되거나 다른 급여들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제공되는 지출을 포함.
 - 이민자와 탈북자, 토착민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이 이에 해당함.
 - 다른 항목에서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지출 역시 이 항목의 기타에 포함됨.

3.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구성 및 경향

- 1980년대 이후 총공공사회복지지출(gross public social expenditure)은 GDP 대비 16%에서 21%로 증가(특히 1980년대 초, 1990년대 초, 2000년대 초에 현격함)
 - 특히 1990년대 이후 지출을 살펴보면 핀란드와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 복지 선진국이었던 국가들은 감소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는 데 반해(특히 스웨덴은 1993년 조세개혁과 복지 개혁 이후 뚜렷하게 나타남), 복지가 미성숙한 국가로 여겨지던 한국, 멕시코, 일본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복지 축소를 위한 개혁을 단행했던 미국과 영국은 의외로 사회복지지출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나 그 폭은 거의 미미함.
- OECD 국가에서 실질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실질 GDP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 특히 일본은 경제성장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공공사회복지지출과 실질 GDP의 차이가 매우 차이가 남.
 - 일본은 전후 급속한 경제성장 덕분에 지속적으로 복지가 확대되었는데 이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확대뿐만 아니라 정부지출의 구성에 있어서도 그러함. 그러나 1970년대 초반 이래 일본은 저성장 시대로 진입(성장률: 4-5%). 또한 1990년대 헤이세이 불황(거품경제)으로 실업률이 증가하자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제도개혁을 시행. 그러나 60대 전반부를 위한 연금제도 도입과 공제연금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연금재정이 증가하였고, 고령자 중심의 고용정

책 확대 등으로 노동시장 비용도 증가하여 사회복지지출은 복지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증가함(김영범, 1999: 100-220)

□ 지난 25년간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킨 두 개의 핵심 추동력은 은퇴 인구와 의료 지출의 증가였음. OECD 28개국은 노년층에 지출하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GDP 대비 5.0%(1980)에서 6.9%(2003)로 증가하였고, 의료에 대한 지출은 4.7%(1980)에서 5.9%(2003)로 증가. 구조적으로 지출이 증가된 다른 영역은 가족 급여임. 가족 급여에 대한 지출은 1990년대 이후 증가한 것이 특징임.

– 이러한 경향은 네덜란드의 복지개혁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1976년 사적 조기퇴직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5년까지 사적 조기퇴직자들이 급속도로 증가. 이는 고령근로자에게 장애, 실업급여를 통한 퇴직경로보다 재정적으로 더욱 건전하게 퇴직가능하려는 사회적 목적과 고령근로자를 젊은 근로자로 대체하려는 채용목적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짐. 한편, 노동시장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4년 Work and Welfare Act를 도입, 공공부조 수급자를 감소시킴. 또한 2005년 Children Act 개정, 보육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증가시킴. 그리고 가족에게 제공하는 일·가족 양립 지원제도들을 증가시키거나 도입(출산 휴가, 양육휴가 등 다양한 관련 휴가들이 있음)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소득보장이 복지 팽창기와 복지 조정기에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분석한 김철주(2004)의 연구에 따르면 시장과 가족의 자체 역할은 각각 16%, 10% 증가한 반면 국가는 자체 역할이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3년에 OECD 국가들의 평균 총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20.6%이며 현금 급여가 서비스의 2배를 차지함. 노령 및 유족연금은 GDP 대비 7% 수준이며, 근로 세대 인구에 대한 소득 이전은 GDP 대비 5%임. 이 중 유자녀 가족에게 집중된 공적 지출과 실업에 처한 사람에게 주는 급여가 각각 1.3% 정도로 나타남

□ 지난 해 이후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SOCX에 포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 때 데이터에는 공식적인 보육 서비스(예, 크레체, 보육시설, 3세 이하의 이동을 위한 가정 보육시설 센터)와 유아교육 기관 모두에 참여하고 있는 유자녀 가족에 대한 공적인 재정 지원을 포함. OECD 국가들의 평균은 GDP 대비 1%이며, 한국은 0.2%, 덴마크 2.0%로 차이가 남

4. 민간사회복지지출의 구성 및 추이

□ 사적 복지급여로 통한 사회보호 시스템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 2003년에 미국의 총민간사회복지지출(gross private social spending)은 미국에서 GDP 대비 10% 였으나 덴마크와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 멕시코, 스페인과 터키 등에서는 미비. 몇몇 나라에서는 최소한 사적 사회 급여의 역할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그러함.

- 이러한 차이는 야기하는 요인들이 있음. 먼저 사적 연금 프로그램의 성숙이 민간사회복지지출의 증가를 야기하며 특히 캐나다에서 그러함. 또한 1980년대 이후 공적 고용 관련 사회 급여의 관대성의 감소가 공적 프로그램에 없혀주는 사적 급여의 증가를 촉진함. 덴마크와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1990년대 초반에 정부는 고용주의 상병급여 지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을 입법화함(Mandatory). 미국에서는 높은 의료 보호 비용인 1980년대 이후 민간사회복지지출의 증가에 기여한 반면 1990년대 초반 고용주들이 제공하는 의료 보호 수혜율은 감소하여 trade-off됨(Voluntary)

5. 순사회복지지출의 구성 및 추이

□ 사회복지의 제공은 정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많은 정부들은 투자위험을 다양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유도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사회적 급여의 제공을 민간 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음. 또한 민간 기관들은 개인의 욕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지역 욕구에 대한 정보도 더 많이 가지고 있음.

□ GDP 대비 공공지출을 사회의 집합적인 노력으로 보는 국가간 비교는 한계가 있음. 총지출은 예산에 대한 조세시스템의 영향을 간과하며, 공공지출에 대한 정보는 민간 사회복지제도에서 발생하는 의무적인 지출이나 조세를 통한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하지 않음.

- 조세지출이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는 3가지가 있음. 첫째, 현금 급여에 대한 직접세와 사회보험세 부과, 둘째 현물 급여 수급자가 구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간접세 부과, 셋째 현금 급여와 유사한 조세경감이나 사적 사회 급여의 지급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조세혜택임.

□ 위에서 논의한 사회복지지출 프로그램 데이터는 복지 정책의 경향과 변화를 나타내지만 조세 시스템이 어떻게 사회 보호 체계에 대한 공·사지출에 영향을 끼치는 가를 설명

하지는 않음.

- 일반예산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조달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때로 조세수입(예, 사회보장기여금)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 그러나 조세 시스템은 또한 사회복지지출의 수준에 영향을 미침.

1) direct taxation of benefit income

□ 사회보험 수급자들의 직접세와 사회보장 기여금 지불수준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음.

OECD 국가에서 평균 공공이전소득의 약 9%가 조세를 통해 회수되고 있음.

○ 정부는 수급자에게 주는 현금 이전에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징수하는데 이는 원래의 의도보다 낮게 자원이 재분배되는 결과를 야기함.

○ 공공이전급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에서 평균이하이고 포르투갈, 아일랜드, 일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체코공화국, 멕시코와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 평균 5%이하임. 민간급여소득은 일반적으로 공공이전소득보다 높은 비율로 과세(평균 약 11%)됨.

- 공공이전급여 수급자가 지불하는 직접세가 GDP 대비 2.0%를 초과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이며,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2% 수준인 국가는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인 반면 GDP 대비 0.6%인 국가는 호주, 캐나다, 일본, 영국, 미국임.

- 한국은 공공이전급여의 세금이 미미한 반면 멕시코는 비과세임.

□ 어떤 나라에서는 (공공)급여가 (시장)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급여가 감소된 세율로 과세됨. 일부 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급여가 직접적인 순과세로 지급됨.

- 연금이전(노령, 장애)에 대해서는 스웨덴, 덴마크는 일반 세율로 과세(T), 네덜란드, 일본은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모두 징수하나 감소된 세율을 적용(TS reduced), 한국, 영국, 미국은 감소된 세율로 과세(T reduced)

○ 실업급여의 경우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실업급여의 수준이 높음) 등 노사관계에서 중앙차원의 협의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들은 과세와 동시에 사회보장기여금을 징수하나 감소된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과세(영국은 기간에 따라 차등), 한국과 일본(실업급여 수준이 낮음)은 과세하지 않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급여와 주택급여, 사회부조는 과세하지 않음(덴마크는

감소된 세율 적용)

- 총사회복지지출 아이템(예, 노령연금 급여이나 실업보상)에 직접적인 과세를 적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첫째 국가적인 자원은 특정 급여에 지불되는 세금의 가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국세청이나 사회보험 기여금에 대한 사회보험기금. 독일이나 스페인). 다른 국가에서는 행정적인 자원(예, 조세통계)에 근거하여 급여 수급자가 지불하는 과세의 추정에 근거하여 현금 급여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를 적용하기도 함(오스트레일리아,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둘째, 국가적인 자원의 공급시 추정하는 ‘평균 항목별 과세율(AITR)’을 적용하여 수급권자에게 지불되는 직접적인 과세를 적용함. 이러한 AITR은 과세 기록에 기반한 행정적인 데이터에 근거하거나(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미국), 항목별 과세를 도출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시뮬레이션-모델(microsimulation-model)’과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하기도 함(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영국)

- AITR 개념은 각각의 사회적 급여에 각기 다른 과세의 부과에 따른 개별화를 촉진하고자 개발됨. AITR은 받은 급여 대비 지불되는 총 세금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총 소득으로 나누는 것임
- 아동급여 같은 급여가 비과세라고 가정하면 AITR은 0과 같을 것임. 만약 이전 소득이 유일한 소득이라면, 이 소득에 대한 평균 세율이 순 이전 소득을 산정하는 데 사용될 것임. 그러나 급여 소득에 대한 직접 과세의 산정은 소득의 유형이 다를 때 보다 복잡해짐.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일년간 받는 소득은 실업급여와 가족 소득 이전 등 각기 다른 소득이 합해지고 각 급여에 따라서 세금의 양과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 관련 요소에 세금을 할당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만약 연 소득(annual income)의 75%와 수입(earning)의 25%가 급여(benefit)라면, 급여 소득에 지출되는 총 소득세는 75%라고 가정함

2) 이전소득자의 간접세 구성항목

- 사회 급여는 주택, 음식, 의류 등등의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조달하기 위해 제공됨. 정부는 각기 다른 재화의 소비에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 양은 다름.

- 공적 급여와 사적 급여에 따른 직접세의 비율을 살펴보면, 총지출 대비 세금의 비율에서 공공급여의 세금이 민간급여의 세금보다 높은 국가는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이며, 공적 급여의 세금보다 사적 급여의 세금이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 미국, 덴마크, 영국, 한국, 일본 등 최근 복지 개혁을 이룬 후 시장의 복지 부분 역할 확대가 두드러진 국가에서 높게 나타남.

□ 반면에 GDP 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공적 이전에 대한 세금이 사적 이전보다 높은 국가는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미국, 일본으로 나타났고, 공적 이전이 사적 이전보다 낮은 국가는 영국과 한국으로 나타남

- 소비세는 급여의 실질 가치를 하락시키고 세금 수입을 통해 정부에 다시 흘러들어오도록 함. 급여 소득의 직접적인 과세의 차이와 유사하게 간접세에서의 국가간 차이는 복지국가 지출의 비교에 영향을 미침. 간접세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국가(비유럽 OECD 국가)의 총 지출 수준은 높은 간접세율을 가진 국가보다 동일한 급여 수급자의 순 소득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예를 들면 급여 수급자에게 100units의 순소득을 제공하고자 할 때 평균 간접세율이 5% 가까이 되는 미국에서는 총 급여 수준을 106units를 줄 필요가 있음. 평균 간접세율이 25% 정도 되는 덴마크에서 동일한 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총 급여를 133 units 줄 것임.

3) 사회적 목적을 갖는 조세혜택(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

□ 정부는 사회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조세 시스템을 사용함. 사회적 영향을 가진 조세 수단은 현금 급여를 대체하거나(예, Child tax allowance) 사적 급여의 제공을 촉진(예, 사적 의료 계획의 지급에 대해서는 세금 경감)하고 있음. 사회적 목적을 위한 세제상 특전(TBSPs)은 가구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사적 재정에 대한 세금 감면 또한 포함됨(예, 고용주 제공의 급여에 대한 우호적인 세금 경감과 사적 재정에 대한 우호적인 세금 경감이 취급됨).

□ 조세 시스템을 통한 지출이나 조세 지출은 다양한 형태가 있음; 공제(과세기반으로부터 배제되는 소득); 수당(총 소득으로부터 공제되는 양); 크레딧(과세 부담액으로부터 공제되는 양); 세율 경감(특별한 그룹을 위한 세율 감소); 세금 상환 등.

<조세시스템에서 사회적 급여: 한국의 예>

수입금액- 필요경비=종합소득금액1) (이 때 필요경비 중 세금수당이 포함)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인적공제, 특별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산출세액 (영국: 65+ 인구의 세율이 따로 적용, 세율 경감)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가산세-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세금 상환)
 ⇒ 크레딧은 이후 단계에서 적용됨

□ OECD 국가의 많은 정부들은 사회 정책의 목적을 조세 시스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함. 여기에는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첫째, 특정한 소득의 자원에 대한 세금을 감소하거나 특정 유형의 가족에 대한 세금을 감소하는 것임(예: 영국에서 노인의 소득에 대한 세율이 일반세율보다 낮은 것). 이러한 종류의 세금 경감은 급여 소득의 직접적인 과세에서 다양하게 나타남. 과세기반에서 급여를 공제하거나 급여 소득에 적용하는 직접세에 감소된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음. 두 번째 방법은 이전과 동일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세금을 감소하거나 공제하거나 차감 혹은 거치하는데 이 때 사회적 지출로 분류됨. 혹은 급여의 사적 지급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독일과 미국의 조세시스템은 사회적 지원을 전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독일과 일본, 영국에서 TBSP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 영국은 WTC와 CTC를 기존의 가족급여와 이동관련 급여를 대체하는 조세 지출로 활용하고 있음.
 - 미국과 한국은 사적 급여에 대한 조세 혜택을 더 장려하고 있음.

6. 한국 사회복지지출 추계의 적용⁵⁹⁾

□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복지지출 추계는 OECD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세부적인 항목의 조정에 있어서는 각국의 제도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음. OECD는 각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담당자가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국의 자료를 검증하고 있음.

59) 이에 관한 내용은 OECD 담당자와의 회의 및 이메일 내용에 근거하고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특수성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교 가능성을 저해하는 경우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등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2009년 법정 퇴직금 논의: 최근 OECD 사무국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법정퇴직금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가간 비교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국의 법정퇴직금 지출은 실업(SOCX NO.7)에서 노령(NO.1)으로 분류를 변경함(Adema & Ladaique, 2009).
 - OECD의 사회복지지출은 근로에 대한 보수는 엄격하게 배제하므로 휴일수당, 교통비와 보너스 등은 포함하지 않음.
 - 법정퇴직금은 “과거 근로에 대한 보수나 후불임금”의 성격을 지닌 연금으로 은퇴 연령 이상의 사람들에게 지급되고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 동안 고용주에 의해 재원이 조달될 때 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하는 것으로 국제기구(OECD, ILO, Eurostat)간의 합의가 이루어짐.
 - 그러나 법정 은퇴연령에 접근했을 때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SOCX의 노령 항목에 포함할 수 있음. 반면에 퇴직금이 은퇴 목적이 아닐 때는 SOCX에서 배제되어야 함. 이는 퇴직금이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고용 관계가 중지될 때 지급되고, 고용 관계의 중지는 자발적일 수도 있고 해고일 수도 있음.
 - 이러한 근거에 따라 OECD는 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함에 있어 은퇴시 받는 퇴직금은 연금과 유사한 은퇴수당으로 취급하는 반면에 은퇴 연령 미만의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법정퇴직금은 임금의 분할된 지급으로 고려하므로 사회복지지출 추계에서 배제해야 함. 다만,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상황에 의해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해고당한” 근로자들에게 공적재원으로 조달되어 지급되는 “일시해고수당(redundancy compensation)”은 OECD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와 SOCX에 포함하고 있음(Adema and Ladaique, 2009:19).
 -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한국의 “법정퇴직금”은 실업(SOCX NO.7)에 포함되어 왔으나 해고수당과는 다르다. 해고수당이 공적 재원으로 조성되는데 반해 퇴직금은 고용주의 기여로 조성된다. 또한 OECD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법정퇴직금은 근로 가능한 인구에게 지급되는 빈도가 정년 은퇴시 지급되는 비율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연령대별로 퇴직급여액 수령비율을 살펴보면 30세 미만(12.7%), 30세 이상(30.5%), 40세 이상(30.9%), 50세 이상(21.9%), 60세 이상(4.0%)로 나타났다(국세청, 2007).

□ 한국의 법정퇴직금 성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조 6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한국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는 0층인 기초노령연금, 1층인 국민연금, 2층인 퇴직금과 퇴직연금(DB, DC, IRA)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음. 즉 한국에서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으며,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으로 동시에 존재함.
 - 그러나 OECD는 근로가능한 연령(working age population)의 해고 및 계약 만료 등에 따른 법정퇴직금은 노령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정퇴직금의 점유율이 퇴직연금의 점유율보다 훨씬 더 높음⁶⁰. 법정퇴직금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여부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됨.
 - 법정퇴직금의 혜택은 두 가지임. 먼저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법정퇴직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있음. 정부는 지금까지 퇴직금을 기업 운영의 필수비용(고용주 부담으로 재원이 조달되므로 기업의 지출해야 하는 필수항목으로 여김)으로 간주하여 법정퇴직금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
 - 다음으로 피고용인에 대한 혜택으로는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가 있음. 일반적으로 3,40대는 가계 소비가 가장 많을 때이나 급여는 고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부양과 부모에 대한 부담을 모두 지게 되는 3,40대는 주택, 교육, 병원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여 노후소득보장의 퇴직금 본래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과의 차이를 줄이고자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셋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 2조 8항에서는 법정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퇴직급여와 동일한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보다 퇴직금을 더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정부는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법정퇴직금의 중간 정산 역시 퇴직연금 제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

60) 한국의 법정퇴직금의 가입사업장 수는 467,714개소(2008)이고 가입자 수는 6,506,470명(2008)인 반면에 퇴직연금의 가입사업장 수는 50,462개소(2008)이고 가입자 수는 1,119,552명(2008)으로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수는 법정퇴직금 가입장 수의 10%, 가입자 수는 17%에 불과하다(노동부 임금복지과 내부자료).

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과 동일하다.

- 두 번째와 세 번째 논의에서 보듯이 정부가 법정퇴직금의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엄격하게 개정하는 이유는 법정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없애고,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설계하여 퇴직금의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함 때문이다. 나아가 법정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목적을 되살리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현재 법정퇴직금은 이탈리아와 일본, 한국 등 3개국에만 남아있는 제도임.
 - 이탈리아에서는 GDP 대비 1%가 퇴직금에 지출되는데, 이 중 공사영역 피고용인에게 지불된 금액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음. 즉 이전 공무원들에게 은퇴시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데이터는 유용한 반면에 민간 영역의 피고용인에 대한 퇴직금에서 연령별 통계는 없음. 이에 따라 유럽통계(Eurostat)는 이탈리아의 퇴직금 중 “은퇴한 사람들에게 지불되는 급여액의 총합 중 명확한 부분만...” 노령급여(SOCX NO.1)에 포함시킴. 즉 공무원에게 지급한 법정퇴직금에 관한 데이터만 유용하므로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해서 퇴사한 공무원에게 지급한 퇴직금만 노령연금에 포함시키고 있음(Adema and Ladaique, 2009:11).
 - 일본에서는 자발적인 민간 퇴직금이 GDP 대비 2.2%(2005)로 나타남. 퇴직금과 은퇴소득에 관한 통계는 일본 국세청에서 발간되는 국세 연보에서 상세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일본정부는 이들 퇴직금 수급자의 대다수가 근로세대가 아닌 은퇴시에 급여를 받는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노령영역에 포함시킴.
 - 우리나라 역시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국세연보에서 법정퇴직금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근로가능세대의 자발적 퇴직이 많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양분된 상태에서 비정규직의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금 수급 비율이 높음(이에 관해서는 Grubb et al., 2007 참조).